

‘정조의 임오의리’와 국정(國政)
운영

2015

연구진

연구책임 ● 최성환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원 ● 이동인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약

정조는 재위 후반기부터 전반기 10여년간 유지하던 탕평의 규모를 다시 설정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여 세손 시절 이래 숙원이었던 ‘정조의 임오의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정조는 도성 인근에 있던 사도세자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의 현릉원으로 옮기면서, 세자의 과오를 중심으로 기술된 영조의 「묘지문」을 폐기하고 대신 「현릉원지문」을 작성하였다. 그것은 민생과 군사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 생부의 공(功)과 비판적인 언론까지 너그럽게 포용한 생부의 덕(德)을 기리면서, 몇몇 역적들이 기획하여 영조를 오도(誤導)한 임오화변의 전말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었다. 이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정조의 임오의리’로 수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재평가만으로 ‘정조의 임오의리’를 공식화 할 수는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조는 임오화변 당시 지나친 처분을 한 과오를 후회하는 심회를 담은 영조의 「금등」 문서를 공개하였다. 이것은 사도세자의 효심(孝心)을 오인하여 그릇된 처분을 내렸던 과오를 인정하는 영조의 은덕(恩德)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사도세자의 공덕과 역적들의 모함을 중심으로 재평가된 ‘정조의 임오의리’는 영조의 본뜻과도 부합하게 되었다.

정조의 탕평에서 정치 의리의 핵심인 임오의리를 수정하는 것은 정국 운영의 근본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정조의 임오의리’는 그동안 서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선세자 보호세력과 비판 세력을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의리였다. 결국 노·소론 완론 탕평파 위주로 전개된 영조대의 탕평에 비하여, 정조대 후반의 탕평은 노·소론 완론과 준론 및 청남(淸南) 세력에 이르기까지 그 참여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이러한 ‘정조의 임오의리’에 근거하여 정조는 국왕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세자보다는 한 등급 높은 격식의 8자존호로써 사도세자를 위한 추송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사도세자의 공덕을 최대한 존송하되, 그를 왕으로 올리는 추왕(追王)은 당장은 단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추왕의 과업은 새로운 시대를 다스릴 세자, 곧 사왕(嗣王)의 손에 넘겨주었다. 정조 18년에 시

작된 수원 화성(華城) 건설 사업은 정조가 물러나 거처할 상왕(上王)의 도시로 구상된 것이었다.

정조가 시도한 상왕의 정치는 왕실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왕실 영역의 확장은 단순히 왕권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신의리(君臣義理)를 재정립하여 공공성의 영역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정조는 상왕의 공간인 화성을 단순히 왕권 강화의 표상이 아니라 제도 개혁의 시험장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니, 이는 화성에서 입증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 개혁의 모범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조의 임오의리’에 입각한 탕평 정치의 이념과 국정 개혁의 성과는 영조대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 국정 개혁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정조대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은 정조대 국정 개혁의 핵심적 성과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수원의 도시 경영 이념은 그 뿌리인 정조대 수원 화성 건설과 경영의 이념을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핵심어 : 영조의 임오의리, 정조의 임오의리, 사도세자, 화성(華城), 상왕(上王).

목 차

제1장 서론	3
제2장 사도세자 재평가와 군신간(君臣間) 합의 과정	10
제1절 현릉원 천장과 사도세자 재평가	10
제2절 사도세자 재평가를 둘러싼 군신간(君臣間) 이견과 합의	31
제3장 ‘정조의 임오의리’와 수원 화성 건설의 구상	62
제1절 ‘정조의 임오의리’에 입각한 선세자 추송	62
제2절 갑자년 상왕 구상과 수원 화성 건설의 구상	87
제4장 결론	99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정조는 통상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개혁 군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정조의 개혁이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정조의 개혁 이념을 설명할 때에 ‘대동(大同)’ ‘대경장(大更張)’ ‘애민(愛民)’ ‘민본(民本)’ ‘왕도정치’ 등 동아시아의 유교 이념에 기반한 수식어가 동원되기도 하였다.¹⁾ 여기에 그치지 않고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양에서 등장한 ‘계몽 절대군주’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정조의 개혁 이념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²⁾ 이러한 시도는 유교 혹은 계몽의 일반 이념을 원용하여 정조의 개혁 이념을 일반화시켜 설명한다는 의의는 있겠지만, 실제의 역사 현실에서 정조와 그 신료들이 포방하고 논의하였던 주제를 외면한 채 논의의 수준을 지나치게 추상화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정조의 개혁 정치가 본격 추진되는 정조대 중반 이후 조정의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생부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 즉 임오화변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따른 사도세자 추송 문제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왕을 포함하여 노론·소론·남인 제 당파의 정치 의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정치적 쟁론으로 변질되기 십상이었다. 이로 인하여 정조도 신하들도 모두 영조가 결정한 의리 즉 ‘영조의 임오의리’를 제방(堤防)으로 삼되,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불감언(不敢言), 불인언(不忍言)’의 장벽을 설정하여 준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조에 의해 이러한 국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이를 감지한 영남인 1만인의 상소 이후로 장벽은 무너져 그 이후 조정의 논의는 임오의리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조대 후반기의 정치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조가 정한 임오의리, 즉 ‘영조의 임오의리’를 정조가 새롭게 규정한 임오의리, 즉 ‘정조의 임오의리’

1) 박광용, 『朝鮮後期 蕩平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성윤,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1997 ;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2) 이태진, 「정조-儒學的 啓蒙 絶對君主」 『한국사시민강좌』13, 1993.

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영조가 쌓은 제방을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새로운 제방으로 대체하려는 세력의 갈등·대결 양상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 시기는 정조의 개혁 정치가 본격 추진되고 그 성과가 빛을 내던 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조의 임오의리’는 정조의 개혁 이념과 무관할 수 없다. ‘정조의 임오의리’는 정조대 후반 정치 변동과 개혁론을 지탱하는 기본 이념으로서 기능하였다. 정조대 후반의 정치·경제·사회 개혁은 이 시기의 정국 변동과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정국 변동의 주된 동력은 ‘정조의 임오의리’였다. 따라서 정조대 후반의 개혁 이념은 ‘정조의 임오의리’와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정조의 개혁 이념을 대동·경장·애민·왕도정치·계몽 등과 같은 통시대적 이상의 차원에서만 설명하였을 뿐,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서 제기된 의리론의 차원에서는 접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조를 포함한 각 정치 세력의 의리론과 개혁논의는 상호 연관되지 못하였고, 정조는 통시대적 개혁 이상을 추구하는 성학(聖學)의 군주로 설명되는 동시에 신료들은 정조를 기준으로 개혁 세력인지 반개혁 세력인지 판가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정조의 개혁론이 동시대의 정치 현실과 유리된 채 개혁 이념과 수구(守舊) 이념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정조대 후반의 정국 변동과 의리론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에도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를 포함하여 조선시대의 정국 변동에서 의리론의 비중은 무엇보다 중대하다. 그러나 정조의 개혁론을 의리론과 무관하게 연구한 결과 정조의 의리론, 특히 그가 평생 재정립하려고 하였던 임오의리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정조의 임오의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었다. 첫째, 임오의리를 정조가 추구하는 임오의리와 동일시하면서 영조가 정리한 임오의리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오의리를 친 정조 세력으로 간주되는 남인 혹은 소론 의리의 일종으로 보는 반면 노론은 전체적으로 반(反) 임오의리 세력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상 정조대 후반의 정국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조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규정력을 지녔던 ‘영조의 임오의리’는 배제된 채, 정조 후

은 소론·남인의 임오의리와 정순왕후·노론의 신임의리(辛壬義理)라는 단순 대결 구도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인 국면이 아닌 일상적인 정국에서는 개혁과 반 개혁의 단순 대립구도로는 복잡 다단하게 전개되는 정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영조대 중반에 신임의리가 국시(國是)로 확정된 후에는 신임의리를 특정 당파의 의리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임오의리 역시 영조대에 국시로 확정된 ‘영조의 임오의리’가 국가적 규정력을 지녔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 정조와 신료들이 심각한 갈등을 감수하며 지대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조대 후반의 정국은 임오의리를 둘러싼 대립·갈등·합의의 복잡한 양상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정조가 설정한 개혁 과제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변경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다. ‘영조의 임오의리’를 지탱하는 정치 세력은 노·소론의 완론 위주로 구성된 탕평당과 영조의 외척 세력이었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노·소론의 완론을 중심으로 탕평파를 형성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즉위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인 신임의리 문제를 정리하여 국시(國是)를 확정하였고, 이들의 보좌를 받아 숙종대 이래의 숙원이던 균역(軍役) 제도 문란을 균역법(均役法) 시행으로 해소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탕평책과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영조의 정치는 18세기를 대표하는 업적으로 평가될 만큼 외형상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조는 탕평파를 척신으로 끌어들이며 ‘탕평당’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척신·권신의 발호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는 조선왕조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는 임오화변으로 이어졌다. 영조는 자신이 구축한 정치질서의 산물이었던 임오화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영조의 임오의리’를 천명한 후,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에게 왕위 계승권을 물려 주었다. 이는 신임의리에 이어 또 하나의 국시를 확정된 후 세손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축한 정치질서를 계승하도록 한 것이었다. 세손이 승계하게 될 영조대 후반의 정치질서는 탕평당과 척신당으로 상징되듯, 청론(淸論) 사대부의 공론이 억제되는 반면 군주권과 결탁한 권간(權奸)이 위력을 떨치던 체제였다. 이러한 권간들의 위세는 생부(生父) 사도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손의 권위까지 침해하며 계승권을 위협하였고, 세손은 수차례의 위태로운 고비를 넘어서며 즉위할 수 있었다. 이는

영조의 탕평책이 권력 주도층을 다수의 노론과 소수의 소론으로 구성된 탕평당으로 좁혀 놓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다.

영조대의 제도 개혁을 상징하던 균역법 역시 고용병(雇傭兵)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근간으로 하는 5군영제의 폐단을 바로잡지 않고 단지 역제의 불균(不均) 문제만 감포(減布)의 방식으로 개선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재정의 절감과 군사력의 질적 개선과 같은 본질적 과제에는 손도 대지 못한 불철저한 것이었다. 이는 균역법이 고안될 무렵부터 제기되던 문제였다. 그러나 영조와 탕평당은 중앙 군영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는 균역법을 정비할 당시부터 무시된 바 있었다. 이로 인하여 영조대 후반에 이르러 다시 균역 불균의 문제가 노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 군영의 재정 부족 현상이 도리어 심화되어 그 피해는 다시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³⁾ 영조의 최대 치적이라 할 균역법의 효과역시 오래 가지 못하였던 것이다.

영조의 탕평 정치는 붕당간 대립을 완화시키고 당파간 의리론의 대결 풍조를 국시의 확정으로 종식시키는 등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군주의 의리 독단과 척신 권력의 비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조는 재위 중반에 스스로 세자를 기이한 방식으로 폐위시키는 임오화변의 비극과 군제 개혁의 이상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균역법과 같은 과시용 개혁의 한계에 봉착해야 했다. 영조 40년 이후의 정치에서 외척간의 대결로 점철되고 청론 사대부의 전반적 이반 현상까지 목도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이것이 정조가 영조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명과 암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는 영조의 탕평이라는 커다란 방향은 계승하면서도 영조와는 다른 의리의 탕평을 추진하였다. 정조의 정치는 영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으니, 그것은 무엇보다 정조 스스로 영조대 혼돈의 탕평과 구분되는 의리의 탕평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소산 때문이었다. 정조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조의 임오의리’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조는 전반기에 영조대의 국정 운영 이념을 존중하면서 정국 주도권의 기반을 닦은 후, 후반부에는 사도세자 재평가와 관련하여 ‘정조의 임오의리’를 확립하면서 의리 탕평의

3) 정연식, 「균역법 시행 이후의 地方財政의 변화」 『진단학보』67, 1989.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조의 임오의리’는 단지 선세자 재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조대 정치세력 재편, 군사제도 개편, 상왕의 도시로서 화성 신도시 건설, 신도시에서의 개혁 실험 등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개혁 사업에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의리였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이러한 이념을 군주의 독단이 아니라 군신 간의 지난한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립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조선후기의 군신 관계가 이룩한 독특하고 의미있는 성취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정조대 정치의 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났던 후반기의 국정 운영을 정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정조대 의리탕평의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작업이 조선후기의 정치에서 공론에 입각한 군주 주도의 개혁 이념의 실례를 드러내고, 현대 수원의 모체인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수원학의 이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제2장

사도세자 재평가와 군 신간(君臣間) 합의과정

제1절 현릉원 천장과 사도세자 재평가

제2절 사도세자 재평가를 둘러싼 군신
간(君臣間) 이견과 합의

제2장 사도세자 재평가와 군신간(君臣間) 합의 과정

제1절 현릉원 천장과 사도세자 재평가

정조는 중반기 이후에 그동안 신하들에게 맡겨 두었던 ‘영조의 임오의리’에 입각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수정하였다. 선세자 보호세력에 대한 추증과 시호 개정 및 당사자 및 후손들에 대한 사면 조치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정조는 이종성의 ‘효강(孝剛)’이란 시호는 적신(賊臣) 홍상간(洪相簡)의 손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종성의 선세자 보호 행적을 감안하여 충효(忠字)를 쓰라고 하교한 바 있었는데,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차 그의 만년(晩年)에 선세자 무함에 맞섰던 행적을 강조하며 재촉하여 성사되게 하였다.⁵⁾ 아울러 임오화변 당일까지 선세자를 보호했던 이이장(李彝章)의 시호 역시 이종성의 시호를 고쳐 올리던 날에 함께 시행하도록 했으니, 이종성에게는 문충(文忠) 이이장에게는 충정(忠正)의 시호가 내려졌다.⁶⁾ 또한 임오화변 당일에 영조에게 목숨걸고 직언했으며 훗날 영조가 제문을 남겨 그 단충(丹忠)을 기렸던 대사헌 한광조(韓光肇)에게도 충정(忠貞)의 시호를 내렸다.⁷⁾ 그 밖에 선세자 보호에 힘썼던 당시의 승지 윤숙(尹塾)을 판돈녕부사로 발탁해 등용했고, 이미 고인이 된 승지 임성(任城)·정순검(鄭純儉)에게 증직했으며, 뒤주에 갇힌 세자를 위해 애썼던 김이곤(金履坤)에게도 증직하라고 명하였다.⁸⁾

이렇듯 정조는 선세자 보호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을 뒤늦게나마 포장하였다. 이들에 대한 포장은 대개 이재간·이성원과 같은 준소계 신하들이 주도

4) 『정조실록』 정조 10년 7월 10일. 이종성의 시호는 을해옥사 때 스승 이광좌가 追罪되자, 비로소 옛날의 잘못을 깨달아 自首했던 행적을 기려 孝剛으로 했으니, 剛은 知非能改의 뜻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頤齋亂藁』6책, 458-459쪽).

5) 『정조실록』 정조 12년 3월 1일.

6) 『정조실록』 정조 12년 4월 6일.

7) 『정조실록』 정조 13년 8월 28일.

8) 『정조실록』 정조 13년 8월 28일 ; 13년 9월 1일.

했으나, 임성·정순검·김이곤 등에 대한 증직은 노론 벽파 김종수의 주청을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니,⁹⁾ 이는 정파를 막론하고 선세자의 충신을 포장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는 세자에 대한 충신을 포장함으로써, 세자 곧 예비 군주인 ‘저군(儲君)도 군(君)’이라는 의리를 실체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영조의 제문에 근거한다든지, ‘훗날 시호(諡號)의 자료로 삼으라.’고 했던 영조의 하교나, ‘임오년(壬午年)의 일은 신하의 분수로서 당연한 것이며 나는 실로 후회하고 있다’고 했던 영조의 말을 인용함으로써,¹⁰⁾ 이들에 대한 포장이 ‘영조의 임오의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조 본래의 뜻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얼마 후에 정조가 단종을 위해 충성했던 신하들을 기리는 배식단(配食壇)을 만들도록 하면서, 이러한 작업이 신하들의 재평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속종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세조(世祖) 당대의 뜻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의 『노릉지(魯陵誌)』와는 체제와 의리를 분명히 달리하여 『장릉지(莊陵誌)』를 만들도록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¹¹⁾

이렇듯 선세자 재평가는 영조의 본 뜻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때로 정조는 영조의 조치를 일부 수정해야 하였다. 그 사례는 척신 가운데 선세자 보호에 힘썼던 대표적 인물인 박명원(朴明源)의 건의에 따라 선세자의 생모 영빈(映嬪) 이씨(李氏)를 모신 의열궁(義烈宮)의 궁호(宮號)를 선희궁(宣禧宮)으로 개정한 것이다.¹²⁾ 의열궁-의열묘는 영조가 직접 명명한 것이었으므로, 이 때의 궁호 개정은 ‘영조의 임오의리’에 대한 정조의 수정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영조가 일찍이 종묘사직 보존의 공을 영빈에게 돌리면서 ‘의열’이라는 묘호(廟號)를 내렸다고 설명한 후, 훗날 아첨하는 신하로 인해 묘호(廟號)를 고친다면 이는 윤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단언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¹³⁾

정조는 박명원의 건의에 따라 신하들의 의논을 모아, 의열궁-의열묘(義烈墓)를 선희궁-의열묘(義烈墓)의 체제로 수정하게 하였다.¹⁴⁾ 일찍이 정조 2년에 의

9) 『정조실록』 정조 13년 9월 1일.

10) 『정조실록』 정조 13년 8월 28일. ‘壬午事, 臣分當然, 予實追悔’

11) 『정조실록』 정조 15년 2월 21일 ; 15년 4월 29일. 莊陵配食壇 건립과정, 장릉지 편찬 및 改撰은 윤정, 『18세기 국왕의 文治 사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241-258쪽 참조.

12) 『정조실록』 정조 12년 12월 26일.

13) 『영조실록』 영조 40년 9월 26일.

열묘를 의열원(義烈園)으로 봉원(封園)하라는 영조의 유명(遺命)을 놓고 논란했으나, ‘죽을 죄를 무릅 쓴’ 김종수의 의리에 따라 영빈은 승통(承統)의 빈(嬪)이 아니므로 의열묘(義烈墓)를 유지하기로 했었으니,¹⁵⁾ 이 때에도 영조의 유명은 예제의 원리에 입각해 거부된 바 있었다. 박명원은 의열묘는 그대로 두되 의열궁(義烈宮)을 개호하자고 한 것이며, 대신들 역시 모두 궁(宮)·원(園)·묘(廟)에 각각 칭호를 달리하는 것이 전례(典禮)라는 것을 들어 찬성하였다. 다만, 정조는 묘호(墓號)와 궁호(宮號)를 함께 쓰는 것 역시 의리에 어긋남이 없고 영조의 뜻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종수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¹⁶⁾ 실제로 훗날 이성원은 김종수가 묘호 개정에 반대했다며 성토했으나, 정조는 근거없는 논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¹⁷⁾ 정조의 이러한 조치는 영조의 의리를 존중하되, 전례상 무리했던 부분을 수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정조는 역시 박명원의 건의에 따라 영우원 천장을 결정하고 곧장 실행에 들어갔다. 추진의 표면상 이유는 정조 10년 문효세자의 변고(變故) 이후 단절된 후사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박명원은 영우원의 묘자리가 좋지 않아 물결이 심하게 부딪치고 구역 내에 뱀이 서식하고 있어 존엄한 곳을 침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길지(吉地)를 얻어 천장해야 한다며 풍수설도 동원하였다.¹⁸⁾ 그러나 정조는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영우원의 형국이 알고 좁다고 여겨 즉위 초부터 간절한 일념으로 천장을 원하였다. 그는 연운(年運)·산운(山運)·명운(命運)을 따져 기유년(己酉年, 정조 13)의 천장 시기는 물론 수원의 길지(吉地)까지 봉표(封標)해 두었다고 했으며, 실제 이를 위해 당시의 가주서(假注書)였던 정동준(鄭東浚)과 화성경영을 위해 전국 8도·수재(守宰)의 출연금 구상까지 의논한 바 있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회고와 정조의 성격상 천

14) 義烈墓는 광무 3년 장헌세자가 莊祖로 추존됨에 따라, 비로소 綏慶園으로 승격되었다 (정경희, 「조선후기 원소도감의궤의 특징」 『분류별 의궤해설집』, 서울대 규장각, 2005, 88쪽.

15) 『정조실록』 정조 2년 1월 30일 신묘 ; 2년 2월 3일 갑오. 김종수 의견은 영조의 遺命은 본래 義烈墓→義烈園이지만, 영빈은 承統의 嬪이 아니므로 의열묘로 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다. 정조 역시 義烈園으로 봉원하는 것은 꺼렸으므로 김종수의 의견을 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16) 義烈宮號 개정 관련 논의는 『정조실록』 정조 12년 12월 26일 계축을 참조함.

17) 『정조실록』 정조 13년 1월 11일 무진 ; 16년 5월 24일 신유.

18) 『정조실록』 정조 13년 7월 11일.

장을 위한 경비 및 민가 철거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해 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²⁰⁾ 그러나 정조는 우선 『명의록』 의리에 기반한 정국 운영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천장은 일단 미루어 두었다. 정조는 국왕으로서 겪게 될 명운상(命運上)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중반 무렵에 단행하리라 계획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 판단된다.

정조는 천장을 위한 구체 임무를 책임자에게 분담시켰고, 자신은 친히 선세자(先世子)의 일생을 정리한 「현릉원지문(顯隆園誌文)」 작성에 본격 착수하였다. 「현릉원지문」 작성은 천장의 핵심 사업이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해야 했기에 그 영향은 차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자신의 임오의리에 입각해 선세자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서술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였다. 정조는 「지문」의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은 물론, 이를 공개하는 절차에서도 대단히 주도면밀한 면모를 보였다. 「지문」의 공개가 정국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서 대신들의 자문까지 구하였다.

영의정 김익(金燧)은 애초에 「지문」을 지을 때 은미하고 완곡한 표현을 써서 신중히 지을 것을 요청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은 「지문」에서 선세자가 무함당한 사실과 선세자의 예덕(睿德)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에 의거하여 직서(直書)하다 보면 부득이 참소(讒訴)를 당한 내용도 써야 하고 지극히 말하기 어려운 점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영조를 폄박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문을 상세하게 작성하되 반포는 하지 말고 반포용 글은 별도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반면 좌의정 이재협은 「지문」을 숨긴다면 도리어 의혹을 초래한다며 지은 그대로 반포할 것을 주장하였다.²¹⁾

19) 『東萊鄭氏家錄』 권12, 「同齋公東浚遺蹟」, 22쪽. 정동준이 정조 2년에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소문날 정도였으므로(『顯齋亂黨』4책, 543쪽), 이 기록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정조가 鄭東浚에 관심을 둔 이유는 그의 숙부 鄭弘淳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정홍순은 모든 禮制가 소략했던 사도세자 장례 당시 墓所提調로서 梓宮을 성심껏 조성해서 정조 즉위 후 칭송된 인물로서, 선세자 관련 사업에서 그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였다. 정조는 천장 때 梓宮을 직접 확인한 후 재차 정홍순을 칭송하고 致祭했다(『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3일 ; 13년 10월 9일).

20) 정조의 천장 구상과 초기 시행 과정에 대해서는 『정조실록』 정조 13년 7월 11일 ; 13년 7월 13일 ; 13년 7월 15일의 기사 참조. 천원논의와 작업의 구체적 추이에 관해서는 김지영, 「1789년 현릉원 遷園과 현릉원원소도감의궤」 『譯註 顯隆園園所都監儀軌』, 경기도박물관, 2006 참조.

21) 『정조실록』 정조 13년 8월 21일.

정조는 채제공의 의리가 감탄할 만하다고 하고, ‘이제 생각이 정해졌다’고 하였다. 채제공은 차후 임오의리 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정조의 뜻에 부응했지만, 그 단초는 「지문」 공개의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이미 드러났다. 정조는 준소계의 전면 공개, 노론계의 은미·완곡한 서술 요구를 물리치고, 채제공의 의견을 좇아 선세자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직서(直書)는 하되 공개하지 않는 방향을 취한 것이다. 정조가 채제공을 ‘의리주인(義理主人)’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원빈(元嬪) 상(喪) 이후 그가 흥국영의 완풍군 추대 시도와 관련된 의리상의 잘못을 지적할 당시에 이미 그 사례가 보이지만,²²⁾ 그가 정승에 등용된 이후 ‘정조의 임오의리’ 천명에 노·소론 강경파의 의리론을 제어하며 정조의 뜻에 적절히 부응한 것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정조의 임오의리’는 끝내 『명 의록』만큼 분명하게 천명되지는 못했으므로 임오의리의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조는 훗날 채제공이 임오의리의 두뇌(頭腦)를 잡고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였으므로²³⁾ 그에 준하여 채제공을 대우한 것이라 하겠다.

정조는 「지문」의 작성부터 비문에 새기는 각서(刻書) 절차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그 내용이 조금도 누설되지 않도록 하였다.²⁴⁾ 「지문」 작성에 투입된 정조의 정성과 영조를 핍박하는 표현을 염려해야 할 만큼 엄정했던 직서(直書)의 방침을 감안한다면, 임오화변과 관련한 사실을 확정할 때 「지문」의 사료가 무엇보다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문」은 정조 당대에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장은 신료들을 덜 의식하며 작성될 수 있었고, 이것은 그만큼 정조가 구상한 장헌세자 추숭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지문」은 임오화변에 대한 정조의 종합적 이해와 선세자 재평가의 기준이 제시된 문서인 것이다.²⁵⁾ 「지문」의 서술에서 주요

22) 『樊巖集』卷首 上, 「誠正閣筵說」, 11쪽.

23) 『樊巖集』卷首 下, 「賜祭誄文」, 39쪽. ‘第八九句, 卽某年義理頭腦處’

24) 『玄臯記』續編, 57쪽. 이에 따르면 정조는 李昌會를 시켜서 刻書를 감독하게 하고, 종으로 가려 가면서 새기게 했다고 한다. 정조는 役事가 끝난 후 董役·刻役·校役의 책임자 李昌會를 포상했다(『정조실록』 정조 13년 9월 16일 기해; 『일성록』 정조 13년 9월 16일, ‘敎曰, 誌文御製事體自別, 監刻時都監堂上該曹郎官, 禮成後, 令都監別單書入, 其中都監郎廳李昌會, 首尾效勞, 晝夜董役刻役校役勤劬最著, … 敦寧都正加設單付使之卽爲肅命’).

25) 「顯隆園誌文」과 더불어 임오화변 이해에 기준이 되는 것이 혜경궁의 『한중록』이다. 그 동안 이 기록들에 대해, 아들은 부친을 美化하고, 부인 역시 흥봉한을 변명하기 위해 남

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조는 일관되게 추왕(追王)은 자신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문」의 말미에서 『궁원의(宮園儀)』를 강조한 것은 선세자에 대한 존숭을 지극히 하되, 자신의 손으로 추왕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지문」 첫머리에서 원통함을 참고 후대에게 중대사를 맡길 것이라는 내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추왕은 정조 다음 세대의 몫임을 암시한 것이다.²⁶⁾

둘째, 정조는 선세자의 공과 덕을 두루 강조하였다. 세자의 덕망은 영조·인원 왕후·정성왕후·정순왕후에 대해 효도를 다한 것, 신하들의 비판언론을 수용하는 납간(納諫)의 덕을 지닌 것 등이다. 세자의 공업은 영조를 도와 신임의리 확정에 기여한 것, 탕평을 계승한 것, 효종의 못 다한 뜻을 계승해 군사 분야의 성과를 낸 것, 위민(爲民)의 정책을 펼쳤던 것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세자가 저군(儲君)으로서 자질을 보였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정조는 선세자와 영조의 관계가 신임의리의 근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역적들의 이간·무함으로 인해 나빠지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한 후, 여기에 질병이 더해져서 악화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영조와 선세자 사이에 포용의 범위를 놓고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선세자가 보장책(保障策)을 중시해서 영조보다 포용의 범위가 더 넓었음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임의리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편을 狂病으로 서술한 것으로 대비시켜, 어느 한쪽의 기록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은순은 전자를(「사도세자의 정치적 생애와 時僻의 분립」『조선후기 당쟁사연구』, 일조각, 1988, 124쪽), 최봉영은 후자를(「壬午禍變과 영조말·정조초의 정치 세력」『조선후기 黨爭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222쪽) 더 신뢰하는 식이다. 그 결과는 두 기록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심어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중에 습本으로 유포된 『한중록』은 정조 19년(「閑中漫錄」), 순조 1년·2년(「泣血錄」), 순조 5(「恨中錄」)년 네 차례에 걸쳐 해당 시기 정국을 감안하여 쓰여진 별개의 저술로 보아야 하고, 순조 5년의 「恨中錄」만이 狂病說에 입각한 서술임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하고 비교한다면, 「誌文」과 「閑中漫錄」「泣血錄」의 서술은 공통되는 점이 대단히 많다. 「恨中錄」 역시 별도의 맥락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두 사람은 임오화변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외간에서 접할 수 없는 경로에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혜경궁은 경험한 바를 위주로 하여, 정조는 엄밀한 고증까지 거친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모두 매우 높은 자료 가치를 지녔다. 당론서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론 정치적 판단을 감안하며 독해해야 하는 것은 어느 자료든 마찬가지이며, 정조와 혜경궁의 정치적 판단 역시 그 자체로 당시의 정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26) 실제로 고종대에 추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근거로 든 것이 「顯隆園誌文」에 등장하는 이 구절, 즉 ‘후대에 중대사를 맡길 것’이라는 언급이다.

넷째, 정조는 임오화변 이후 영조가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사례들을 영조의 하교와 제문 등에서 찾아내어 서술하였다. 이는 몇 년 후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금등(金騰)」의 주제, 곧 선세자의 미덕(美德)과 영조의 후회(後悔)를 근본 의리로 삼아 「지문」을 작성했던 것이다.²⁷⁾ 아울러 영조가 저군도 군주이므로 신하들은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도 적시해서, 자신이 임오의리를 저군의리 차원에서 인식했던 것 역시 영조를 계승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정조는 선세자에 대한 반역의 행위를 적시하되 반역자의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영조는 단지 김상로·문성국·문녀만 역적으로 지목했으나, 여기에 정조가 추가한 것은 홍계희·홍인한·구선복이다. 이는 역적을 분명히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무분별한 확대 역시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조는 토역론자들에 의해 역적으로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세간의 풍설(風說)을 해명할 수 있는 행적들을 적시하였다. 예컨대 정휘량·정처 등의 선세자 보호 노력이라든가, 선세자는 정순왕후에게 효성을 다했고 정순왕후도 선세자를 아꼈던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반 세력으로 간주된 김한구·김귀주의 임오화변 당시 행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정조가 이들을 둘러싼 풍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섯째, 정조는 선세자의 충신은 적극 드러내고자 하였다. 정조는 선세자 보호에 앞장섰던 대신들의 행적과, 임오화변 당시 충절을 지켰던 궁료들의 언행을 낱낱이 기록해서 훗날 이루어질 포장의 자료로 삼았던 것이다. 정조가 거론한 충신의 분포를 살펴보면, 세자 궁료들은 인원 구성상 당연히 소론·남인·소북계가 다수였지만, 대신급의 경우에는 노론 동당계와 준소계 인사들이 주축이고 청남으로 채제공이 거론되었다. 충절은 행적이 기준이지, 당색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정조가 「현릉원지문」을 작성한 목적은 무엇보다 ‘영조의 임오의리’와 자신이 천명할 ‘정조의 임오의리’의 관계 설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 방향은 최대한 사정(私情)·원통함을 억제하고 공의(公義)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정조가 선세자를 광병(狂病)으로 규정했던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지만,

27) 「현릉원지문」 작성 시점에 영조의 「금등」 문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조는 「금등」 문서의 존재와 그 내용을 즉위 직후부터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그것은 영조의 처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영조가 신하들의 보호론과 위해론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듯, 정조 역시 선세자 비판자들을 역적으로 취급하는 토역론자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선세자 비판자들까지 최대한 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절충점은 선세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 언론을 ‘납간(納諫)의 덕’으로 수용하는 군덕(君德)을 발휘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임오의리 재천명을 매개로 하여 군신이 공의(公義)를 합의해서 탕평과 화합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것이지, 사친(私親) 추숭 그 자체를 임오의리 천명의 목표로 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정조가 「지문」의 내용을 당분간 공개하여 천명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이것은 「지문」에 서술된 바가 공론화를 거쳐 군신(君臣)간 의리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조 역시 독단으로 공개해서 관철시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정조 12년 이래로 「지문」 작성의 준비 단계로서 선세자가 신임의리에 소홀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하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임오화변 당시의 주요 충신에 대한 공인 역시 이루어진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선세자의 공·덕(功·德)이나 영조의 후회(後悔), 역적의 구체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지문」이 작성된 이후에도 「지문」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들, 특히 선세자의 공·덕과 영조의 후회와 관련된 사안들이 신하들 사이에서는 격심하게 논쟁되었다. 영남 만인소 사건이나 「금등」 공개를 둘러싼 격심한 논쟁이 그 사례이다. 정조는 그 때마다 「지문」에서 이미 대체(大體)를 세워둔 의리를 구체화하여 관철시킴으로써 공론(公論)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문」에서 정조에 의해 이미 정리되었던 의리론이 훗날의 정국에서 새삼 반복되었던 이유는 정조대 당시에는 아직 「지문」이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²⁸⁾ 이것은 논란의 반복이 아니라 군주와 신하 사이에서 ‘정조의 임오의리’에 관한 공론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노론·소론·남인을 막론하고 신하들이 군주의 의리론을 공

28) 물론 『정조실록』에는 「지문」 작성의 과정과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은 공개된 자료가 아니어서 당대인들은 누구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조가 지은 「현릉원지문」도 볼 수 없었다.

통 분모로 하여 당론을 조정·합의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이는 정조가 제시한 군주 의리의 표준은 신하들 차원의 사적 당론을 조제(調劑)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차원 높은 공공(公共)의 의리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²⁹⁾ 정조의 스승이었던 황경원(黃景源)은 주자 이래의 이해를 계승하여 군극(君極)이 천극(天極)에 기반해야 진정한 황극(皇極)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는데,³⁰⁾ 정조의 군극은 영조의 고압적인 ‘황극’ 선언을 넘어 한층 천극에 기반한 황극의 이상에 다가갔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정조의 임오의리’로 귀결됨은 물론이다. 그 방향은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되 최대한 영조의 은덕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함으로써 영조-사도세자의 계승성을 강조한 것이고, 또한 충신과 역적을 분명히 확정하되 역적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신하들의 확인된 행적을 기준으로 최대한 신증을 기했던 것이다.

「현릉원지문」에는 장헌세자를 추송하는 과업이 신임의리 곧 신임년의 저군의리(儲君義理)와 같은 차원의 의리이며, 모해(謀害)를 주도했던 몇몇 역신(逆臣)을 제외한 청론(淸論) 사대부의 비판 언론은 광범하게 수용하고자 했던 정조의 공신(公心)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문」에 드러난 ‘정조의 임오의리’를 생부인 선세자를 향한 사정(私情)에 치우친 찬양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정조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일부 수정하되, 일부 역적들에 의해 왜곡된 영조의 본뜻과 선세자의 실덕(實德)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정조는 ‘정조의 임오의리’를 근거로 삼아, 선세자 위해론(危害論)과 보호론을 계승해서 분열을 그칠 줄 몰랐던 자신의 신하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할 수 있는 의리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정조의 작업은 생부의 반대자를 향한 사적 분노를 억제할 뿐 아니라 생부에 대한 사적 효심까지 절제하여, 국가와 신민 전체를 고려한 공적 의리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제(御製) 「현릉원지문」은 조선 왕실이 축적하고 있었던 성인군주상(聖人君主像)을 구현하겠다는 정조의 지향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³¹⁾

29) 정조의 의리탕평은 단지 勢力 優劣論이 아니었고, 군주의 의리와 신하들의 의리가 동등하게 길항하는 것도, 말 그대로 군주의 義理 是非로 귀일되기를 기대하는 탕평이었다.

30) 『江漢集』 권11, 雜著, 「洪範傳」, 10-11쪽.

31) 『성학집요』 목차 ; 『羹牆錄』 목차 참조. 部目은 권1:創業, 敬天, 권2:篤孝, 治樞, 裕昆, 敦親, 권3:典學(附 恢德量), 來諫, 권4:用人, 勤民(附 勸農桑), 권5:毖祀(附 禮前代), 定制, 권6:右文(附 斥異端), 詰戎(附 柔遠人), 권7:化俗(附 辨淑慝), 懋功, 권8:恤刑, 理財(附 崇節儉), 接下, 建中 순인데 凡例에 따르면 創業의 事蹟을 책머리로 하여 億萬世의 聖繼神

정조는 「지문」 편찬으로 ‘정조의 임오의리’를 정리하는 동시에, 이에 의거해 천원(遷園) 사업과 의례(儀禮) 역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였다. 정조는 이 작업에 가능하면 다양한 계열의 신하들이 참여하게 하였다. 천원 사업의 실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는 남인 채제공, 노론 김이소·이문원, 소론 정민시 등 주로 각 당파의 세자 보호론 계열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천원 사업에서 노·소론의 ‘영조의 임오의리’ 준수론자들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니, 이들에게 기존 의례의 수정 작업을 맡겼던 것이다.

예컨대 정조는 『궁원의(宮園儀)』(정조 4년)를 편찬한 바 있었던 이복원으로 하여금 『증수궁원의(增修宮園儀)』(정조 9년)를 편찬하게 했는데, 이 때 증수된 내용은 대향(大享)에서 대제(大祭)로 격상하는 것, 경모궁 관원의 격상·증원, 도제거(都提擧)·제거(提擧)를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로 격상하는 것, 경모궁의 존호를 가상(加上)할 때에 종묘의 악(樂)을 사용하는 것 등 궁원(宮·園)의 위상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법전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정조 3년 이후 단계별로 높여진 위상 강화 조치를 정리해서 공식화한 것으로서,³²⁾ 천원 사업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영우원천봉의주(永祐園遷奉儀註)」를 마련할 적에 노론 남당계(南黨系) 김익과 김종수도 간여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임금의 시론(時論)과 차이가 없지 않다고 알려진 인물들이었다.³³⁾ 그러나 이는 원론 차원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 큰 틀에서 이들은 선세자 관련 의례의 격상이라는 정조의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도 김익은 현릉원 조성 사업에서 채제공으로 교체될 때까지 한동안 총호사(摠護使)로서 참여했기 때문이다.³⁴⁾

새로 조성된 경모궁·현릉원은 이전에 경모궁·영우원이 종묘보다 한 등급 낮고

承이 이에서 일어났음을 보이고, 가운데에 聖德, 嘉謨, 禮樂, 政刑 등으로 써 修齊治平의 次第와 制作修述의 本末을 보이며 <建中>으로 끝을 삼아 聖人功化의 極實이 大舜의 執中과 箕範의 建極에 있음을 보이고자 함이라 한다.

32) 『정조실록』 정조 9년 8월 9일 병술. 정조는 『增修宮園儀』를 『經國大典』 『五禮儀』와 다름없다며 중시하였다. 현재 『宮園儀』<奎2039>본은 庚子本(정조 4년) 『宮園儀』의 「附錄」 부분이 增修되어 전한다.

33) 『頤齋亂藁』8책, 316쪽. ‘金領相燧, 於永祐園遷奉儀註, 多所釐整, 與上心時論, 不無差殊, 而金台鍾秀亦然, 是皆老論之南黨’

34) 『현릉원원소도감의궤』 권1, 座目 摠護使

사친(私親)의 원묘(原廟)보다 한등급 높은 위상이 더욱 격상되어, 관원의 위상과 숫자 및 규모 면에서는 종묘·왕릉의 수준과 대등할 정도로 새롭게 정비되었다.³⁵⁾ 그러나 현릉원의 석물(石物) 배치는 왕세자를 지낸 국왕(國王) 사친의 격에 맞는 배치였으니, 여타 원묘(園墓)보다 한 두 등급 높이되, 왕릉보다는 낮춘다는 『궁원의』 아래의 원칙은 준수하였다. 추존왕 진종(眞宗)의 능인 영릉(永陵) 석물의 격식이 제원(諸園)과 같았던 것에 비한다면, 이는 각별한 대우임에는 분명했지만 왕릉보다 한 단계 낮은 원(園)의 격식은 준수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 제원(諸園)·제릉(諸陵)과 비교한 영릉(永陵)·현릉원(顯隆園)의 상설(象設)

	제원(諸園)	영릉(永陵)	현릉원(顯隆園)	제릉(諸陵)
곡장(曲牆)	3면	3면	3면	3면
병풍석(屏風石)	없음	없음	12면	12면
난간석(欄干石)	없음	없음	없음	12간
혼유석(魂遊石)	1개	1개	1개	1개
명등석(明燈石)	1개	1개	1개	1개
망주석(望柱石)	1쌍	1쌍	1쌍	1쌍
양석(羊石)	1쌍	1쌍	1쌍	2쌍
호석(虎石)	1쌍	1쌍	1쌍	2쌍
문인석(文人石)	1쌍	1쌍	1쌍	1쌍
무인석(武人石)	없음	없음	1쌍	1쌍
마석(馬石)	1쌍	1쌍	1쌍	2쌍

『春官通考』 권16-21, 吉禮 陵寢 諸陵·諸園 ; 정경희, 「조선후기 묘소도감의궤의 특징」 『분류별 의궤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96쪽 등 참조.

현릉원의 규모 자체는 왕릉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제원(諸園)에는 두지 않던 무인석을 갖추게 했고, 조선후기에는 왕릉에도 두지 않던 병풍석·와첨석(瓦簷石)·상석(裳石)까지 갖추게 했으므로 왕릉에 버금가는 위상과 화려함을 한껏 강조한 것이다.³⁶⁾ 그러나 여타 상설(象設)에서는 난간석·문인석을 두지 않았고 양

35) 정경희, 「정조대 사도세자 관련 宮·園의 변천과 의의」 『규장각소장 분류별의궤 해설집』, 규장각, 2005, 112-115쪽 참조. 경모궁·영우원 자체도 王世子인 私親을 모셨다고 하여, 일반 私親을 모신 여타 宮園보다는 한 등급 높고, 종묘보다는 한 등급 낮은 것이었다(『정조실록』 정조 3년 8월 30일).

36) 현릉원은 仁祖 長陵을 모델로 하였다. 세조대 이래 난간석만 두고 병풍석을 두르지 않았으나, 영조 7년 遷葬했던 仁祖 長陵에 병풍석 뿐 아니라 裳石·瓦簷石까지 두었던 전례

석(羊石)·호석(虎石)·마석(馬石)도 왕릉보다 하나씩 낮추었다. 대체로는 제원(諸園)의 위상 보다는 한 단계 높게 왕릉 보다는 한 단계 낮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왕세자로서 저군(儲君)의 지위에서 14년간 대리청정하였던 부친을 한껏 추송하면서도 국왕과는 약간의 차등을 둔 것이다. 정조대 내내 의식을 행할 때 준뇌(樽罍)의 가지수와 악기 배열을 종묘보다 한 등급 낮추었던 것 역시 이러한 예법의 표현이었다.³⁷⁾

정조는 천장할 때 자신은 물론 신하들에게도 시마복(總麻服)을 갖추어 입게 함으로써, 임오화변 당시 삼년복을 입지 못했던 것에 대한 추복(追服)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³⁸⁾ 상례에서 부친에 대해 삼년복(三年服)을 입는 사람은 천장할 때 시마복을 입는 것이 예법이기 때문이다.³⁹⁾ 정조는 영우원에서 추복(追服)으로서 시복(總服)을 갖춰 입고 옹가(甕家) 안에서 호벽(號擗)했고, 현릉원에 가서도 시마복을 갖춰 입고 곡을 하며 천장(遷葬)을 친히 주관하였다.⁴⁰⁾ 이는 임오화변 당시 부친의 복제를 심상(心喪) 3년의 변례(變禮)로 마쳐야 했던 것에 대한 수정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예제를 조연한 것은 예조판서 이재간이었다. 그는 본생친(本生親)의 천장에서 시마복은 없다며 반대론을 제기한 김종수 등에 맞서, 인조의 장릉(章陵)을 개장할 당시의 고사(故事)에서 추복(追服)의 의미를 갖는 시마복의 전거를 찾아 제시했다고 한다.⁴¹⁾ 이는 장헌세자를 앞으로는 본생친(本生親)이 아닌 부친으로 예우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선세자와 관련된 저술·의례 등은 모두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한 것이

를 따라 최대한 화려하게 꾸몄다(『정조실록』 정조 13년 7월 11일 : 정조 13년 8월 16일 ; 유봉학, 『화성』, 1996, 65-66쪽).

37) 『群書標記』 권4, 「宮園展省錄」 ; 『群書標記』 권5, 「宮園儀」 ; 종묘와 경모궁의 儀式을 비교·확인해 보면 등급의 차이가 준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春官通考』 권12, 吉禮, 宗廟, 「原儀宗廟四時及臘」, 「今儀宗廟軒架圖」, 「登歌」와 『春官通考』 권14, 吉禮, 景慕宮, 「今儀景慕宮四時享」, 「今儀景慕宮軒架」, 「登歌」)

38) 『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7일 ; 13년 11월 22일(‘追服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힘). 황윤석은 국왕이 生父에 대해서 總麻服 보다 한단계 낮은 加麻에 그쳐야 한다는 흑자의 私議를 소개해 두었으며, 실제로 오재순·김문순 등 몇몇 노론의 명망가들은 정조가 자전 이하 백관에게 모두 總麻服을 입도록 한 복제가 잘못되었다며 불복하고 素帶만 행했다고 한다(『頤齋亂藁』8책, 317쪽). 『정조실록』 정조 13년 11월 22일에는 生父를 遷葬할 때에 總麻服을 입는 규정이 없다고 비판한 상소문이 올라왔으나, 정조는 이를 일축하였다.

39)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전례 연구』, 일지사, 2008, 149쪽.

40) 『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1일 ; 13년 10월 7일.

41) 『角亭集』「吏曹判書李公墓誌銘」

었으나, 정조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미부여를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조의 임오의리’가 그 일단을 드러낸 만큼, 신하들이 당파 차원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임오의리를 제기하여 관철시키려는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협이 예상한 대로 비공개로 하면 더욱 안팎의 의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였다. 사실 「지문」의 각석(刻石)에 참여하는 신하들이 있는 이상,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지문」의 내용이 누설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리는 궁극에 임금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탕평군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자의적인 지문 공개는 신하들의 ‘자작의리(自作義理)’에 해당하므로 적절히 제어될 필요가 있었다.

「현릉원지문」의 교정(校正)을 맡았던 서영보(徐榮輔)는 지문 내용을 자의로 누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⁴²⁾ 그는 선세자를 보호했던 준소 서지수(徐志修)의 손자로서, 교정 이후에도 끝까지 정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순조대에도 문형(文衡)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누설 우려가 현실로 된 사례는 공교롭게도 이재협(李在協)의 종제(從弟) 이재간(李在干)의 경우였다. 천장 당시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는데 데 크게 기여했던 이재간은 정조가 은언군을 빼내려는 가운데 발생한 대소동의 와중에서 정순왕후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종수(金宗秀)에게 은언군·조시위의 배후로 집중 탄핵받아 유배가던 중 사망하였다.⁴³⁾

그런데 천장 직후 정조가 이재간을 유배까지 보낸 조치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현고기(玄龜記)』의 저자는 이재간의 실제 죄목은 연석(筵席)의 대화를 누설한 데에 있었다고 설명하였다.⁴⁴⁾ 정조는 좌의정 이재협과 임오화변을 논하면서 김한구(金漢耆)가 괴수라고 했고, 이재협은 이 말을 종제인 이재간에게 알려 주었으며, 이재간은 홍귀서(洪龜瑞)에게 홍귀서는 또 김한기

42) 『履園遺稿』 권10, 「吏曹判書竹石徐公諡狀」, 127쪽. ‘承命校正顯隆園誌, 暗行水原果川等處, 察遷園後民情’

43) 『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23일 ; 13년 10월 24일 ; 13년 10월 27일.

44) 이 때 정조는 신하들의 정순왕후 옹호론에 맞서면서, 정순왕후의 뜻만 받드는 신하들을 비판했던 申驥顯까지 감싸고 있었고, 게다가 이재간이 신기현의 배후라는 확증도 없던 때라서, 이재간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기현이 이재간을 배후로 인정했던 것은 이로부터 3년 후의 일이며(『정조실록』 정조16년 11월 23일 ; 16년 11월 24일), 그 사이에 정조는 자신의 명령을 더 중시하는 신기현을 기특해하며 승지로 발탁하기도 했다(『정조실록』 정조 14년 11월 15일).

(金漢耆)에게 누설하여, 당시에 그 말이 크게 전파되었다는 것이다.⁴⁵⁾ 실제로 이재간은 정조 13년 당시 ‘조정 신하들이 문효세자·의빈 성씨와 관련해서는 계속 성토하면서, 임오년 역적은 성토하지 않는다’며 공공연히 불만을 표했다고 하는데,⁴⁶⁾ 이러한 사례는 『현고기』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재간은 이재협에게 전해 들은 연석의 대화를 바탕으로 「현릉원지문」의 내용을 자의로 왜곡·누설하면서 김한구·김귀주 성토를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의 견해에서는 이재간의 이러한 행위는 준소의 자작의리(自作義理)로서 ‘정조의 임오의리’ 구현을 위한 정국 구도 자체를 혼란시키는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재간이 왜곡해서 누설한 내용은 「현릉원지문」에서 역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신하들까지 준소의 총역론에 입각해 역적으로 흘리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김한구 문제는 「현릉원지문」에 전혀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선세자가 정순왕후에게 정성왕후처럼 섬겼기에 정순왕후 역시 선세자를 아꼈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므로, 이재간은 자의로 추단(推斷)하여 정조가 김한구를 역적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등 준소의 토역론에 입각해 자작의리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오년의 총신인 윤숙(尹塾)은 일찍부터 김한구·김귀주를 임오년의 역적으로 성토한 바 있었는데, 이 주장에 이재간을 비롯한 준소들이 동조한 바 있었다.⁴⁷⁾ 정조는 이재간을 가차없이 유배보냈고, 이재간에게 「지문」의 내용을 발설한 이재협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좌의정에서 파직하였다.⁴⁸⁾

이재간의 경우와 정반대의 사례는 노·소론 시파(時派)가 남인 내 반(反) 체제 공 세력을 이용해 체제공을 공격한 것을 들 수 있다. 체제공은 ‘정조의 임오의리’에 대한 단계적 천명정책에 충실히 호응하며 준소 일각과는 달리 신중한 노선을 걷고 있었다. 체제공에 대한 삼대죄안(三大罪案) 역시 정조에 의해 이미 해명된 상태였기에, 새롭게 체제공을 공격할 재료로 부각된 것이 서학(西學) 문제였다. 이는 남인 내부 반채(反蔡) 계열이 주도하고,⁴⁹⁾ 노·소론의 서명선계 시

45) 『玄臯記』續編, 57쪽. 『玄臯記』의 저자는 이재간의 행위가 僻派 뿐 아니라 ‘堤防一隊의 切齒’까지 초래했다면서 ‘愚且妄’이라고 비판하였다.

46) 『정조실록』 정조 15년 5월 23일.

47) 『角亭集』 권2, 「吏曹判書李公墓誌銘」. 묘지명에 따르면, 이재간은 김귀주와 姨從이나, 일찍부터 김귀주를 배척했으며, 김귀주와 결탁한 김종수에게도 적대적이었다.

48) 『玄臯記』속편, 57쪽. 이재간은 유배가던 도중에 蓼藥 복용과다로 사망하였다.

49) 反蔡 세력은 체제공의 淸南 의리에 동조하지 않는 남인 舊派, 즉 濁南과 관련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차기진, 『조선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 2002, 한국교회사연구소).

파가 적극 지원하여 제기된 것이다. 반채 세력은 전반기에 이미 서명선 주도의 시파와 협력한 전력이 있었기에 채제공계의 학문적 약점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다. 이들은 ‘정조의 임오의리’ 천명에 적극 호응하는 채제공을 제거하기 위해 서학(西學)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행위는 정조대 전반 서명선 주도 시파에 대한 벽파의 공격과 같은 양상이므로, 정조는 시의(時議)의 주도자 서명선을 보호했듯 이 무렵 ‘정조의 임오의리’의 일각을 담당한 채제공을 적극 두둔하였다. 정조는 이들의 서학 문제 제기를 채제공에 대한 정치공세, 즉 임금의 출척의 권한에 맞서려는 자작의리 차원으로 규정한 후, 서학 문제 처리를 채제공에게 일임하며 청남내 서학세력을 단속하도록 하였다.⁵⁰⁾ 이 시기 채제공은 의리 주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정적이었던 인사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채제공이 노론 중도파 김익에게 효자정문(孝子旌門)을 세우는데 찬동하거나, 정적(政敵)이던 서명선에게도 조문하며 『명의록』 의리 주인을 존송했던 것 등은 이러한 사례로 해석된다.⁵¹⁾

정조는 이재간과 같은 행위는 자작의리로 보아 처벌했지만, 채제공을 향한 공격은 적극 차단하며 힘을 실어 주었으며, 더 나아가 선세자 보호세력의 진출을 더욱 적극 유도하였다. 그 대표 사례가 선희궁 궁호(宮號) 개정과 현릉원 천장의 공로를 들어 박명원(朴明源)의 조카인 박종악(朴宗岳)을 우의정에 등용한 것이다. 그를 등용한 것은 『명의록』 의리의 기준에서 배척·침체되어 있었던 선세자 보호세력의 재등장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박종악의 형 박종덕(朴宗德)은 정조 즉위년에 궁중의 기무(機務)를 총괄하여 정조 즉위에 공헌한 바도 있었으나, 이후 홍국영의 견제를 받아 홍인한의 당으로 몰려서 수어사의 직책을 빼앗긴 이래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다.⁵²⁾

279-283쪽).

50) 『정조실록』 정조 15년 10월 25일 ; 『정조실록』 정조 16년 2월 30일.

51) 『정조실록』 정조 15년 10월 20일 ; 『정조실록』 정조 15년 12월 4일. 채제공이 서명선을 조문한 것은 정조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채제공은 서명선과 대립했던 감정은 사적인 것이며, 이를 뛰어넘어 서명선을 조문한 것은 『명의록』에 대한 존송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樊巖集』 권28, 「甲徐相褒諭後書啓」, 20쪽). 정조는 채제공이 임오의리에 호응하는 것은 『명의록』 존송과 병행해야 함을 주지시킨 것이고, 채제공은 이러한 정조의 의리에 적극 호응했음을 알 수 있다.

52) 『정조실록』 정조 15년 3월 5일.

그러나 정조는 박종악 집안을 은인(恩人)이요 훈구(勳舊)로 여긴다고까지 하면서 적극 옹호하였으니,⁵³⁾ 이들 보호세력을 역적인 흥인한계와 구별하여 흥봉한계 북당으로 대우하여 등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훗날 박종악은 박명원의 가르침을 근거로 선세자의 역적들을 토역해야 한다는 논의를 적극 선도하였다. 이렇듯 정조는 「현릉원지문」 편찬을 계기로 해서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했고, 선세자 보호론자들까지 적극 진출시킴으로써 장차 있게 될 ‘정조의 임오의리’ 구체화 작업에 지원세력으로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아울러 정조는 선세자의 아들이자 동생인 은언군을 선세자 관련 행사에 참여시키려고 애썼다. 정조는 영우원(永祐園)에서 현릉원(顯隆園)으로 천장하는 의식에 동생을 참여시키기 위해,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는 죄인 은언군을 편법으로 빼내고자 했다가 정순왕후의 강력한 제지로 파국을 초래하며 무산된 일이 있었다.⁵⁴⁾ 정조가 은언군을 강화도에서 빼낼 때마다 은언군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이 무렵의 충돌이 가장 심각했으므로 총괄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혜경궁 알현, 현릉원 행차, 존호가상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은언군을 참여시키려 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은언군 대우 문제로 정순왕후와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접었으나, 이를 연례행사처럼 치루어 냄으로써 은언군까지 포용하려는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물론 군주의 사정(私情) 행사 범위, 소위 군주의 권도(權道) 행사를 둘러싼 대소동이었으나,⁵⁵⁾ 군주의 사정과 권도가 관철되지 않았던 근거에는 ‘정조의 임오의리’와 『명의록』 의리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흥낙임·은언군-흥봉한-혜경궁 측과 김귀주·은전군-김한구·김한기-정순왕후 측의 의리론 충돌 문제가 개재되어 있었다.

정조는 이 문제를 장차 일괄 타결짓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며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정조는 매번 정순왕후의 반대에 자신의 뜻을 접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명분상 정순왕후의 편에 섰던 신하들의 반대를 용인하였다. 심지어

53) 『정조실록』 정조 15년 3월 5일. 박명원에 대한 각별한 인식은 『弘齋全書』 권15, 「錦城尉朴明源神道碑銘」에도 상세함.

54) 『정조실록』 정조 13년 9월 26일 기유 ; 『角亭集』 권2, 「吏曹判書李公墓誌銘」, ‘至是, 玄宮復啓, 上哀其情理, 遣中使召來, 慈殿聞之, 遽下責諭於賓廳, … 若有大變迫於呼吸’

55) 박현모.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2001, 61-71쪽.

다수 신하들에 맞서며, 정조의 권도 행사와 주재권(主宰權)을 명백히 지지했던 이재간·신기현을 정순왕후에 대한 핍박을 이유로 처벌까지 해야 하였다.⁵⁶⁾ 정조는 국왕과 왕대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조선 왕조에서 반정(反正)을 초래할 만큼 실체가 있었던 효(孝)의 명분⁵⁷⁾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즉위와 흥국영 방축(放逐)에 도움을 주었던 왕대비를 손자로서 어떻게든 설득해야 했던 것이다. 정조가 「장헌세자지문」에서 김한구·김한기·김귀주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⁵⁸⁾ 그만큼 은언군-홍낙임 문제는 ‘정조의 임오의리’ 실현과 관련하여 정조대 후반 ~ 순조대 초반 정국에서 최대의 난제이자 뇌관으로 작용하였다.

은언군은 영조대 후반에 흥봉한에 의한 추대 대상으로 거론된 이후 정조대에도 각종 추대사건에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가까운 홍낙임과도 연결되어 정순왕후를 무함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은언군에 대한 정순왕후의 처벌 의지는 매우 강경했고, 그를 둘러싼 대립도 치열하였다. 정순왕후 측은 정순왕후가 영조말에 세손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려 했다는 등, 은전군(恩全君)을 무육(撫育)하며 세손 대신 승계시키려 했다는 ‘무함(誣陷)’이 은언군-홍낙임-흥국영에게 기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정순왕후가 흥인한·정후겸의 흥역을 저지하며 세손을 즉위시킨 『명의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정순왕후 측은 은언군 추대사 이래 세손을 위협에 빠뜨렸으나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흥봉한·홍낙임·은언군을 토역하여 대리청정 저지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명의록』 의리의 근원을 소급해서 밝혀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했던 것이다.⁵⁹⁾ 정순왕후는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 사망 당시 상변(喪變)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 배후로 지목된 은언군을 처단하지 않고 강화도에 유배시켜 둔 것만도 이미 사은(私恩)을 베푼 것이니, 왕실 행사 때마다 번번이 편법으로 빼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정순왕후 측은 흥봉한 일가와 은언군 관련 공세는 정조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함에 가까운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자신이 은전군

56) 『정조실록』 정조 13년 10월 23일 을해.

57) 변원림, 『조선의 왕후』, 일지사, 2006, 189-193쪽.

58) 이렇듯 왕실 전체의 안위가 걸린 민감한 문제를 黨論 관철 차원에서恣意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에, 정조는 이재간을 엄히 처분한 것이다.

59) 『순조실록』 순조 원년 1월 16일 계사의 金漢耆 遺疏를 참조.

(恩劄君)을 양육하면서 수렴청정하려 했다는 등의 ‘무함’에 대해 정조가 공식으로 의혹을 해소하려는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였다. 이에 대해 김귀주는 정순왕후에게 남긴 유서(遺書)에서 이 무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한 어떤 사면 조치도 진정한 신설(伸雪)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었다.⁶⁰⁾ 실제로 정조는 김귀주 사후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순왕후 위로 차원에서 그의 죄안(罪案)을 삭제했으나,⁶¹⁾ 김귀주가 자신의 죄목을 정순왕후 무함과 연계시켜 두었으므로 그 의미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더욱 정순왕후는 은언군의 제반 역절(逆節)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끝까지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은언군과 은전군 문제를 둘러싸고 홍가와 김가는 무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은언군 문제는 선세자 추왕의 부당성 주장과 더불어 정순왕후가 내세우는 의리의 핵심이였다. 이 때문에 정순왕후는 국왕과 대결을 불사하였고 은언군을 강화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사저(私邸)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파란을 조장하면서까지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다.⁶²⁾

정조는 은전군 추대와 관련해 정순왕후 가문이 무함받았음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 무렵 정조는 은전군 찬 사사(賜死)를 후회하면서, 이는 흥국영이 추대설로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⁶³⁾ 정조는 신하들의 강경론에 휘말려 은전군을 사사함으로써, 은언군에 대한 정순왕후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단을 잃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조는 정순왕후와 관련된 김귀주의 죄안(罪案)에 대해서 모두 용서한다고 한 후에도,⁶⁴⁾ 김귀주가 부친 김한구(金漢耇)와 함께 범했다는 역절(逆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였다. 그것은

60) 『可菴遺稿』「可庵先生年譜」十年丙午. ‘戊子疾革, 有遺書. … 罪名中, 辛卯事·趙岬事皆關係慈殿, 而自在黠黠之中, 自己處義, 縱不自恤, 獨不顧慈殿聖德之累乎. … 慈聖受誣見凌之恥, 快雪無餘然後, 乃可謂之伸也’

61) 『정조실록』 정조 10년 윤7월 22일 ; 10년 8월 27일 ; 11년 1월 8일.

62) 이태진·홍순민, 「日省錄 刀削의 실상과 경위」(『韓國文化』10, 1989)에 은언군 문제를 둘러싼 정조와 정순왕후의 주요 대립 사례가 잘 정리되어 있다.

63) 『정조실록』 정조 16년 3월 15일. 물론 정조가 흥국영을 방축한 이유는 상계군 추대 문제 때문이었으나, 이 무렵에는 정조 1년에 인조대 仁城君의 사례를 인용하며 은전군을 사사하도록 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김귀주도 사사의 처분까지 받았는데, 김귀주 역시 자신은 은전군 추대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 하면서, 이를 흥국영의 농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64) 『정조실록』 정조 8년 8월 3일 병술.

임오화변에 김한구·김귀주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이였다. 김한구·김귀주를 역적으로 주장했던 윤숙의 상소에서 제기했던 것과, 김한기가 해명 상소에서 거론한 것 모두 핵심은 이 문제였다.⁶⁵⁾ 이는 ‘정조의 임오의리’에서 총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잣대로 부상한 것이다.

정조는 정순왕후에 대한 무함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김한구·김귀주의 임오화변 전후 행적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은 채, 은언군에 대한 사정(私情)을 관찰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은언군은 영조 후반 뿐 아니라 정조 즉위 이후에도 여러 추대·역모 사건에 연루되었던 관계로 성토의 명분이 분명하였으므로, 은언군에 대한 사정을 절제하라는 정순왕후와 신하들의 요구는 정당한 편이었다. 이 때문에 정조 역시 은언군을 사면하지는 못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몰래 서울로 불러들여 만났다가 돌려보내기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정순왕후가 직접 개입하여 신하들의 반대를 지시했고, 신하들은 군주의 사정을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정순왕후에 호응하여 격렬하게 반대한 것이다. 정조는 군주가 베푸는 은혜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순왕후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은언군을 만났으나, 이는 미봉에 그쳤고 끝내는 자신의 뜻을 굽혀야 하였다.

정조의 처지에서도 권도론(權道論)만으로 신하들, 더구나 『명익록』 의리의 주인이었던 정순왕후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은언군에 대한 권도(權道)가 관찰되기 위해서는 정순왕후와 관련없는 김귀주의 죄(罪)를 입증한 후, 이에 대해 군주의 은정(恩情)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했던 것이다. 정조가 김귀주·김한국의 팔자흉언(八字凶言) 문제의 확증을 잡고자 계속 노력했던 것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팔자흉언은 정조가 용서하기로 한 김귀주의 네 가지 죄안(罪案)과 연계된 정순왕후 무함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정조 당시에 조정에서 공식 논의된 적조차 없기에 『정조실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비공식 정보망을 가동해서 이에 대한 확증을 잡고자 애썼다.

정조는 13년에 옥당(玉堂)이었던 김이성(金履成)에게 결정적 증언을 확보하였다. 정조 즉위 후 처음 김귀주의 흉역을 주장했던 이노술(李魯述) 역시 팔자흉언을 근거로 제시하지는 못했었고,⁶⁶⁾ 정조 역시 그 소문을 진작부터 들어서 알

65) 『정조실록』 정조 14년 7월 11일.

66)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9월 18일.

고는 있었으나 ‘의신상반(疑信相半)’하던 상태였다. 정조는 김한록 가문과 한때 친교했던 김이성이 옥당(玉堂)에 번을 들자 직접 추궁한 결과, ‘흉언(凶言)을 직접 들었고 다른 김씨들도 많이 들었으며, 문장(門長)인 김시찬(金時燦)에게도 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⁶⁷⁾ 팔자흉언은 김귀주의 일관된 공홍론(攻洪論)이 겉으로는 흥봉한 토역을 표방하나 실은 세손의 보호세력을 제거하고 은전군(恩全君)이나 종친 가운데 선택된 양자를 추대하기 위한 흥역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손 보호와 대리청정에 공을 세웠다는 김귀주 일가의 주장 자체를 허구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⁶⁸⁾

정조 역시 임오화변 이후 책임론에 시달리던 흥봉한이 팔자흉언의 전파를 계기로 세력을 회복하여, ‘공홍(攻洪)이 동궁(東宮)에게 불리(不利)하다는 설이 청류(清流)인 김시찬에게서 나왔다면 행세하기 시작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⁶⁹⁾ 그런데 팔자흉언의 확증이 잡히면서, 임오화변 이후 공홍론·살홍론에 동조했던 노론 청론이 분열하여 흥봉한 역시 ‘공홍은 동궁에게 불리하다는 의론[攻洪不利東宮論]’에 입각한 노론 청론(淸論)의 지원을 받게 되었던 사정도 분명해졌던 것이다. 이로써 영조대 후반의 행적으로 명분상의 약점에 시달리던 홍가(洪家)의 정당성이 확보된 반면, 정순왕후 덕택에 세손의 즉위 공로를 내세웠던 김가(金家)의 과실도 명백해졌다. 정조에게는 양가(兩家)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된 것이다.⁷⁰⁾

흥봉한·흥낙임·은언군이 관련된 왕손 추대의 역절(逆節) 혐의와, 김한록·김귀주가 주도했다는 팔자흉언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두 사안의 주도자들은 각각 정순왕후와 정조의 은정(恩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어느 한쪽을 역적으로 규정하든지, 양쪽 모두를 문제삼지 않든지,

67) 『楓臯集』「迎春玉音記」, ‘教曰, 金履成曾於入侍, 言漢錄凶言’ ; 『한중록』「泣血錄」, 553-555쪽.

68) 실제로 혜경궁은 김한구·김귀주의 팔자흉언과 관련된 흥역을 『한중록』「泣血錄」, 549-557쪽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69) 『楓臯集』 권17, 「迎春玉音記」, 403쪽. ‘此說甲申乙酉之間, 自湖中傳來, 則洪氏方疲困於衆咻之中, 一聞此語, 遂以攻洪不利東宮之說出於時燦, 藉重而行世, 蓋時燦爲當時名流故也’

70) 정조는 김이성에게 ‘我慈殿惟社稷之功, 其在全保本家之道, 當靡不用極. 予之不欲窮治者, 微意有在’라고 하면서 입단속을 시켰다. 흥·김 兩家の 과실이 모두 분명한 이상, 八字凶言을 끝까지 추궁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와 김이성의 대화 내용은 『公車指南』「己酉六月二十八日筵說」에 상세하다.

정조의 처분이 결정적인 변수였다. 이 때문에 정순왕후는 정조대 이후 은언군의 행적에 근거해 은언군을 역적으로 규정하며 원칙론을 견지한 것이고, 정조는 은언군을 끝까지 보호하며 왕실 은정의 영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한구·김귀주 단독의 죄안을 확보하여 타결의 단서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는 은언군 보호와 8자흉언 문제, 그리고 궁극에는 흥봉한·혜경궁과 김한구·정순왕후의 처우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명의록』 의리에 입각한 신하들의 저항을 감수하면서 권도론(權道論)으로 대응할 뿐 이를 공식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이다.⁷¹⁾ 은언군 문제는 정조가 19년 장헌세자 추숭 이후 일괄타결의 방향을 잡을 때까지 격렬한 갈등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71) 정조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甲子年에 풀고자 했던 것이다. IV장 3절에서 상술.

제2절 사도세자 재평가를 둘러싼 군신간 (君臣間) 이견과 합의

현릉원 천장과 「현릉원지문」 작성을 계기로 정조의 뜻이 일부 드러나고, 채제공·박종악 등의 세자보호 세력이 진출함에 따라 임오의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여건이 조성되었다. 특히 현릉원 조성과 천장에서 일부 드러난 정조의 뜻이 궁극에는 선세자 추왕(追王)에 있다는 것이 감지되었고, 이에 선세자 보호 세력이 호응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노선에 따라 정국은 재편되었다. 아래 기사는 정조 13년의 새로운 정국 동향을 잘 보여준다.

이호(李灝)가 말하기를, 지난번 채제공을 평안병사(平安兵使)로 외보(外補)한 것은 오로지 혜경궁의 분부에서 나온 것이다. 혜경궁은 사도세자를 추송하고자 했는데, 오직 채제공만이 이 논의를 맡길 수 있으나 감히 드러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김종수·유언호·이명식(李命植)과 같은 자들은 본래 김한기(金漢耆)를 위주로 하며, 자전(慈殿)은 추송(追崇)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년에는 서유린(徐有隣)과 윤행임(尹行愨) 등의 일대(一隊)가 혜경궁의 미지(微旨)를 받들어 채제공과 합하고자 한다. … 소론 일대 또한 서유린·윤행임 등의 의론과 같았다. 다만 자전은 이러한 기미가 있으면 반드시 환후(患候)를 내비쳤고, 임금의 부득이 자전의 돌봄을 받는 흥은군주(興恩郡主)에게 명령하여 들어가 위로하여 마음을 돌려놓게 하였다. 하루는 임금이 『문헌비고(文獻備考)』 가운데 성종(成宗)이 회경세자(懷敬世子, 필자 주 : 훗날 덕종(德宗))을 추송하는 기사를 가지고 진강하도록 명하여 문의하였다. 그 당시 김질(金質) 등은 불가하다고 했고, 신숙주 등은 마땅히 존송하여 칭종(稱宗)하고 별도로 별묘(立廟)해야 한다고 했으니, 성종은 마침내 신숙주의 논의를 따랐다고 되어 있었다. 경연 신하들이 차례로 진독(進讀)하여 마쳤는데, 임금은 한마디도 없이 파하였다. 하루는 임금이 김종수에게 물기를 외부의 논의를 들으니 추송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 같은데, 경과 같이 노성

(老成)한 자가 어찌 조제(調劑)하지 않는가라고 했으니, 임금의 뜻은 아마도 실제로 (추승의 뜻이) 있는 듯하였다. 김종수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추승과 부묘(祔廟) 두 가지 일은 조만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였다. … 대개 노론 가운데 임금의 뜻을 승순(承順)하는 절반과 남인 전당(全黨)은 서로 말하기를, ‘저들이 승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자전을 끼고서 임금께 명령하는 것일 따름이니, 오래 갈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⁷²⁾

이 무렵에는 노론과 남인 및 소론 가운데 정조와 혜경궁의 밀지(密旨)를 받은 자들이 있으며, 이들이 연대하여 추왕을 추진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중심 인사는 노론 서유린·윤행임, 남인 채제공이었다. 정조는 『문헌비고』에 실려 있는 덕종(德宗) 추왕의 사례까지 진강(進講)하게 해서 추승의 방안을 강구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⁷³⁾ 위 인용문에서 추왕세력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노론 시파 가운데 흥봉한계 북당을 계승한 추시파(追時派)와 청남(淸南) 채제공계이다. 당시에 준소(峻少) 역시 이들과 연계되어 있었으니, 준소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추왕에 반대하는 중심은 단연 정순왕후이며, 김종수·유연호와 같은 벽파·중립계 인사 뿐 아니라 시파인 이명식도 합류한 것이 주목된다. 장래 어느 시기엔가 단행될 추왕에 대한 찬·반 여부로 노론·소론·남인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당시에는 채제공이 경모궁을 종묘 담장 내로 이건하자는 계청을 할 것이며, 장래에는 선세자를 추존하여 종묘에 부묘(祔廟)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유포되었을 정도였다.⁷⁴⁾ 「현릉원지문」을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재간의 사례와 같이 그 내용은 당파적 해석까지 가미되어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정조의 임오의리’가 그 일단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조는 「현릉원지문」에서 임오의리 천명의 방향을 정해 두었지만, 이를 당파적으로 해석하는 각 정치세력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임오의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공론화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72) 『頤齋亂藁』 8책, 271-272.

73) 덕종 추승 사례는 영조말 흥봉한이 세손과 강구했던 적이 있으며,世子→國王의 추승 뿐 아니라 追王에 따른 貳本의 문제도 걸려 있어 장헌세자 追王과 유사한 사례이다. 睿宗과 德宗은 형제이므로, 追王은 成宗의 계통을 둘로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74) 『頤齋亂藁』 8책, 233쪽.

먼저 정조의 뜻을 선세자 추왕에 있다고 보면서 사전에 이를 저지하고자 했던 노론 선세자 비판 세력의 시도가 있었다. 이를 대변한 것이 유성한(柳星漢)이었다. 유성한은 광대가 어가(御駕) 앞에 접근하고 여악(女樂)이 궁중의 금원(禁苑)에 난잡하게 들어 간 것, 장기간 경연을 중단한 것 등을 거론하며, 정조에게 독단적 정국운영과 이에 따른 친위세력의 발호를 경계할 것을 간언하였다.⁷⁵⁾ 여악은 장용영 제거(提擧) 김이소(金履素)가 군사들을 위한 잔치에서 들인 것이므로, 유성한이 정조와 관계없는 헛소문에 근거해 주장하기는 했으나, 언관으로서 충분히 간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표현 방식이 뒤늦게 문제되었다.

유성한의 상소에서 핵심으로 부각된 것은 그가 임오년 당시 언론을 이용한 선세자 위해세력의 수법을 그대로 원용해서 본래 여색(女色)에는 관심없었던 정조를 무함했으며, 오랜 기간 중단된 경연 복구를 요청하면서 경연에 얽힌 선세자 관련 고통의 기억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⁷⁶⁾ 유성한 상소의 흥역함을 본격 제기한 것은 박서원(朴瑞源)·이성규(李聖圭) 등을 필두로 이종성의 사위 조종현(趙宗鉉) 등 준소계 사헌부 관원들이었고, 노론 보호세력으로서 이천보의 종제(從弟)인 형조판서 이민보(李敏輔)가 가세하였으며, 박명원의 조카로 우의정에 발탁된 박종악은 유성한의 소굴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소론 준론과 노론 동당(東黨) 등 영조대 선세자 보호세력의 후예들로서, 유성한의 상소가 무인년(戊寅年, 영조 34) 경연(經筵) 회복 조치를 기화로 강화된 역적 김상로·홍계희의 선세자 무함 수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이는 선세자 위해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심각하게 성토했던 것이다.⁷⁷⁾

연이어 발생한 윤구종(尹九宗) 사건은 이 무렵 조정의 대세였던 유성한 성토

75) 『정조실록』 정조 16년 4월 16일.

76) 특히 ‘목이 맨다고 먹는 것을 폐할 수는 없다’는 문구가 문제였다. 유성한은 經筵이 영조와 선세자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이 되었던 것과, 그 때문에 정조가 경연을 복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해서 경연 복구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정조는 이전부터 경연에 얽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하루 세 번 講한다’는 말만 들어도 안정을 취하지 못할 정도라고 토로한 바 있었다(『정조실록』 정조 15년 8월 8일).

77) 『정조실록』 정조 16년 4월 29일 ; 16년 4월 30일 ; 16년 윤4월 2일 ; 16년 윤4월 3일 ; 16년 윤4월 4일 ; 16년 윤4월 9일.

의 대열에 유독 동참하지 않았던 벽파 윤구종의 평소 행적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는 유성한이 상소가 정당하다고 보았던 노론 벽파계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윤구종이 유성한을 비호한 혐의가 있기는 했으나, 엄밀히 보면 두 사안은 별개이며 윤구종을 비호하는 세력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장은 제한적이었다. 윤구종은 능관(陵官)으로서 경종비 단의왕후(端懿王后) 심씨(沈氏)의 혜릉(惠陵)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경종에 대한 신하로서의 절의(臣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던 언행이 문제된 것인데 비해,⁷⁸⁾ 유성한은 불손하게 선세자(先世子)의 고사를 원용하기는 했으나 정조에게 간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구종은 벽파계 인사이고, 유성한은 시파계 인사이므로 각별한 친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듯하다.⁷⁹⁾ 이 때문에 유성한을 윤구종과 같은 역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물론 윤구종은 경종에 대한 신하의 의리를 부정했다가 국문과정에서 사망했으므로, 비호 세력도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없었다.⁸⁰⁾ 영조가 확립한 신임의리에 따르면, 영조의 정통성 뿐 아니라 경종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 역시 흉역이기 때문이다. 이후 윤구종 사건은 선세자 무함세력이 경종을 부인하는 세력의 연속이라고 규정하는 측에서 선세자 무함의 근원을 소급·확대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을 뿐 논란의 중심은 아니었다.

본질적인 문제는 유성한의 정조 무함을 역적 행위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임오화변을 초래한 선세자 무함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다. 노·소론 선세자 보호세력의 유성한 성토를 이어서, 선세자 무함세력의 흉역을 거론하고 임오화변 재평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청남계 인사들이었다. 남인 권평(權坪), 이지영(李祉永, 필자 주 : 선세자 궁료 이만회(李萬恢)의 아들) 등은 영조대 김상로·홍계희 등과 결탁한 세력으로서 척신 정휘량(鄭黼良)·신만(申晩)·신회(申晦), 당시의 언관 박치원(朴致遠)·윤재겸(尹在謙), 관원 이현

78) 『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10일 ; 16년 윤4월 13일 ; 16년 윤4월 14일.

79) 대개 선세자 문제에 대하여 시파가 동정적이고 벽파가 비판적이라는 전제하에 유성한을 벽파 김종수계로 규정한 후, 유성한 성토와 선세자 동정론을 편 것이 時派라고 설명한다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1997, 303-304쪽 ; 박현모, 『정치가 정조』, 2001, 53쪽). 그러나 인맥·학맥상 시파에 가까운 유성한을 벽파로 규정하게 되면 노론 내에 광범하게 존재했던 선세자 비판론을 벽파에 한정시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80) 『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10일 ; 정조 16년 윤4월 14일 ; 정조 16년 윤4월 15일.

중(李顯重)·조덕장(趙德章) 등의 흉역 혐의를 공식 제기하였다.⁸¹⁾

이를 이어 등장한 것이 2차에 걸쳐 이우(李堦)를 소두로 해서 올린 영남 만인소였다. 1차 상소는 선세자 무함세력에 대한 기존의 성토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러한 무함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선세자에 대한 무함을 해명하는 조치, 즉 ‘변예무(辨睿誣)’를 제일의 과제로 제기한 점에서 새로운 문제제기였다.⁸²⁾ 정조는 이들을 특별히 접견하여, 이것은 자신이 40년간 강구했던 의리였다고 격려하였다.⁸³⁾ 이에 고무되어 올린 재소(再疏)에서는 ‘변예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 선세자의 덕(德)을 천명하는 윤음을 반포한 후 선세자의 역적을 추율(追律)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⁴⁾ 이들은 본래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기 위한 상소를 준비하고 있었다가, 유성한 사건이 발생하자 선세자 무함 수법으로 군주를 무함한 유성한을 처벌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선세자의 덕을 공식으로 천명해야 하며, 아울러 덕망있는 선세자를 모함했던 세력도 성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⁸⁵⁾ 정조는 영조의 하교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상 더 이상 토역(討逆)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영남인 1만여명의 주장은 국가의 공론이라고 특별히 격려하였다.⁸⁶⁾

김희(金熹)·이병모(李秉模)·서유린(徐有隣) 등 노론 시파 토역론자(討逆論者)들 역시 영남 남인의 문제제기에 동조하여 소두(疏頭)인 이우가 백신(白身)임에도 그를 의릉(懿陵) 참봉에 파격으로 의망하였고, 더 나아가 유성한을 역적으로 규정하며 그에게 ‘전신(傳神)’되었던 선세자 역적에 대한 광범한 토역론을 제기하면서 선세자의 지극한 덕(德)을 밝히고 ‘변예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⁷⁾ 이

81) 『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19일.

82) 엄밀히 말한다면, 영남 만인소는 정조 즉위년 李應元·李道顯 부자의 辨睿誣 주장을 반복한 것이므로 새로운 의리론은 아니다(『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8월 6일 을사). 정조 즉위년에 비해 정조를 자극하지 않게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바꾼 차이는 있으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세자 궁료인 영남인 權正枕의 『日記』를 근거로 선세자가 받은 무함을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는 같은 것이다. 이응원·이도현은 즉위 초 國喪中에 정국 상황도 감안하지 않고 성급히 상소했다가 伏法되었다. 그러나 영남 만인소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체제공을 통해 정조의 임오의리 수정 의지를 감지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정조의 특별 대우를 받았다. 같은 취지의 상소문에 대한 처분이 이처럼 상반된 것 역시 ‘정조의 임오의리’가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83) 『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27일.

84)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7일 갑진.

85) 영남만인소의 준비에서 登徹 및 귀향에 이르는 전 과정은 청남 영수 체제공의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431쪽).

86)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7일 갑진.

들은 당파·분파를 불문하고 뿌리 깊게 연계·전승되고 있었던 선세자 위해(危害) 세력을 겨냥하면서 ‘전신(傳神)’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선세자 위해 세력 가운데 정조 전반기에 걸쳐 흥인한계 북당은 대개 주별되었으나 아직 남당의 위해세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조 중반대의 현실에서 주된 토역 대상은 노론 남당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제 노론 시파가 영남만인소에 동조함으로써 선세자에 대한 무함을 변석하고, 영조대 무인·기묘년 이래로 선세자 무함에 동참했던 세자위해 세력을 처벌하는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이미 정조 전반 정휘량·신만 등의 흥역을 주장한 준소계 윤숙의 상소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는 정조가 윤숙 개인 차원의 주장을 묻어둘 수 있었으나, 이제 준소계 사헌부 관원과 영남의 1만 유생 공론에 노론 시파까지 가세한 이상, 정조는 임오의리 문제를 ‘불인문(不忍聞)’의 영역에서 꺼내어 천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 선세자 보호론을 계승했던 노론·소론·남인 제 세력이 유성한 성토론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영남만인소는 유성한 사건과 별개로 준비된 것으로서, 본래 목적은 그동안 금령 때문에 방기되어 있었던 과제 즉 선세자 무함 해소를 위한 ‘예덕’ 천명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만인소 준비 과정에서 유성한 사건이 쟁점으로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선세자 무함 문제가 당시에도 지속되고 있던 언론의 군주 무함을 처벌하는 것과 연관되어 더욱 격렬한 논쟁이 된 것이다. 군주인 정조 무함과 저군(儲君)인 선세자 무함은 본질에서 같으며, 이는 만인소가 제기했던 임오의리 재평가의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유성한 성토론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정조는 그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 둔 채 우선 이와 관련해 제기된 임오의리를 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유성한 성토와 별도로, 임오의리 천명 방향을 둘러싼 각 정파의 노선과 의리론상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기 위해서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분명히 드러내어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영조가 부정했던 선세자의 덕을 천명한다면, 선세자를 무함한 역신(逆臣)에 대한 성토론이 제기될 것도 분명하였다. 이를 방

87)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일 ; 16년 5월 5일.

지하기 위해, 일찍이 영조는 임오년 처분을 내린 후 사도세자를 방탕함으로 인해 폐위된 인물[愆敗縱敗]로 공식화했을 뿐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세자를 위해서 애책문(哀冊文)이나 만사(挽詞)를 지어 그 덕을 칭송한다면 이는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⁸⁸⁾ 비록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익록』은 이러한 ‘영조의 임오의리’를 전제한 것이었다. 정조는 ‘영조의 임오의리’에 의거하여 비로소 세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정조대 전반 이래 소론 완론과 그에 협력한 노론 동당계(東黨系)는 시파(時派)로서 『명익록』의 주인 역할을 담당했고, 노론 남당계(南黨系)는 정순왕후라는 버팀목을 배경으로 시파보다 더욱 강벽(強僻)하게 『명익록』 의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조대 전반 이래 정치세력의 주류로서, ‘영조의 임오의리’와 연계된 『명익록』 의리야말로 국가 기강을 수호하는 제방(堤防)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덕사·조재한·채제공 등으로 대표되는 준소와 청남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세자 추송론 배척에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⁸⁹⁾ 이러한 이유로 시파와 벽파의 주류는 모두 ‘영조의 임오의리’를 전제로 하는 『명익록』 의리 준수론자 즉 『명익록』 제방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조의 임오의리’ 수정은 『명익록』에 기반한 정조대 전반 의리론의 조정 즉 『명익록』 의리의 위상 재설정과, 그에 따른 정치세력의 재편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고 선세자의 역적을 처벌하자는 주장은 ‘영조의 임오의리’의 핵심을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무렵에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것은 노론 북당계(北黨系)와 소론 준론과 채제공계 청남 세력이었다. 노론 북당계는 시파(時派)의 일각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정조 즉위 초에 『명익록』에서 주된 공격대상이 되어 의리론상 타격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명익록』 제방 세력과는 거리가 있었다. 소론 준론계와 청남계 역시 추송 추진 세력으로 지목되면서 정조 초부터 배척대상이 된 바 있었다. 이들은 정조의 소통·진안책으로 꾸준히 등용되면서 그 입지를 향상시키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리론을 제기함으로써 정국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세력은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려는 대체(大體)에서는 방향이 같았

88) 『待闈錄』상편, 134쪽.

89) 당시인들은 追崇論과 反追崇論의 왕실측 배경으로 각각 혜경궁과 정순왕후가 있다고 인식했다(『頤齋亂藁』8책, 271-272쪽 참조).

지만, 강조점이 약간 다른 의리론을 주장하면서 경쟁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채제공계 청남 및 영남 세력과 노론 북당계 및 준소의 연합 세력이라는 두 계열로 정리할 수 있겠다.

먼저, 채제공계 청남과 영남남인들은 선세자의 덕을 천명한 후 이에 근거해 역적을 징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궁극에는 선세자 추왕(追王)까지 목표로 하였다. 이는 예덕(睿德) 천명 후 토역·추왕론(討逆·追王論)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세자시강원에 근무했던 영남인 권정침(權正忱)의 『서연일기(書筵日記)』를 근거로 선세자의 덕과 당시에 행해졌던 선세자 무함의 실상을 언급하며, 임오화변이 이들 무함세력에 의해 촉발되었으므로, 선세자 무함의 실상을 밝히고 무함 세력을 징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음에 이들은 선세자에 대한 신원(伸冤)을 요구하며 선세자 무함과 위해(危害)에 책임이 있는 김상로·홍계희·신광수·정후겸 등에 대해 본죄(本罪)에 입각한 토역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조가 이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영조의 임오년 처분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임오화변 전후 신하들의 행적 가운데 잘못 알려지거나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아서 토역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눈물로 설득하자, 이들은 세자의 덕을 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선세자의 역적을 토역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토역 대상자를 적시하지는 않음으로써 정조에게 처분의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후에 영남 인사들은 토역 보다는 예덕 천명을 강조함으로써 장헌세자 추송의 근거를 확보하고 궁극에는 추왕까지 목표로 하였다.⁹⁰⁾ 영남인들의 임오의리론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은 애초에 영남만인소를 유도했던 채제공이었다. 물론 채제공 역시 정조를 무함한 유성한에 대해 강력한 징벌을 주장했지만, 이를 선세자 무함 세력에 대한 성토로 연결시키지는 않았던 것이다.⁹¹⁾ 그

90) 물론 이 당시에 淸南도 追王 논의 자체가 사대부 청론에 배치된다는 공론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왕을 공식 표방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채제공이 정조·혜경궁의 추왕 의지를 궁극에는 받들 것이라는 인식은 광범하게 퍼져 있었고(『頤齋亂藁』8책, 271-272쪽), 혜경궁이 이에 대해서 채제공과 관련이 없음을 굳이 해명해야 했을 정도였으니(『한중록』「泣血錄」, 499쪽), 정조의 뜻에 곳곳하게 호응했던 채제공의 행적으로 볼 때 채제공계 청남이 추왕의 주체 세력임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훗날 철종대 을묘년에 柳致明·李彙炳·權載大 등 영남인들이 德宗의 사례를 거론하며 장헌세자 추왕의 상소를 올린 것은 채제공과 영남인들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다(『關揮錄』 권4, 89-90쪽 ; 『철종실록』 철종 6년 4월 2일 갑오 ; 철종 6년 5월 15일 병자 ; 철종 6년 7월 22일 계미).

91) 『정조실록』 정조 16년 8월 21일 정해.

는 무엇보다 정조가 천명한 의리를 의심하지 말고 따라야지 신하들 차원의 강경한 토역론을 관철시키려 군주와 각승(角勝)하다가 스스로 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영남 남인 일각의 토역론에 기반한 3차 상소 움직임을 제어하기도 하였다.⁹²⁾

채제공은 노론 남당계와 사안에 따라 대립한 적이 많았으나, 토역론자들처럼 임오화변 전후의 역적을 광범하게 설정하고 궁극에는 김종수·김귀주의 노론 벽파로 귀결시켜 성토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채제공은 ‘반’ 시파의 일원으로 인식될 정도로 주로 시파와 대립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김종수·유언호 등 벽파 인사들을 성토하기는 하였으나 『명의록』 의리 수립에 기여하였던 벽파를 역적으로 보지는 않았다.⁹³⁾ 벽파들이 순조초 신유사옥 당시 남인 내 반(反) 채제공 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채제공계 남인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고려했던 것 역시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이해된다.⁹⁴⁾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영남남인과 채제공계 청남은 ‘정조의 임오의리’ 천명 방향을 가장 정확히 읽고 그 취지에 적극 호응한 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조는 이들을 설득하여 선세자 위해 세력과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소론 탕평파 일부 및 노론 벽파계로 토역의 범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도한 것이다.

다음으로, 노론 흥봉한계 북당과 준소계는 선세자가 받은 무함을 해명하고 당시에 무함을 주도한 선세자의 역적들을 징토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이 『명의록』 역적의 연원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명의록』 상편(上篇)을 편찬해서 충역(忠逆)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변예무(辨謗誣)·토역 후 『명의록』 개정론이라 할 수 있다. 노론 북당 및 동당계인 서유린·박종악·심낙수와 준소인 윤숙(尹塾)·박하원(朴夏源)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선세자가 당한 무함을 분명히 밝혀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선세자를 위해했던 세력이 정조의 즉위에 반대했고 정조 전반기의 제반 반역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92) 『樊巖集』 권36, 24쪽.

93) 『待闈錄』, 328-329쪽. 박종악은 김종수를 유성한의 근거로 성토하자고 채제공에게 제안했으나, 채제공은 이것이 성토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하였다.

94) 정약용에 따르면 채제공은 정조가 김귀주의 諸子를 제거하려는 뜻을 돌려 놓았다고 한다. 순조대 초반에 자신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정순왕후 및 金龍柱 덕택으로 돌렸는데, 이는 자신들이禍를 당한 것을 순전히 南人 攻西派에게 돌리면서 이들을 惡黨이라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與猶堂全書』1집 권16, 「司憲府掌令錦里李周臣墓誌銘」, 29-30쪽 ; 『與猶堂全書』1집 권16, 「自撰墓誌銘-壙中本」, 11-12쪽).

주장하였다. 즉 선세자 부정 세력이 정조 부정 세력의 연원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정조에 의해 이미 처벌된 선세자 역신들과 『명의록』 역적들의 본죄(本罪)를 명시하고 뒤늦었지만 노적(孥籍)까지 시행해서 처단해야 하며, 세자 위해세력과 결탁해서 활동했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 노론 남당과 소론 탕평파계 중신(重臣)·언관(言官)·유생(儒生)들까지 광범하게 징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특히 선세자 무함의 흉역이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신(傳神)’인 유성한이 정조에게 무함을 시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무함의 연원이 김상로·홍계희가 말한 ‘군주는 가벼우나 사직은 무겁다[君爲輕, 社稷爲重]’ ‘세자가 신임의리(辛壬義理)에 소홀하다’는 등의 흉론(凶論)에 연원하며, 이에 입각하여 언론을 빙자해 선세자에 대한 온갖 무함을 지어내어 화변을 초래했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세손과 정조를 끊임없이 무함하여 흉역을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명의록』 개정론 제기 당시에는 노·소론 내 광범한 선세자 위해론자들을 두루 거론하며 징토를 주장했으나, 궁극의 목표는 선세자 위해론의 계승자들인 김귀주·김종수 등 노론 남당 핵심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들은 대개 윤숙의 계묘년(정조 7) 상소를 준거로 하고 있었는데,⁹⁵⁾ 윤숙이 정휘량·신만·신회·홍계희와 연관된 김한구·김귀주의 난만한 흉모를 거론하며 성토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⁹⁶⁾ 이들의 난만한 흉모란 선세자를 폐위하려는 것으로서, 임오화변 후 김귀주가 유폐시켰다는 ‘죄인지자 불가승통(罪人之子, 不可承統)’이라는 흉언과 『속대전(續大典)』의 ‘광역자감일등(狂易者減一等)’이라는 흉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흉언·흉론은 선세자가 의리죄인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비록 김한구·김귀주의 위상으로 인해 조정에서 문제되지 않았으나 발설 당시부터 주요 인사들에게는 알려져 있었다.⁹⁷⁾

95) 『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19일 이지영 상소 ; 정조 16년 5월 5일 서유린 상소 ; 정조 16년 5월 12일 박하원 상소 모두 윤숙의 계묘년 상소의 징토 대상을 인용하였다.

96) 『정조실록』 정조 7년 11월 11일.

97) 『속대전』 흉언에 대해 鄭民始와 李羽翥은 흥국영이 세손에게 보고하는 현장에서 직접 들었으며, 서유린 역시 ‘家人’이라고 할 정도로 친밀했던 이우진(『순조실록』 순조 1년 3월 13일)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이며, 심낙수도 정조 후반에 저술된 『黨逆列傳』에서 이를 사실로 서술했다(『黨逆列傳』 金龜柱傳, ‘龜柱語人曰, 無日記, 置處分何地, 遂有引律文凶言’). 八字凶言 역시 주요 인사들이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서유린이 일평생 고수한 것은 김귀주와 김한록을 토역하는데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서유린행장』, 17쪽).

이들의 목표는 흥인한계 북당의 죄악은 이미 처벌되어 『명의록』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김귀주·김한록 및 그에 연계된 김치인·김종수가 이끄는 노론 남당계의 흥역을 징토하고 『명의록』 상편에 이를 명시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노론 우의정 박종악의 상소는 유성한이 근거로서 김종수·김귀주를 명시하기도 하였다.⁹⁸⁾ 즉 정조 즉위와 관련된 ‘을미·병신년(乙未·丙申年)의 역적을 다스리는 까닭’은 선세자의 무함(無讞)이 시작된 ‘무진·기사년(戊辰·己巳年)의 역적’과 선세자의 무함(無讞)이 극에 달한 ‘무인·기묘년(戊寅·己卯年)의 역적을 다스리는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명의록』 상편을 편찬하여 『명의록』 의리의 근본을 밝히고, 선세자의 역적(逆賊)과 정조의 역적(逆賊)이 하나로 관통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다.⁹⁹⁾ 이는 영조의 대의리를 지키는 선상에서 『명의록』에 토역의 뜻을 은미(隱微)하게 붙여 놓는 미봉책이 아니라, 선세자에 대한 충역을 기준으로 하여 역적의 실죄(實罪)를 천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병모·서유린 등 노론 시파의 중신들이 선도했으며, 준소 유생 박하원(朴夏源)이 주도한 남학소(南學疏)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남학소는 준소 계열의 상소이지만, 박종악과 서유린과 정동준이 준소계의 남학소를 유도했다고 하듯 노·소론 토역론자들의 연합을 보여준다.¹⁰⁰⁾ 이들의 토역론은 노론 시파의 토역론자인 이병모와 서유린의 상소에 잘 드러나는데, 그 취지를 극단적으로 확대한 것이 박하원의 남학소(南學疏)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김상로·홍계희 등의 선세자 무함에 동조했던 노·소론 인물들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역적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 데서 볼 수 있듯, 역적의 범위가 확대되어 노론 남당과 소론 탕평파 다수 신료를 겨냥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아래의 표는 선세자 역신 토역론의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98)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4일. 박종악의 상소에 김종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김귀주는 ‘逆威’이라고만 표현하였다. 그가 말한 逆威이란 김귀주를 가리키는 것이다(『玄臯記』續編, 69쪽).

99)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일 ; 16년 5월 5일. ‘明義錄我東之春秋也, 乙丙之逆即戊己之逆也. … 蓋懲討之義一而已矣. 自戊辰己巳, 而爲戊寅己卯, 自戊寅己卯, 而爲乙未, 爲丙申也. 明之也, 同一義也. … 仍命構出一部之書, 大書特書, 曰乙丙以來諸賊中, 以某罪誅戮, 而其本則某年之逆也, 某逆以某罪追奪, 而其實則某年之凶也’

100) 『순조실록』 순조 1년 1월 16일 ; 『일성록』 순조 1년 1월 16. 이 연계는 벽파계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서유린·심낙수·정민시·정동준·이재간 등의 연계로 보았을 때 타당한 주장이다.

<표 2> 노론·소론 토역론자의 상소에 거론된 흉역과 사유

구분	흉역 거론자	흉역의 사유
이병모(李秉模) 상소 - 16년 5월 2일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문녀(文女)	안팎에서 도모, 흉언(凶言)으로 선동
	박치원(朴致遠)·윤재겸(尹在謙)	흉서(凶書)로 호응
	이현중(李顯重)	연석(筵席)에서 흉언(凶言)으로 호응
	홍인한(洪麟漢)·구선복(具善復)	주벌되었으나 본죄(本罪)가 밝혀지지 않았음
서유린(徐有隣) 상소 - 16년 5월 5일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문녀(文女)	흉당을 선도함
	김양택(金陽澤)·홍인한(洪麟漢)	삼포장범(三浦張帆)
	구선복(具善復)	화변(禍變) 현장에서 흉패(凶悖)한 일을 범함
	정휘량(鄭翬良)·신만(申晩)의 무리	신광수(申光綬)·정처(鄭妻)와 표리
박하원(朴夏源) 등 남학유생(南學儒生) 상소 - 16년 5월 12일	이창수(李昌壽)	조진도(趙進道) 과명(科名) 삭제를 유도
	김상로(金尙魯)·홍계희(洪啓禧)	대악(大惡)이나 차율(次律)만 시행
	정휘량(鄭翬良)·신만(申晩)	처벌 안됨
	박치원(朴致遠)·윤재겸(尹在謙)·강필리(姜必履)	선세자 비방의 흉서(凶書)를 올리고 포고(布告)할 것 청함
	서명응(徐命膺), 관학유생[館學儒生], 이현중(李顯重)·황만석(黃萬錫)·안형(安衡)·이이상(李頤祥)·송재덕(宋載德), 심이지(沈履之)	김상로·홍계희에 부응해 관학소(館學疏)를 올리게 해 선세자 모해(謀害), 심이지(沈履之)의 흉서(凶書)를 조종
	이정(李瀨)	자기 목을 찌르는 자해 소동으로 선세자의 과실을 폭로한 흉계
	이해중(李海重)	나경언과 한통속
	송재경(宋載經) 외 궁관(宮官) 회피 삼포장범(三浦張帆) 참가 제신(諸臣)	임오화변 당시에 춘방(春坊)·계방(桂坊)의 궁관으로서 도피자가 많았음 홍인한·김양택 외에도 다수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선세자 역적 토역론이 그들의 소굴[窩窟]·무리를 성

토하는 수준까지 철저히 관철된다면, 토역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 변예무(辨睿誣)와 예덕천명(睿德闡明)의 정당성마저 의심될 우려가 있었다.¹⁰¹⁾ 정조가 토역론에 대해 가장 우려한 점이 이것이다. 정조는 토역 확대를 위한 『명의록』 개정은 필요 없다면서 박하원이 주도한 남학소의 봉입 자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토역 확대 시도가 개별 인물의 행적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였기에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징토를 구실로 사감(私憾)을 풀거나 협잡하는 것에 가깝다며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정조는 영남인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출사한지 오래되어 조정의 사정에 어두우므로 토역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이들과는 다른 처지에 있는 노·소론의 주요 신료들과 그 자제들이 강경한 토역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¹⁰²⁾

이상 청남·영남인들의 예덕천명 후 토역론과 노·소론 토역론자들의 변예무 후 『명의록』 개정론은 서로의 주장을 근거로 삼기도 했을 만큼 본질에서 비슷한 의리론이지만, 우선 순위와 성토의 범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서유린·이병모·박종악·박하원 등 노·소론 토역론자들은 ‘오늘날의 급선무는 주토(誅討)의 본뜻을 밝히는 것’ 징토가 크게 행해져야 선세자의 무함도 밝아질 것¹⁰³⁾이라고 했듯이, 선세자 무함 세력의 토역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채제공과 영남유생들은 ‘예무(睿誣)를 분변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주토는 그 다음’¹⁰⁴⁾이라고 했

101) 준소 박하원의 경우는 서명응 및 그에 협력한 무리들을, 노론 박종악은 김종수를 주요한 討逆 대상으로 거론하였다. 서유린은 이를 확정하기 위해 『명의록』 상편의 편찬을 제안했지만, 그럴 경우 결국은 누구를 토역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조가 선세자 역신 토역론에 대해 가장 염려한 부분이 이것이다. 즉 토역을 우선하다 보면, 門戶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성토가 진행되어, 결국 자신이 천명하고자 하는 임오의리의 공정함이 도리어 손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명응·서명선의 조카 徐滄修의 경우에는 南學疏가 소론과 남인이 禍心을 숨기고 老論一隊를 망타하려는 전략이며, 특히 영조대의 대표적인 소론 가문으로서 탕평을 주도하였던 자신들을 老論으로 규정하여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明臯全集』 권6, 答李君正魯春). 토역론자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이는 『명의록』 의리 주인 徐命善과 그 一家의 위상에 커다란 위협이며, 이들을 反 정조세력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정조가 토역론을 제지하면서 조정을 꾀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102)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

103)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5일 ; 『玄臯記』續編, 67쪽, ‘三從叔父朴夏源爲疏頭, 極陳懲討之義. 其意以嶺儒疏出, 而辨睿誣·明義理之說無以復加, 亦以懲討大行然後, 睿誣夬辨, 而義理益明故也’.

104)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7일.

듯이, ‘변예무’에 주안점을 두었다. 물론 양자는 협력 관계에 있었고, 청남세력 역시 변예무 뒤에 천토(天討)를 주장한 점은 마찬가지로였지만,¹⁰⁵⁾ 천토의 방법과 범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⁶⁾ 뿐만 아니라 예덕 천명과 ‘변예무’가 이루어진 이후에 채제공 계열은 선세자에 대한 추송 또는 추왕을 주도하려 하였고, 노·소론 토역론자들은 토역을 주도하려 했던 구상의 차이 혹은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소론 토역론자들은 추송=추왕이 청론 사대부의 처지에서 추진해서는 안 되므로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公式) 견해였다. 박종악은 장차 『명의록』 상편을 편찬할 때에 조재한(趙載翰)과 같이 환관과 결탁한 추송 세력의 흥역에 대해서도 명시하자고 하였다.¹⁰⁷⁾ 서유린은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고 선세자의 역적을 처벌하자는 것은 추송과는 관계가 없으며, 자신은 영조의 뜻을 위배하지 않겠다는 정조의 의지를 믿었기에, 자신의 논의가 영남인들의 추송론을 꺾은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였다.¹⁰⁸⁾ 심낙수는 만인소의 의리에는 동의하나, 이처럼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흥적들에게 빌미만 주는 괴이한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거리를 두었다.¹⁰⁹⁾ 그러나 이들 토역론자들 역시 군주가 진정으로 추송=추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벽파처럼 적극 반대하며 군주와 맞서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었다.¹¹⁰⁾ 즉 추송=추왕 문제가 궁극에는 군주의 의향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신하들이 미리 예단하여 벽파처럼 반대하거나, 채제공처럼 신하로서 추왕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불경(不敬)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당시 추송에 대한 각 정파의 태도에 대해서는 『현고기』의 이해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105) 『정조실록』 정조 15년 5월 7일.

106) 채제공이 훗날 굳이 ‘天討’라고 표현한 것은 그 방식이 董狐之筆 즉 이미 처벌된 인사들에 대해 임오의리에 입각한 역적 처분을 분명히 하는 차원이었던 반면, 노·소론 토역론자들은 김귀주·김종수 등 벽파 영수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07)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4일 신유.

108) 『時僻源委』 ‘追崇義理, … 吾邊則, 明知聖心順守無違, 彼輩憶迓於不敢言之地, 自歸於大不敬矣’; 『순조실록』 순조 즉위년 11월 18일 병신. 이는 추왕이 무산된 순조 초반에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앞서 박종악의 주장과 연계할 때에 토역론자들이 추왕보다는 토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09) 『積善世家』 권7, 24쪽.

110) 노론 시파 토역론자들이 추송에 원칙상 반대했지만 끝내 淸南의 추왕론에 동조했던 것은 『玄臯記』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남 인재의 견해를 인용하여 추왕의 근거들을 소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玄臯記』속편, 72쪽).

전례(典禮)에 대해, 노론 중 시파(時派)는 시행 여부에 참섭(參涉)하지 않았으며, 노론 중 벽파(僻派)는 기필코 시행하지 않고자 했으며, 남인·소론 중 시파는 기필코 시행하고자 했으며, 남인·소론 중 벽파는 노론과 대략 같았다. 말년(末年)에 가서 노론 중 시파는 유약(懦弱)했기 때문에 점차 시행하는 쪽으로 빠져 들었으나 힘껏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직 노론 중 벽파만이 강경했기 때문에 시종 흔들리지 않았다.¹¹¹⁾

이에 따르면 청남계와 준소계가 추왕의 전례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노론 시파는 점차 추승론으로 기울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노론 시파를 단일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정밀한 분석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노론 시파 가운데는 벽파와 점점 합일되는 『명의록』 제방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노론 시파는 노론 시파 토역론자를 가리킨다.

노론 시파 가운데 토역론자들은 준소계와 비슷한 의리론을 견지했고, 특히 정조 중반 이후 혜경궁의 미지(微旨)를 받아 왕실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는 체제공과 합하고자 했다고 하므로,¹¹²⁾ 이들을 노론 시파 가운데 추왕에 적극적인 세력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서유린의 아들 서준보(徐俊輔)에 의하면, 선세자 추왕의 밀지(密旨)를 받은 사람은 서유린(徐有隣)·서유방(徐有防), 김조순(金祖淳), 윤행임(尹行恁)이었다고 한다.¹¹³⁾ 체제공은 진작부터 선세자의 역적과 김귀주·김종수 등 벽파에 대한 토역보다는 선세자의 덕 천명과 이에 근거한 추왕에 주력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조의 뜻을 가장 정확히 읽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소론의 토역론자들과 연대하여 선세자 추왕도 주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1) 『玄臯記』속편, 「時僻本末」, 79쪽. 「시벽본말」은 『현고기』와는 별개의 저작이과 저자도 알 수 없지만, 『현고기』의 견해와 여러 모로 일관되므로 준소계 토역론자의 저술로 판단된다.

112) 『頤齋亂藁』8책, 271쪽. 황윤석은 서유린·윤행임이 혜경궁의 추승 밀지를 받았으며, 추승 반대자들은 정순왕후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13) 『關揮錄』권4, 79-80쪽. ‘先臣兄弟 … 金祖淳 … 尹行恁, 最致密邇, 稔承聖意. … 庚申天崩之後, 事關典禮, 鄭重趲起, 以至于今’ 서준보는 追王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다만典禮라고만 했으나, 당시에典禮 문제는 통상 선세자 追王을 의미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를 추왕 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노론 시파와 준소의 토역론자들에 정면으로 맞선 것은 노론 벽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김귀주 계열이었다. 이들은 일찍부터 흥봉한계 북당(北黨)에 대한 토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명의록』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흥봉한계 북당 토역을 명시하는 『명의록』 개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사망한 김귀주의 주장을 견지하고 있던 김한기는 이 무렵 사망하면서 흥봉한·흥낙임을 역적으로 성토했다는 주장을 담은 유소(遺疏)를 남겼다.¹¹⁴⁾ 정조는 흥봉한을 역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워낙 분명했기에 그의 유소를 본 후에 불에 태우도록 해서 유소와 관련된 논의 자체를 막았다. 그러나 당시의 신하들 가운데는 유소를 본 사람도 있었고,¹¹⁵⁾ 순조대 초반에 공개될 때까지 정순왕후를 배경으로 하는 벽파 의리론의 뼈대로 작용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한기의 유소는 벽파의 강력한 후원자인 정순왕후가 주도하는 『명의록』 개정론이라 할 수 있다.

김한기는 은언군이 영조대 후반 흥봉한·흥인한·흥낙임 등에게 추대된 이후,¹¹⁶⁾ 정조대에도 흥국영과 연계되어 상계군을 추대하려고 하는 등 난역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단되지 않는 것은 정조가 공법을 업신여기고 사정(私情)에 치우쳐 난역을 비호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 주장에 입각한다면, 김한기·김귀주 등은 흥봉한의 은언군·은신군 추대사가 세손 대리청정 반대와 정조대에 일어난 모든 화란(禍亂)의 기미였다는 시각을 견지한 것이며,¹¹⁷⁾

114) 遺疏에 병오년(정조 10)으로부터 6, 7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므로, 작성 시점은 정조 16년 후반이다. 순조대에 김한기 유소 공개를 촉구한 李安默은 凶徒의 우두머리로 흥낙임을 꼽았고, 정동준·서유린·서유방·정민시·김희·박종악·채제공 등이 흥낙임과 체결했으며, 특히 박종악이 壬子疏를 짓도록 준소들을 추동한 점을 들어 흥낙임과 함께 흥역 중 最一人이라고 주장했다(『순조실록』 순조 1년 1월 16일 ; 『일성록』 순조 1년 1월 16). 김한기는 노론 흥봉한계 북당과 준소계의 이러한 토역론에 맞서기 위해 遺疏를 작성한 것이다.

115) 『及健齋漫錄』「禮曹判書李公諡狀」, 220쪽.

116) 흥봉한의 은언군·은신군 추대설은 김귀주도 그 허무맹랑함을 인정하며 정후겸의 소행으로 돌릴 정도로 근거는 박약한 것이다(『公車指南』「김공가암유사」). 그러나 김귀주계는 흥봉한·흥인한·흥낙임의 죄를 언급할 때면 으레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정조대 모든 逆變의 근원을 이들의 은언군 추대에 의한 세손 핍박에 두었으니, 「김공가암유사」의 내용과는 달리 흥봉한의 은언군·은신군 추대설을 殺洪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었다고 하겠다(『순조실록』 순조 원년 4월 25일 신미). 이러한 인식에 더하여, 김귀주계는 은언군이 흥봉한과 혜경궁의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은언군을 역적으로 제거한다면 이들이 주도하는 追王論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117) 『순조실록』 순조 원년 1월 16일 계사. 김한기는 정조가 私情에 빠져 환란을 막는 경계를 경인년(영조 46)에 소홀히 한 이래, 정조대에도 병신년, 갑진년, 병오년 등 여러 차례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이에 입각해서 순조대 초반 흥봉한·흥낙임·은언군을 토역하기도 하였다. 김한기의 유소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성토하고자 했던 ‘거괴(巨魁)’는 흥봉한과 흥낙임이었다.¹¹⁸⁾ 그는 이들과 연계된 세력이 정순왕후에 대해 ‘셋째 왕손을 무육(撫育)한다’든가 ‘을미년에 수렴청정(垂簾聽政)하려 한다’든가 하는 흥언을 했고, 정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김귀주를 성토할 때에 정순왕후까지 거론하며 핍박하는 등 신하로서 국모(國母)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였다.¹¹⁹⁾ 아울러 그는 이들과 결탁했던 흥국영에게 『명의록』을 편찬하게 했기에 『명의록』은 흥인한·정후겸 등 약간의 흥역과 그 도당만 성토했을 뿐 난역의 근원은 빼 놓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이들이 국모에 대한 무함도 서슴치 않았기에 그 후에도 정순왕후를 능멸하는 일이 계속되어 정순왕후 어찰(御札)까지 함부로 열어보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이들 제 역적에 대한 토역을 시행하라고 촉구하였다. 결국 김한기는 정조대에 연이어 발생한 김하재·김우진·구선복·상계군·조시위 등의 제반 옥사와 정순왕후에 대한 능욕의 근원을 영조 후반기로 거슬러 올라가 제시하면서, 흥봉한·흥낙임에 대한 사은(私恩)을 끊고 종사를 위한 엄정한 토역을 주장한 것이다.¹²⁰⁾

김한기는 이전에도 정순왕후의 언교를 받아 『명의록』 의리를 재천명할 것을 요구했던 바, 이는 정순왕후에 대한 무함을 벗기고 정순왕후가 『명의록』 의리 주인임을 분명히 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다.¹²¹⁾ 사실 김귀주계 벽파의 『명의록』 개정론은 정조대 초반 정이환(鄭履煥)의 주장 이래 김한기에 의해 지속된 셈이다. 이에 의하면 『명의록』은 단지 대리청정 반대만을 문제삼은 것으로서, 흥역의 근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김한기가 영조대 후반에서 정조대에 걸친 정순왕후의 토역 공로에 대해 강조한 것 역시 결국 정순왕후가 정조 즉위 후에도 줄곧 의리주인의 역할을 하였음을 드러내고, 이에 저항했던 흥봉한·흥낙임 세력을 토역하는 방향으로 『명의록』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한기의 유소는 정순왕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과감한 비판이었으며, 벽파가 집요하게 정조에 항언(抗言)할

118) 『한중록』 「泣血錄」, 491쪽, 503쪽, 545-547쪽.

119) 김한기의 遺疏는 공개되지 않다가 순조대에 가서야 공개되었다(『순조실록』 순조 원년 1월 16일 기사).

120) 이상 김한기 유소의 내용은 모두 『순조실록』 순조 원년 1월 16일 癸巳에 근거함.

121) 『정조실록』 정조 9년 5월 4일 임자.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²²⁾

이상에서 볼 수 있듯, 유성한 사건을 계기로 임오의리 재평가 문제가 대두되어 청남계의 예덕천명론(睿德闡明論)이 제기되어 추왕(追王)이 모색되는 가운데, 노론 시파와 준소 주도로 선세자의 역신(逆臣)을 토역하는 『명의록』 개정론과, 노론 벽파 주도로 흥봉한계 복당을 토역하는 『명의록』 개정론이 제기된 것이다. 기존 노론·소론·남인 내부 제 분파는 임오의리 천명 방향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분열하거나 일시 연합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신하들의 분열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조는 자신의 의리를 분명히 하되 공존의 논리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최대한 사정(私情)을 제어하면서 공적인 의리를 제시해야 하였다. 그것은 영조의 처분과 대의리를 준수하는 것과 자신의 임오의리를 천명하는 것이 병행(竝行)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 해법은 「현릉원지문」에서 확립된 의리를 구체화·공식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이지영(李祉永) 및 영남인사들을 친히 접견하여, 선세자 보호론자들 사이에 유포되어 있던 저간의 오해, 즉 선세자 역적에 대한 토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였다. 정조는 즉위 이후 행해졌던 역적 처벌의 명목은 자신과 관련된 개별 역모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들의 본죄(本罪)는 사실 임오화변 전후의 행적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토역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비록 우회적인 방식으로나마 이미 선세자의 역적은 모두 처벌했으니 더 이상의 토역 확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가 이미 처벌했다고 밝힌 역적들의 임오화변 관련 행적을 살펴보면, 홍계희(洪啓禧)·김상로(金尙魯)·문녀(文女)는 선세자 무함의 주체였고, 흥인한·구선복은 뒤주를 들여 선세자를 죽이는데 가담한 죄가 있었으며, 신광수(申光綬)는 선세자를 향한 제반 악행이 있었고, 김양택·흥인한은 임오화변 후에 한강의 삼포(三浦)에서 뱃놀이(張帆)를 주도한 죄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김상로·문녀는 영조의 하교에 입각해 처벌하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명의록』 및 그 이후의 모역 사건에서 스스로 천벌(天罰)을 범했으므로 임오의리의 뜻을 붙여서 이미 처벌했다는 것이다. 그 실례는 흥인한·홍계희·구선복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조는 흥인한을 세손 대리청정 저지를 위한 ‘삼불필지(三不必知)’를 주장

122) 『可菴遺稿』「可庵先生年譜」, 669쪽. 김한기·김귀주가 정순왕후를 배경으로 함은 물론이다.

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하였지만, 사실 ‘삼불필지’는 다소 애매한 죄목이고 실제 죄목은 임오화변 당시에 구선복(具善復)과 함께 뒤주를 들인 것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살점을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구선복 역시 자신에 대한 역모를 주도한 죄로 이미 처벌하였다고 한다. 또한 홍계희 집안의 부자 형제들을 모두 복주(伏誅)한 것 역시 단지 자신에 대한 역모 때문만이 아니라, 선세자가 서연(書筵)에서 홍계희를 강충(江充)과 같은 흉역이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¹²³⁾

이들과 달리 세자 위해의 중심이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서 지속적인 성토 대상이 되었던 신만·정휘량·정처(鄭妻)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정조에 따르면 이들의 행적은 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선세자를 해치는 데 앞장선 것은 아니어서, 정휘량은 세자를 보호한 공로도 있으며, 신만은 영의정으로서 영조의 뜻을 충실히 받들었을 뿐 그 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선세자의 원수·역적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들까지 그 아들인 신광수·정후겸으로 인해 논죄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임오화변을 초래하였다고 알려진 이러한 핵심층을 처벌하지 않는 이상, 언론을 활용해 선세자를 무함·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에 대해서는 영조가 항상 ‘간언(諫言)하는 신하를 죽일 수는 없다’고 했던 뜻을 계승하여 더 이상 처벌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¹²⁴⁾

한편, 정조는 즉위한 직후에 조재한(趙載翰)을 주벌(誅伐)한 이유는 그가 추송을 빌미로 환관과 결탁하여 세손 시절부터 선세자 추송을 내세우며 자신을 위협한 데에 있었음을 분명히 주지시켰다. 영남인 이도현(李道顯)은 이러한 내면의 사정도 모른 채 조재한이 처형된 이후에 재차 추송론을 제기했다가 함께 처벌받은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¹²⁵⁾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정조가 즉위 초에 추송론자를 처단하였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즉 정조는 저들의 죄가 추송 추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환관과 부당하게 결탁하여 군주를 위협하였던 추진의 방식에 있었다고 설명한 것이니, 이는 오히려 선세자 추송론 제기의 정당성은 열어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123) 『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22일 ; 16년 윤4월 27일.

124) 『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22일 ; 16년 윤4월 27일.

125) 『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22일.

정조는 토역론자가 요구했던 선세자 역적 징토와 『명익록』 상편 편찬을 거부했고, 청남이 요구한 변예무·예덕천명의 윤음을 반포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그 대신 정조는 구전하교(口傳下敎)의 형식으로 즉위 이래 선세자의 역신에 대한 토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구전하교의 내용은 영조의 갑신년(甲申年, 영조 40) 하교, 즉 임오년 신하들의 죄범(罪犯) 여부에 대해서는 영조 자신이 담당하겠으니 ‘더 이상 말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며 제기해서도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의 ‘통석(慟惜)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 하교는 같은 날 영조가 「종통윤음(宗統綸音)」을 내리기 전에 세손과 신하들을 불러 놓고 진전(眞殿)에 고한 후 신신당부했던 것이지만 세손의 요청에 의한 세초(洗草)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조가 임오년 신하들의 죄범(罪犯)에 대해서는 토역을 거론하지 말라고 했던 영조의 취지를 재차 설명한 것이다.¹²⁶⁾

정조는 영조의 통석한 뜻도 받들고 자신의 애통도 펴야 했기 때문에 즉위 후에 권도(權道)와 경법(經法)을 함께 사용하여 선세자의 역적은 자신과 관련된 죄로 이미 처분하였는데, 이는 ‘즉위 이래의 역옥(逆獄) 처벌은 모두 임오년의 의리에 근본한 것’이며, ‘원수를 잊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안으로는 묵묵히 징토한 것’이고, ‘위로는 성은(聖恩)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결국 차례대로 설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조를 계승한 자신으로서는 영조의 당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토역을 정도(正道)로 행할 수는 없었지만, 권도로나마 이미 주토(誅討)를 행하였기 때문에 불공대천의 원수를 그대로 방치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신을 향하여 생부의 ‘원한을 잊었다(忘)’는 말로 무함하며 토역을 확대하려 한다면 이를 ‘협잡’으로 간주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¹²⁷⁾ 이렇듯 변예무·예덕천명의 윤음 반포도 거부한 정조였기에, 토역 확대를 위한 『명익록』 상편과 같은 의리서 편찬을 거부한 것은 당연하였다.

126)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기미). ‘最是甲申二月二十日, 召大臣諸臣於眞殿門外, 有御筆手書, 口奏萬言文字頒示之舉, 而其概略, 卽某年事之或有以某有何罪, 某犯何事, … 以不忍言·不忍聞·不忍提·不忍見·不忍道之句, 結之曰: ‘以聖躬當之’, 諄諄申申’

127)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기미).

정조는 만인소의 의리를 공론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를 구전하교(口傳下教)의 형식으로만 언급하면서 공식 반포하는 것을 굳게 거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영조의 성헌(成憲)’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¹²⁸⁾ 그 대신 정조는 임오년의 역적을 이미 처벌했을 뿐 아니라 이미 『명의록』에 『춘추』의 은미한 뜻을 붙이는 방식으로 임오의리까지 표현해 두었으므로,¹²⁹⁾ 자신의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설명하였다. 『명 의록』은 저군(儲君)의 정당한 계승에 대한 방해를 단죄한 기록이고, 이런 점에서 『명 의록』 이래 역옥 처분의 의리 근원이 실제로는 ‘정조의 임오의리’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의리의 기준이 『명 의록』에서 장차 ‘정조의 임오의리’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정조는 이를 어떤 문서에서도 명시하지 않고 다만 은미한 뜻을 붙여 놓았으니, 이것이 ‘권도에서 경법을 구하는[求經於權]’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춘추』를 지은 것은 공자(孔子)이지만 발휘한 자는 좌씨(左氏)·공양씨(公羊氏)·곡량씨(穀梁氏)였던 것과 같이, 은미하게 감추어둔 ‘정조의 임오의리’를 공식 천명하는 과제는 후대로 남겨두겠다는 의미였다.¹³⁰⁾

이러한 정조의 의리에 호응한 것은 당시에 청남과 본소론(本少論)·준소(峻少)를 대변했던 채제공, 이복원(李福源), 김노진(金魯鎭) 등이었다. 특히 『명 의록』 준수론자였던 이복원이 채제공과 함께 정조의 구전하교를 받들겠다는 연명상소를 올린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는 노·소론 시파의 일부와 준소와 청남·영남인이 자신들의 기존 의리를 일부 조정하면서 ‘정조의 임오의리’ 천명 방식에 호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채제공은 그동안 영남 유생들과 함께 ‘애통한 윤음을 내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날의 구전하교(口傳下教) 이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면서 예덕천명의 공식화와 토역론 주장은 철회했기 때문에,¹³¹⁾ 자신들의 의리론을 일부 수정하였다. 그 결과 채제공은 소론 탕평파 및 준소에 걸쳐 두루 원만하였던 이복원과 더불어 정조가 영남유생을 접견한 자리에서 임오년의 처분을 ‘추회(追悔)하신 영조의

128)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7일.

129) 실제로 『명 의록』의 첫머리는 세손에 대한 근거없는 무함으로 시작하는데, 정조는 이를 선세자에 대한 무함이 근거 없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30)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

131)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

성덕(盛德)과 선세자의 지성(至誠)·효성(孝誠)을 받들어 대의(大義)를 천명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당시의 흉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정조의 설명대로 주벌이 행해졌으므로 더 이상의 징토 요구는 협잡하는 사의(私義)라고 인정하는 연명 상소를 올릴 수 있었다. 준소의 김노진 역시 같은 취지의 상소를 올렸다.¹³²⁾ 연명소의 취지는 영조의 추회 및 선세자의 덕을 공식 천명하는 것의 정당성은 정조 자신이 인정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장래의 과제로 남겨두되, 그러한 전제하에 정조의 구전하교에 호응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조 구전하교의 미비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호응한 것이라 하겠다. 정조는 구전하교에 호응한 이들의 연명 상소에 대해 '천하만세에 걸친 공공대의리(公共大義理)'이고 '의리 가운데서도 진의리(眞義理)'라며 높이 평가하였다.¹³³⁾

이상에서 보았듯, 유성한 사건 전후로 나타난 정조의 태도는 즉위 이래 선세자 문제에 대해 불인언·불인문의 금령(禁令)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서는 임오화변의 재평가라 할 수 있을 만큼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최종 결과물인 정조의 구전하교의 실질 내용은 영조의 갑신처분 준수를 재차 강조한 것이고, 비록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조의 임오의리'에 입각해 토역도 이미 행하였으니 더 이상의 토역도 없을 것이며, 선세자의 덕을 공식으로 천명하는 운음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정조는 영남인들과 노·소론의 토역론자들이 제기했던 주장들에 대해 금령으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경청·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끝내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별반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자신은 즉위 이후 근본을 배반하거나 선세자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조의 구전하교는 '영조의 임오의리' 수정과 '정조의 임오의리' 천명의 당위성을 인정했을 뿐, 다양한 차원의 요구 사항에 비해서 실제 새롭게 취해진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의 임오의리'의 공식적 표명이나 이에 입각한 토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조의 이러한 의리 표명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지금껏 정조의 의리는 『명익록』에 근거한 것으로 표방되었으나, 그 실제의 기준은 임오의리에 있었음을 천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

132)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

133)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 '上曰, 此義理, 卽天下萬世公共之大義理.' '批曰, … 卿等 … 交相曉告, 使人人知此箇義理, 亦知義理中眞箇義理.'

안 금령의 영역에 속해 있던 임오의리 관련 논의가 비로소 ‘다시는 본사(本事)를 꺼리지 않게 되었다’고 할 만큼 커다란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 이것은 선세자 보호론 계열에게는 대단한 진전이였다.¹³⁴⁾ 다만, 구전하교라는 형식과 내용은 예덕천명론자나 선세자 역적 토역론자들의 ‘정조의 임오의리’ 천명 기대에 못미쳤던 것은 분명하였다. 채제공이 정조의 구전하교에 호응하는 연명소를 올리면서도, ‘이미 퍼졌던 의리가 장차 다시 어두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표출하며 정조의 예덕 천명의 본 뜻을 강조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¹³⁵⁾

청남계에 비해 노·소론 토역론자들의 불만은 더 심했으니, 준소 이조원(李祖源)이 ‘대도(大道)를 버려두고 곡경(曲逕)을 취한다’고 했던 것은 정조의 당당하지 못한 천명 방식에 대한 정면 비판이었다.¹³⁶⁾ 우의정 박종악은 정조의 구전하교에 채제공·이복원이 연명소로 호응하는 등 자신의 기대와 달리 사태가 전개되자, 그동안 제기된 선세자 역적 토역론의 취지를 종합하면서 『명의록』 상편의 편찬을 재차 요구했으며, 더 나아가 김종수와 ‘역적’ 김귀주 등 남당계열 인사들을 유성한근의 근거로 지목하여 징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¹³⁷⁾ 토역론의 정당성을 굽힐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조는 도승지 이조원을 삭직시킨 후 유배 보냈고, ‘박명원의 조카’가 자신을 등졌다며 박종악을 우의정에서 삭직시키는 대신 ‘국가편(國邊)’ 사람인 김종수를 우의정에 임명했으니,¹³⁸⁾ 강경 토역론자들을 강하게 제지하며 토역 확대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가 갑신처분의 준수와 토역확대 반대의를 재차 분명히 보여준 것은 이들에 의해 주된 토역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노론 벽파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애초에 노론 벽파계는 영남 만인소가 대의리를 변경하려는 것으

134) 『玄臯記』續編, 63쪽. ‘蓋自丙申以後至今十七年, 某年義理爲世大禁, … 及是適會柳星漢事, 言端始發, 李祉永之疏出, 而始專以某年爲說, 於是嶠南萬言之疏, 一邊兩重臣之章, 相繼而起, 聲討頗張, 不復以本事爲諱矣’

135)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

136) 『정조실록』 정조 16년 12월 22일. 이조원의 비판은 정조가 영남인을 접견한 직후 筵席에서 행해진 말인데, 정조는 몇 달 후 이를 문제 삼아 이조원을 유배보낸 것이다 : 『臥雲翁聞見隨記』, 21쪽에 그의 발언 내용이 상세히 전한다.

137)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4일 신유.

138)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4일 신유.

로 인식하여 상소의 봉입 자체를 막았고, 만인소가 올려진 이후에 그 내용에 동조했던 노론 시파 토역론자 김희(金熹)의 행위를 영남인에 아부하는 것으로 비판하거나,¹³⁹⁾ 채제공에 대해서 ‘흉악한 꾀로 국시(國是)를 바꾸려는 책략을 하루도 잊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시각이었다.¹⁴⁰⁾ 노론 벽파는 김귀주·김한기의 인식을 공식 표방하지는 못했더라도 최후의 제방(堤防)으로서 ‘영조의 임오의리’를 강력한 준거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론 벽파가 ‘정조의 임오의리’ 천명에 저항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벽파라는 명칭 때문에 강경한 의리 고수의 면모만 부각되어 있으나, 벽파도 조정의 신료인 이상 ‘정조의 임오의리’로 대변되는 군주의 새로운 의리 지향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의리론을 재정비해야 했던 것은 당연하다.

노론 벽파 역시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기 위해 정조가 제시한 근거들을 부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조의 갑신처분을 준수하고 토역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만 확실하다면 신하된 도리상 군주의 사친(私親)에 대한 ‘예덕(睿德)’ 천명에 반대할 수는 없었다. 몇 년 전에 이미 윤시동(尹蓍東)이 선세자의 신임의리관을 잘못 거론했다가 엄한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김치인·김종수 등도 그 잘못을 인정한 바 있었기 때문에,¹⁴¹⁾ 더 이상 선세자의 신임의리관을 문제 삼을 근거도 없었다. 예덕 천명은 시기 선택의 문제일 뿐이었고, 더 나아가 ‘영조의 임오의리’가 변경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였다. 특히 벽파계 가운데 본류라 할 수 있는 노론 남당의 영수 김종수는 이러한 정국 변동에 대처할 새로운 의리를 모색했으며, 이는 그와 가장 가까웠던 노론 중당계(中黨系)의 유언호·윤시동에 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론 벽파는 정조의 예덕 천명 의지와 근거가 명확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의리만 고수할 수는 없었으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의리를 모색해야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문건이 김종수의 「단양서(端陽書)」인데, 아래는 그 일부이다.¹⁴²⁾

139) 『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일 기해.

140) 『정조실록』 정조 17년 5월 28일.

141) 『정조실록』 정조 13년 1월 9일 병인 ; 『頤齋亂藁』8책, 437쪽, 456쪽.

142) 『夢梧集』 권4, 「書嶺儒李堉入侍筵本要語後」, 21-22쪽. 김종수는 정조가 영남인들을 접견하며 나눈 대화를 정리한 「筵本要語」를 본 후, 이에 대한 논평을 남겼는데, 端陽前日に 썼다고 하여 통상 「端陽書」라고 하였다.

지금 연석(筵席)의 대화를 보니 … 임금의 사려가 심원(深遠)하다. 이를 깨닫는지 여부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으나, 상급(上級)의 사람이 아니라면 기필할 수 없다. 아! 사세(事勢)에 변함이 없다면 그 의리(義理) 또한 변함이 없다. 이는 우부우부(愚夫愚婦)라도 알고 있다. 하지만 사세에 변함이 있는 경우는 의리 또한 따라서 변하며, 변할 때에 도리(道理)에 위배되지 않아야 대성인(大聖人)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리는 정심(精深)하고 미묘(微妙)하여 지혜로운 자라도 쉽게 깨닫지 못한다. 저들 이덕사·조재한·박상로·이도현이 역적이 된 까닭은 식견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니, 저들의 전후에 당론의 잘못과 이해 관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 넓은 팔방(八方)의 세계에 이 글로 말미암아 한사람이라도 우리 전하(殿下)의 본심을 알게 되는 자가 있다면, 이 미약한 신하가 남다른 대우를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김종수가 세손의 궁료시절부터 정조에게 가장 강조했던 바는 ‘도리로써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효라고 여기는[以道理事親爲孝]’ 것이었다. 이 시기의 상황에서 도리란 영조의 대의리 및 『명의록』 의리를 지칭함은 물론이며, 이에 변화가 없는 한 지금까지 견지했던 벽파의 의리 역시 변함없는 상도(常道)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 사세가 변할 경우, 우부우부처럼 상도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영조의 대의리 및 『명의록』 의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는 것 자체는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의리를 강구해 두어야 했으니, 그것은 ‘수시변역(隨時變易)’의 의리였다.¹⁴³⁾ 즉, 사세의 변화는 그에 따른 의리의 변화를 수반하며, 그 변화한 의리가 도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성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했던 준소의 이덕사·조재한과 남인 이도현 등은 정조 초반에 사세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당론에 오도되어 이를 관철시키려다 반역을 범했다는 것이다. 이 「단양서」는 크게 전파되었으며, 김종수 역시 이를 ‘대수립(大樹立)’으로 여길 만큼 대단히 자부하였다.¹⁴⁴⁾

143) ‘隨而變’의 의리는 훗날 정조 甲子年 上王 구상의 핵심인 ‘隨時變易’의 의리와 상당 부분 호응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조의 ‘隨時變易’에 대해서는 IV장 참조.

김종수는 얼마 후에 이를 더욱 분명히 했으니, 단종의 신하들을 복관하는 의리를 설명한 「신원록발(伸冤錄跋)」이 그것이다. 김종수는 세조가 예종에게 했다는 말, 즉 ‘나는 둔괘(屯卦)에 해당하니, 너는 태괘(泰卦)에 해당한다. 사세(事勢)는 때에 따라 변하니, (너의) 행적을 구애받지 말라’¹⁴⁵⁾고 했던 것은 세조의 성덕(盛德)을 보여주는 것인데, 후대의 사람들이 세조의 성덕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이를 가리면서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 두 대신을 복관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므로, 결국 세조가 보여준 성대한 군덕(君德)을 기준으로 신하들의 복관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⁶⁾ 이는 「단양서」의 의리가 김종서·황보인 등을 세조의 난신(亂臣)에서 단종의 충신(忠臣)으로 재평가하는 데 적용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김종수는 벽파의 의리를 철저히 고수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앞으로도 한동안 그러하겠지만, 사세의 변화에 따른 의리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다.

김종수는 ‘영조의 임오의리’ 변경 가능성에 대비했으나, 우선은 국시로 확정된 의리·도리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벽파를 견지해온 그의 처지에서 ‘영조의 임오의리’와 『명의록』 의리와 ‘정조의 임오의리’를 조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김종수는 노·소론의 시·벽파를 막론하고 『명의록』 및 대의리의 수호자로 위상이 제고되었다. 사실 노론 시파는 『명의록』 의리를 기준으로 하는 세력이며, 『명의록』은 ‘영조의 임오의리’를 전제로 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파 내에 ‘정조의 임오의리’ 수정 시도에 대해 불안·의혹하는 시선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종수가 『명의록』 의리 주인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 「단양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노론과 소론의 시파인 『명의록』 의리 준수자들은 「단양서」에 제시된 의리를 높이 평가하였다. 오재순(吳載純)의 아들 오희상(吳熙常)은 「단양서」의 의리가

144) 『待闈錄』337쪽. ‘此書大播一世, 自謂大樹立, 而見者笑之’. 물론 朴夏源은 김종수를 성토한 반대파로서 그 비웃음을 전한 것이지만, 노론계에서 이 글의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145) 世祖 訓辭의 정확한 내용은 윤정, 『18세기 국왕의 文治 사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207쪽.

146) 『夢梧集』 권4, 「伸冤錄跋」, 22-23쪽. 魯山君을 端宗으로 追復하고 兩大臣과 死六臣을 신원하는데 가장 앞장선 것이 숙종·영조와 송시열계 문인들이었으며, 영조대에 追復과 伸冤이 이루어졌음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다(윤정, 『18세기 국왕의 文治 사상 연구』, 2007). 김종수는 兩大臣 복관의 전말을 기록한 『伸冤錄』을 읽고, 이를 隨時變易의 의리로 정리한 것이다.

극히 정밀하고 명백하여 선왕의 정의(精義)를 천양하면서, 이로써 이류(異類)의 사설(邪說)을 막았다며 김종수를 명의(名義)의 표준으로 칭송하였다.¹⁴⁷⁾ 서명응·서명선의 조카 서형수(徐滢修)는 정조가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는 선에서 영남 인들을 포용한 뒤에 잘 타일러 돌려보낸 것은 ‘변화에 잘 대처한 것[善處變]’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때에 김종수의 「단양서」가 나와서 준소와 남인의 전례(典禮) 변경 요구에 흔들렸을 정조로 하여금 선후(先后, 필자 주: 정순왕후)의 뜻을 잘 받들어 평소의 의리를 지키게 했고 선류(善類)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며 극찬하였다.¹⁴⁸⁾ 『명의록』 의리의 주도권을 두고 노론 벽파 김종수와 경쟁했던 소론 시파 서명선 일가의 후계자마저 김종수의 의리를 지극히 높였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⁴⁹⁾

그러나 오희상·서형수 등의 이러한 평가는 「단양서」에서 김종수가 영조의 대 의리(大義理)를 고수(固守)하였던 측면만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으며, 게다가 순조대 이후 ‘정조의 임오의리’가 부정된 상황에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김종수의 뜻을 온전히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평가와 달리 정조대에 김종수는 정조의 뜻에 부응하려는 면모 역시 분명히 보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시변역(隨時變易)’의 의리까지 강구하였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노·소론 시파에도 노론 벽파의 김종수 못지않게 강고한 ‘영조의 임오의리’ 고수론이 존재했다는 것과, 이들은 김종수가 견지했던 벽파의 본령 곧 영조의 대의리를 전제로 한 『명의록』 의리의 화신(化身)으로서의 면모에 주목하면서 궁극에는 영조·정순왕후의 의리를 기준으로 ‘정조의 임오의리’ 실현을 저지하려는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정조 16년 무렵의 김종수는 이러한 노·소론 시파=제방파(堤防派)의 여망을

147) 『壬午日記』 「老洲吳熙常與洪直弼書」, 64쪽.

148) 『明臯全集』 권10, 「題金文忠公嶺儒入侍筵本跋」. ‘當是時, 丙申相老之忘字凶言, 盛行於一邊. 愆惡浚賊, 作為脅持君上之權柄, 而顧聖心亦不能無動, 則雖以天縱之聖智, 又牽先后之付托, 其於典禮大頭顱, 固無絲毫撓奪之慮. … 而此際此跋出, 闡明善處變之聖孝, 揄揚躬親承之聖訓, 使一世曉然知君臣上下平日講劇秉執之一副當道理. … 善類由是而全保, 逆窩由是而破綻, 義理之畢竟維持, 世道之畢竟底定, 莫不有賴於寂寥數行之此跋’. 이 글의 작성 시점은 金文忠公과 先后라는 표현으로 볼 때 1805년 무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49) 서명응의 후손들이 ‘영조의 임오의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서명응이 사도세자 비행을 공론화한 인물로 성토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호수는 세자 보호에 힘썼던 장인 李彝章의 임오화변 일기를 없애 버리기도 했고(『待闈錄』 상편, 145쪽), 김귀주의 세력이 성했을 때는 김한기와 자주 왕래하기도 했다고 한다(『頤齋亂藁』 6책, 457쪽).

있지 않으면서도, 정조의 의리 수정에도 대비해야 하는 복합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단양서」에서 암시된 ‘수시변역’의 의리가 이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종수는 정조에 대해 영조의 대의리에 입각해 비판하기는 하였으나, 정조에 맞서거나 근거없이 벽파의 의리만을 고집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김종수에 대해, 노론 시파 토역론자 박종악·심낙수와 청남 채제공의 견해는 분명하게 달랐다. 박종악은 김종수가 유성한 뿐 아니라 윤구종의 배후이므로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후, 김종수를 토역할 방안에 대하여 채제공에게 의견을 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채제공은 박종악과는 달리 김종수를 죽일 자는 염라대왕밖에 없다면, 그의 의리가 너무 높고 집요해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죽일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 교환을 알게 된 김종수는 채제공의 의리와 경륜을 인정하면서 심환지 등에게 채제공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지 말도록 권하였으며, 채제공 역시 이가환(李家煥)·이조원(李祖源) 등 남인·소론의 후생들에게 김종수를 단지 윤구종과 같은 무리[窩窟]라는 이유로 죽이려 한다면 자신은 벌써 몇 번은 죽었을 것이라면서 토역의 근거를 군주에 반하는 행위에 둔다면 김종수를 죽일 방도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¹⁵⁰⁾ 이렇듯 토역론자들과 달리, 채제공과 김종수는 영조 혹은 정조의 임오의리와 관련하여 서로의 의리와 존재의 의의를 인정했고 토역의 범위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녔던 것이다.

유성한 상소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정조의 구전하교와 채제공·이복원 연명상소로 마무리되었다. 정조는 구전하교에서 갑신처분의 준수를 전제하는 범위에서 임오년 역적은 다른 죄목으로 모두 처단했으나, 지금까지 처벌된 인사 이외에 임오화변과 관련해 더 이상의 토역은 없을 것이고 별도의 의리서 편찬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제공·이복원은 영조의 추회(追悔)와 선세자의 덕(德)을 상기시키며 정조의 구전하교에 호응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

150) 『待闈錄』 329-332쪽. 이 일화는 준소계 당론서에 실려 있는 것이라 더욱 신뢰가 간다. 『待闈錄』은 준소 토역론이므로 노론 시파 토역론과 공감하고 있으나, 임오의리와 관련하여서는 채제공의 견해도 상당히 수용하고 있으며, 박종악과 채제공의 차이를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사실을 따져볼 때, 유성한과 김종수는 관련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유성한의 와주(窩主)가 김종수라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고, 김종수는 自派라도 총역의리에 위배되면 성토했던 행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와굴이라는 이유로 성토할 수도 없었다.

면 ‘정조의 임오의리’에 대한 군신간 합의의 방향은 대략 분명해졌다. 즉 ‘정조의 임오의리’를 통하여 선세자의 덕은 천명되고 무함은 해명될 것이지만, 그것은 영조의 의리와 덕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며 이는 동시에 선세자의 역적을 더 이상 확대하여 성토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촉발했던 유성한에 대한 정조의 처분 역시 ‘정조의 임오의리’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잣대로서 의미가 있다. 정조는 풍설(風說)에 기반해 군주를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무함한 언론 행위로 인하여 대간의 성토 대상이 되었던 유성한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유보하며 고심하다가 끝내는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정조는 유성한의 행위가 시골의 풍설에나 의지하여 향암(鄉閭)의 죄를 지은 망동(妄動)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역률(逆律)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대범하게 대처한 것이다.¹⁵¹⁾

사실 유성한 처벌 문제는 세자에 대해 무함을 주도했던 자와, 그에 휩쓸려서 무함에 동참했던 자들을 구분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였다. 유성한에 대한 정조의 이러한 처분을 감안한다면, 선세자 무함에 휩쓸렸던 당시의 비판 언론에 대하여 토역론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조의 임오의리’가 결코 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조 전반기 내내 일관되게 실천했던 진안책(鎭安策)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조는 어떤 방향의 토역론이라도 그 배후·소굴까지 징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거부한 것이다. 정조는 신하들의 토역론에 휩쓸리기 보다는 저군(儲君)과 군주의 무함을 씻어내고 군덕·예덕을 드러내는 데 궁극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151) 『정조실록』 정조 18년 8월 21일 ; 『弘齋全書』 권177, 「일득록」, 13쪽. 南公轍 丙辰錄.

제3장

‘정조의 임오의리’와 수원 화성 건설의 구상

제1절 ‘정조의 임오의리’에 입각한
선세자 추숭

제2절 갑자년 상왕 구상과 수원 화
성 건설의 구상

제3장 ‘정조의 임오의리’와 수원 화성 건설의 구상

제1절 ‘정조의 임오의리’에 입각한 선제 자 추송

사도세자의 덕을 천명한 이후, 다음 단계는 사도세자를 추송하는 것이었다. 그 방향은 채제공·이복원의 연명상소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 ‘선대왕의 추회(追悔)한 성덕(聖德), 그리고 선제자의 지성(至誠)과 효성(孝誠)’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조의 처지에서는 선제자의 덕을 뒤늦게 추앙하는 것이 영조의 덕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의거한 것이 아니라, 영조의 뜻에도 부합되고 천하의 공적 의리에 근거한 것임을 공식화하는 과정도 필요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정조는 영조와 선제자의 덕을 언급하고 더 이상의 토역은 없다는 구전하교만 내렸을 뿐, 그 이후 이에 걸맞는 더 이상의 공식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채제공은 과거시험 부정과 연루된 혐의를 받던 5촌 조카 윤영희(尹永僖)를 변호하다가 유배된 후 풀려나,¹⁵²⁾ 유수부로 새롭게 승격된 화성(華城)의 유수(留守)로서 장용사(壯勇使)를 겸하면서 화성 축성 방략을 세우고 장용영 확대·정비에 힘쓰는 등 화성 관련 사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정조는 이 공로를 들어서 채제공을 영의정에 임명한 데 이어서 김종수를 좌의정에 임명했고, 이들을 향하여 ‘지금 조정의 범위를 넓히고 금과 쇠를 용해시키려 하니’ ‘탕평’의 뜻을 받들라고 당부하였다.¹⁵³⁾

채제공은 영의정에 임명되자 자신의 의리를 토로하는 상소문을 올려 예덕(睿德) 천명과 관련한 정조의 공식 조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 때 채제공은

152) 『정조실록』 정조 16년 10월 10일 ; 16년 11월 9일.

153) 『정조실록』 정조 17년 1월 12일 ; 17년 5월 25일.

「금등」 문서를 공개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임오화변 후 영조는 자신의 후회와 선세자의 효성을 표현한 「금등」 문서를 작성하여 채제공에게만 비밀리에 맡긴 바 있었다.¹⁵⁴⁾ 정조 역시 즉위 직후에 채제공을 통해 「금등」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현릉원지문(顯隆園誌文)」에서 이미 영조의 후회를 명시한 바 있었으나, 「금등」 공개는 계속 미뤄 두고 있는 상태였다.¹⁵⁵⁾

채제공은 상소문에서 ‘혈’루(‘血’淚)·‘삼’수(‘衫’袖) 등 「금등」에 사용된 혈과 삼 등의 글자를 이용하여 정조의 원통함과 선세자를 향한 효성을 표현함으로써 그 내용을 일부 발설했고, 영조가 임오년의 선세자 처분을 뒤늦게 후회(追悔)하는 과정에서 선세자의 효성을 인정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에 입각한 역적 ‘천토(天討)’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정조가 임오화변에 관한한 ‘동호(董狐)’와 같은 강직한 사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던 자신을 영의정에 발탁한 이유는 「금등」을 공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이에 부응하기로 했다는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¹⁵⁶⁾

채제공 상소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먼저, 정조 16년 이후의 새로운 의리 천명이 단지 정조 효심의 발로일 뿐 아니라 영조의 뜻과도 어긋나지 않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예덕 천명을 정당화시켜 줄 영조의 추회(追悔)를 성덕(盛德)의 차원으로 찬미함으로써 대조(大朝, 필자 주: 영조)와 소조(小朝, 필자 주: 선세자)의 덕이 모두 아름다웠다는 ‘양조미덕론(兩朝美德論)’을 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양조의 미덕을 천명한 후 그에 걸맞는 토역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천토론(天討論)을 주장한 것이다.

채제공의 상소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강경히 수호하였던 노론 벽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금등」의 존재를 몰랐던 벽파로서는 채제공이 선세자 위해 세력에 대한 토역의 당론(黨論)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154) 「金騰」 문서의 개요에 대해서는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연구』, 1994, 154쪽 ; 박현모, 『정치가 정조』, 2001, 56-59쪽 참조.

155) 정조는 이미 즉위년에 文女를 처단할 때에 채제공이 금등의 일을 자신에게 고한 바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承旨와 翰林을 함께 보내어 그 내용을 상고한 일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정조실록』 정조 17년 8월 8일(무진)). 이로 인하여 정조는 영조의 후궁인 문녀 처단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는 즉위 직후에 이미 채제공으로부터 「금등」 문서의 존재를 보고 받았던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顯隆園誌文」에는 이미 安金藏, 望思臺 등 「금등」에 등장하는 문구들을 인용하여 영조의 후회를 사실로서 확정 한 바 있었다(『정조실록』 정조 16년 윤4월 27일).

156) 『정조실록』 정조 17년 5월 28일.

때문이다. 1년 전의 격렬했던 논의에서 토역론은 배제한다는 것이 공론이었음을 전제한다면, 채제공의 상소는 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반발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정조는 채제공 상소 후에 김종수에게 ‘이러한 때에’ 좌의정을 맡아야 한다고 독촉하면서 성토를 유도한 면도 있었다. 이에 부응한 『명의록』 의리주인 김종수는 채제공의 상소가 이덕사·조재한의 역모와 같은 맥락의 대의리 변경 시도이며, 작년의 구전하교(口傳下敎) 뒤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면 그는 바로 천고의 역적’이라고 다짐했던 자가 다시 상소를 올려 스스로 수범(首犯)이 되었으니, ‘이 역적과 의리상 한 하늘 밑에 있을 수 없다’며 강력 성토하였다.¹⁵⁷⁾ 정조는 채제공과 김종수를 함께 파직한 후, 대신 노론 홍낙성, 김이소, 김희를 삼정승으로 등용하여 사태를 정리하고자 하였다.¹⁵⁸⁾

조정에는 채제공의 상소에 대한 쟁론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홍낙성·심환지 등 다수 노론들은 김종수를 지지했으나, 정민시만 채제공의 상소를 문제삼을 수 없다며 옹호하는 상황에서,¹⁵⁹⁾ 정조는 천명의 방향을 잡아 나갔다. 먼저 시파 토역론자인 우의정 김희에게 채제공의 상소 전체를 문제 삼아서 안 된다는 당부를 하여 김희의 호응을 얻어 냈고, 다음으로 ‘태아검(太阿劍)이 가을 물 같다’는 제목으로 숙직 신하들에게 부(賦)를 짓도록 하여 군주가 의리를 주재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상기시켰다.¹⁶⁰⁾ 이어서 정조는 고위관료들을 소집하여 채제공의 상소는 영조와 선세자의 미덕(美德)을 천양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에 부응하여 임오의리의 핵심을 제기한 것이며, 이는 영조가 채제공에게 남긴 「금등」의 뜻을 풀이한 것이므로 그의 상소는 충성·의리의 발로라면서 그 증거를 공개하였다. 아래는 「금등」 가운데 두 구절을 베껴오게 해서 신하들에게 보여준 내용이다.

피 눈물 젖은 적삼이여 피 눈물 젖은 적삼이여,
오동(梧桐) 나무 지팡이여 오동(梧桐) 나무 지팡이여.
누가 안금장(安金藏)과 전천추(田千秋)였던가?

157) 『정조실록』 정조 17년 5월 30일 ; 17년 6월 1일.

158) 『정조실록』 정조 17년 6월 4일 ; 17년 6월 22일.

159) 『정조실록』 정조 17년 7월 2일.

160) 『정조실록』 정조 17년 8월 4일 ; 17년 8월 5일.

나는 귀래망사대(歸來望思臺)를 가슴에 품고 있다.

(血衫血衫, 桐兮桐兮, 誰是金藏千秋, 予懷歸來望思)¹⁶¹⁾

채제공은 피 눈물 젖은 적삼(血衫)과 오동나무 지팡이(桐)가 정성왕후 서씨(徐氏)의 상례 때 사용했던 사도세자의 쇠복(衰服)과 삭장(削杖)=동장(桐杖)인데, 문녀(文女)와 김상로는 이것을 사도세자가 영조를 저주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무함하는데 활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선세자를 향한 가장 큰 무함으로서 임오화변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¹⁶²⁾ 대나무 지팡이(저장(莛杖))는 부친상에 사용되고, 오동나무 지팡이(동장(桐杖))는 모친상에 사용된다.¹⁶³⁾ 「금등」에 따르면 무함으로 인하여 선세자의 역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영조는 예전에 쓰던 상복과 오동나무 지팡이를 보고서야 비로소 선세자의 효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⁶⁴⁾

161) 『정조실록』 정조 17년 8월 8일. 현재의 『정조실록』 國譯本은 뒷부분을 誤譯했는데, 이는 「金滕」에 등장하는 漢 武帝와 태자에 얽힌 고사를 누락시킴으로써, 영조가 후반기에 이 故事를 언급했던 맥락을 놓치게 한다. 歸來望思는 歸來望思臺로 해석해야 하니, 다른 자료에는 ‘予悔望思之臺’ 혹은 ‘予懷望思之臺’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조 역시 선세자 관련 기록의 洗草를 청해서 영조의 허락을 받던 날에, ‘洗草가 思子臺·望子宮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하교를 받았다고 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정조실록』 정조 16년 5월 22일). 안금장은 당나라의 충신이다. 당나라 예종(睿宗)이 측천무후(則天武后) 시절에 태자로 있을 때 무고에 의하여 반역의 의심을 사서 추국을 받게 되었는데, 태자 측 신하들이 모두 고초를 이기지 못하여 거짓 자백하였으나 오직 안금장은 태자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할복하였다. 측천무후가 이를 듣고 국문을 중지시켜 예종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舊唐書』 권187, 「安金藏傳」). 전천추는 한나라의 충신이다. 한나라 무제는 江充의 모함을 믿고 戾太子 據를 자결하게 했는데, 후에 田千秋의 상소로 인해 태자를 위해 思子宮과 歸來望思臺를 지어 위로했다고 한다(『漢書』 권63, 「戾太子傳」). 安金藏과 田千秋에 관련된 고사는 영조가 임오화변을 후회하며 당시 신하들의 절개를 질책할 때에 몇 차례 언급할 때에 등장한 바도 있었으므로(본 논문 II장 2)절 참조), 「금등」의 사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162) 『樊巖集』 권36, 「與嶺南士友書」, 22-23쪽. ‘衰服削杖, 私家則焚之, 王朝則瘞之, 而先世子至性特異, 不忍棄屏, 仍爲留置, 每於哀至之時, 出視而流涕. 伊時魯賊文女, 內外締結. … 乃以衰杖之事, 做出不忍言之誣, 危逼益急. … 此蓋某年睿誣之至大者也. … 血衫謂衰服衫袖血淚斑斑也. 桐兮, 謂削杖也.’

163) 『國朝五禮儀』 「凶禮序例-喪服」 ‘莛杖, 竹也. 爲父所以杖用竹者, 父是子之天, 竹圓亦象天. … 削杖, 桐也. 爲母桐者, 言同也, 取內心悲痛同於父也.’

164) 영조는 문녀와 김상로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세자가 파놓은 土窟에 注書 洪景顔을 보내서 부왕을 저주한 증거를 찾게 하였다. 그런데 이 때 실제로 발견된 것이 어떤 지팡이 인지는 기록에 따라 다르다. 『서연일기』에는 ‘莛杖’으로(『書筵日記』, 30쪽) 『대전록』에는 ‘桐杖’으로(『待闈錄』, 123쪽)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래의 주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장은 물론이고, 저장의 형태를 띤 喪杖이 모두 나왔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문녀와 김상로가 무함을 주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¹⁶⁵⁾ 영조는 무함의 실체를 깨닫고서 누차 후회한다는 감정을 여러 차례 표현하였고, 급기야 「금등」 문서를 작성하여 사관(史官)까지 물리친 채 비밀리에 자신으로 하여금 정성왕후의 신위(神位) 밑에 보관해 두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¹⁶⁶⁾ 신하들 역시 정조가 즉위한 직후에 세자 무함 세력의 핵심인 문녀와 김상로를 역적으로 처단한 사실 뿐 아니라, 영조대 후반 이래 영조가 임오년 처분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간간히 표출하였던 것도 알고 있던 터였다. 신하들의 이러한 경험적 직관으로 보았을 때 「금등」은 영조가 작성한 문서의 형태로 영조의 변화된 감정을 잘 표현한 문서였다. 따라서 「금등」을 본 신하들은 이러한 성격의 문서가 실존한다는 점에 놀랐을 뿐,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구심도 표하지 않았다.¹⁶⁷⁾

정조는 「금등」 속의 말이 영조의 ‘지극한 자애로움’과 선세자의 ‘지극한 효성’을 가리킨다고 아혔으니, 이는 영조가 역적들의 무함을 깨닫고 선세자의 효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처분을 뒤늦게 후회하는[追悔] 자애로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선세자의 덕을 영조도 자애롭게 인정했다는 양조미덕론(兩朝美德論)을 제기하여,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는 ‘정조의 임오의리’가 영조의 추회하는 성덕에 근거하여 성립될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정조의 설명을 들은 김종수는 채제공 상소의 본뜻이 천토(天討)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와 소조 모두의 미덕을 천명하는 데 있었음을 단순히 인정하였다.¹⁶⁸⁾ 또한 다음날의 차대(次對)에서는 ‘채제공의 등본(謄本) 상소를 보니 이전

165) 반면 혜경궁은 순조 5년에 집필한 「한중록」에서 선세자가 ‘喪杖 모양 같이 만들고 그 속에 칼을 넣어’ 가지고 다녔으며, 영조가 임오년 처분 직후 선세자의 처소에서 이것을 발견하고는 놀라고 분통하였다고 증언하였다(『한중록』, 275쪽). 혜경궁의 증언은 「금등」의 桐杖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桐杖과 喪杖은 별개의 것으로 이해된다. 혜경궁도 선세자가 상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동장은 여러 개의 상장 가운데 하나로 판단되고, 여러 개의 상장은 선세자가 즐겨 사용하였던 軍器 불이나 유희 잡물들 가운데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혜경궁의 상장과 「금등」의 동장은 모두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166) 『樊巖集』 권36, 「與嶺南士友書」, 23쪽.

167) 근래에는 「금등」 문서가 정조의 조작일 것이라고 추단하는 경우도 있으나(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242-245쪽),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조의 신하들은 영조대 후반 이래의 정황이나 사실들을 몸소 겪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설픈 조작은 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68) 『정조실록』 정조 17년 8월 9일. 『실록』의 이 문장 다음에는 김종수의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이는 크게 양조의 美德을 천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감히 이로써 성토할

에 들던 것과 다르며, 신의 마음 또한 이전과 다르다.’라고 답변하며 채제공에 대한 최근의 성토론을 철회하였다.¹⁶⁹⁾ 결국 채제공의 상소로 인한 파장은 「금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선세자의 덕과 영조의 은혜를 동시에 천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조가 양조의 미덕을 천명해야 했던 이유는 단지 영조나 선세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정조 즉위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정조를 향한 무함, 즉 준소계의 망친(忘親), 노론 벽파계의 망은(忘恩)의 비난을 무력화시켜, 영조-장헌세자-정조 계승의 근거와 ‘정조의 임오의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이기도 하였다. 망친이란 선세자가 받은 무함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므로, 선세자의 역적을 처벌했다고 밝힘으로써 불식시킨 바 있었다. 망은이란 영조의 삼엄한 의리를 사정(私情)에 치우쳐 변경하려 한다는 의구심이었으므로, 영조의 임오년 처분이 의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역적들의 무함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영조의 후회로 표출된 인자(仁慈)함을 강조함으로써 진정시킬 수 있었다. 정조는 양조미덕론(兩朝美德論)을 근거로 ‘정조의 임오의리’가 영조의 대의리와 어긋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양쪽에서 가해지는 비난을 모두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다. 채제공 역시 「금등」 공개로 자신들이 지켜왔던 의리가 팔·구푼(八·九分) 정도는 유감없이 퍼졌다며 만족하였다.¹⁷⁰⁾

채제공이 발설했고 정조는 부득이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¹⁷¹⁾ 근래 심환지에게 보낸 여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는 정조가 유도하고 추진한 것이라 판단된다. 정조는 몇 년 후에 있을 장헌세자·혜경궁의 회갑을 맞아 존호(尊號)를 극진히 올리고자 계획하고 있었고, 존호가 실제에 부응하는 것임을 입증하

수는 없으며, 심지어 董狐之筆 역시 『명일록』 가운데 나오는 말이라서, 이로써 죄를 성토할 수는 없다.’는 말과, 정조의 ‘채제공이 가리킨 바는 그 뜻이 凶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忠懇에서 나온 것이지 惡意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으나(『樊巖集』卷首下, 31쪽), 누락되어 있다.

169) 『樊巖集』卷首下, 32쪽. 그러나 김종수의 次對 내용은 실록에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정조실록』 정조 17년 8월 10일). 양자의 기록은 차이가 나지만, 『정조실록』에 「금등」 공개와 兩朝의 美德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김종수 등 채제공 성토 주창자들이 정조의 뜻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待闕錄』, 345-347쪽에도 김종수의 차대 내용이 온전한 형태로 상세히 실려 있으며, 『樊巖集』의 기록과 일치한다.

170) 『樊巖集』 권36, 「與嶺南士友書」, 24쪽.

171) 『玄臯記』, 71쪽.

기 위해서는 선세자의 덕을 공식화해 두어야 했으며, 영조에게 금등문서를 위임받았던 채제공을 영의정에 등용함으로써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판단된다.¹⁷²⁾ 양조(兩朝)의 미덕이 실체에 의거해 입증된다면 선세자를 높이는 임오의리는 신임의리에 기반한 영조의 대의리(大義理)와 구별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⁷³⁾

단순하게 보면 ‘정조의 임오의리’는 기존의 신임의리나 ‘영조의 임오의리’와 충돌하는 것이지만, 정조는 기존보다 한 차원 높은 의리 기준을 제시하며 그 모순을 해소하는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다. 정조가 지향하는 의리탕평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금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임오의리의 대표자인 채제공을 신임의리의 대표자인 김종수가 토역했으나, 정조는 「금등」의 존재를 알고 공개하자던 채제공도 충이요 모르고 성토한 김종수도 충이라고 인정했으며, 양조의 미덕을 공표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추왕(追王)의 전례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해야 하였다.¹⁷⁴⁾ 신임의리와 ‘정조의 임오의리’는 병행할 수 있으며, 영조의 대의리도 준수해야 하므로 추왕(追王)을 위한 전례변경은 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채제공의 상소에서 촉발된 일촉즉발의 사태는 「금등」을 공개함으로써 순탄하게 결말이 났다. 이전 영남만인소나 유성한 상소 등에서 촉발된 파장에 비한다면 오히려 쉽게 마무리된 측면도 있다. 여기에는 김종수가 정조의 견해에 순순히 동조하며 채제공의 행위를 추인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종수는 얼마 후 올린 수차(袖箭)에서는 8월 9일과 10일의 차대(次對)에서 밝혔던 견해를 바꾸어 채제공의 「금등」 제기가 ‘흉역(凶逆)한 내장(內臟)’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다시 채제공을 성토하였다.¹⁷⁵⁾ 김종수는 차대(次

172) 금등 공개가 追崇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세자에 대한 무함을 분변한 것이라는 해석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박현모, 『정치가 정조』, 2001, 59쪽). 본 논문은 이를 신임-임오의리의 일체화 차원으로 재해석하려는 것이다.

173) 영조와 선세자의 功過를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 각 정파의 다양한 의리론이 있었다. 兩朝美德論은 추승이 영조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달리 영조 혹은 선세자 어느 한편의 功過만 강조하거나, 양조 모두 失德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玄臯記』續編 下, 「時僻本末」).

174) 『정조실록』 정조 17년 8월 8일.

175) 『정조실록』 정조 17년 9월 12일. 김종수의 이 箭子是 앞서 次對에서 발언한 취지와 다르니, 채제공의 흉역 여부에 대해 김종수가 소견을 바꾼 것이다. 『대전록』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정조는 엄한 하교를 내려 還給했고 批答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待闈錄』,

對)로 인해 외간에 채제공에 항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잘못임을 명백히 보이기 위하여 다시 채제공 성토로 돌아선 것이다.¹⁷⁶⁾ 이에 대하여 정조는 김종수를 재차 설득해서 ‘전하의 탁월한 효성과 인의(仁義)에 정밀한 학문을 인정하므로 앞으로 제 주장만을 고집하며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고, 뒤늦게 깨달은 식견을 잊지 않는 의미에서 글로 남겨 간직해 둘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김종수는 글로 쓰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며 정조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였다.¹⁷⁷⁾ 일견 일관되지 못해 보이는 김종수의 행위는 그가 『명의록』 의리주인으로서 자존(自尊) 의식을 보일 필요가 있고, 정조와 채제공에게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노론을 영도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며칠 후 김종수는 정조가 현릉원을 참배했을 때 정조를 부축하고 엮었던 정민시·채제공의 불경(不敬)함을 지적하고, 정조가 환궁한 이후에도 지나치게 애통해 하니 조만간 있을 경모궁(景慕宮) 참배를 막아달라고 혜경궁에게 정청(庭請)했던 신하들의 행위를 망동(妄動)이라며 비판하였다.¹⁷⁸⁾ 이는 혜경궁의 지위가 궁(宮)일 뿐인데도 신하들이 마치 왕대비에게 요청하듯 정청까지 했다는 이유였다. 신하들의 정청을 계기로 혜경궁이 비답까지 내렸으니, 김종수의 비판은 정조가 혜경궁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국왕의 생모(生母)에 불과한 혜경궁에게 신하들이 정청한 것은 잘못된 예법임을 지적한 것이다.¹⁷⁹⁾ 그러나 이는 정조를 부축하고 혜경궁에게 정청하는 논의를 주도했던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은 빼놓은 채, 채제공·정민시만 겨냥해서 비판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동기부터 의심받았다.¹⁸⁰⁾ 정조 앞에서 했던 다짐에 걸맞는 기대와 어긋나게 김종수는 청론(淸論)

348쪽). 『정조실록』에도 비답이 없다.

176)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2일 을묘. ‘鍾秀曰, … 臣之本意, 果以九月袖箭事不敢提奏爲辭, 而至於外間議論, 則以臣爲乞降於蔡濟恭之事云矣’

177)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22일. 「금등」 반포 이후 정조와 김종수는 서로 다른 의리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서로의 處義를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김종수는 정조의 의리 주도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조 역시 김종수의 굴복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종수는 ‘정조의 임오의리’가 영조의 大義理와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의리의 기동(隅)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표명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78)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25일. 혜경궁에 대한 정조의 대우는王大妃·惠慶宮·中殿의 순이었고 국왕의 생모였으므로, 김종수의 비판은悖逆은 아니지만 각박한 언사라 할 수 있다.

179) 『待闈錄』, 352쪽.

180)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30일. 결과적으로 김종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셈이

을 집요하게 견지하는 외양을 띤 것이라 하겠다.¹⁸¹⁾

정조는 김종수가 임금의 앞과 뒤에서 언행(言行)을 달리하며 임금을 속였으므로 죽을 죄에 해당한다며 성토를 유도했고,¹⁸²⁾ 정민시·김이소·김희 등 노·소론 시파의 토역론자들 뿐 아니라 중립 성향의 노론 대신 흥낙성(洪樂性)까지 가세하여 김종수를 적극 성토하였다. 결국 김종수는 극변(極邊)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는 위중한 처벌을 받았다.¹⁸³⁾ 특히 김이성(金履成)은 혜경궁이 운(運)이 어긋나 국모(國母)는 못되었지만 왕비의 덕(德)에 걸맞으므로 국모처럼 대우해야 마땅한데, 김종수가 이를 부정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며 죄명을 분명히 해서 성토하였다.¹⁸⁴⁾ 이전까지 김종수에 대한 성토가 과격하기만 할 뿐 명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던 정조는 김이성의 성토 의리가 매우 적절하다며 만족스러워 하였다. 정조에게 필요한 것은 토역의 강도가 아니라 토역의 의리였고, 김이성이 이를 적절히 제기하자 소기의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¹⁸⁵⁾

이후 정조는 혜경궁의 육순(六旬)을 맞이하여 은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김종수를 용서하였다.¹⁸⁶⁾ 김종수는 정조에게 자신의 의리를 솔직히 진술한 후 치사(致仕)로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정조 역시 김종수가 ‘망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명예를 온전히 해주는 것이 군신(君臣)이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길이라며 봉조하를 허락하였다.¹⁸⁷⁾ 이어서 김종수는 선세자에게 옥책(玉冊)으로 존호

된 흥낙성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김종수의 왜곡에 대해 대질까지 요구하였다.

181)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2일 을묘. ‘卿之事，萬萬慨咄。… 正月廿二日筵奏，不啻丁寧，未過數日，忽又呈疏，與筵奏相反，卿將何辭而發明耶’

182)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25일 ; 18년 1월 29일. 김종수의 전후 모순된 행위에 대해 정조는 매우 당혹스러워 했고, 그가 채제공·정민시만 겨냥한 것에 분개하며 反坐律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183) 『정조실록』 정조 18년 2월 1일 ; 18년 2월 2일 ; 18년 3월 20일 ; 18년 4월 5일.

184) 『정조실록』 정조 18년 4월 6일. 김이성의 論罪는 혜경궁을 국모처럼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조 역시 혜경궁이 국모는 아닌 이상 김종수를 죽일 수는 없었다.

185) 정조가 원했던 성토의 요점은 김종수를 죽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하들에게 惠慶宮=景慕宮의 國母=國王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며, 김이성은 이를 성토의리로 정확히 꼬집어 낸 것이라고 하겠다.

186) 『정조실록』 정조 18년 6월 1일.

187)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1일. 김종수는 1월 22일 아뢴 내용이 잘못 이해되어 자신이 이전 견해를 바꾼 것으로 되었다며, 자신은 채제공에게 항복을 청한 것이 아니라, 막중한 일에 대해 감히 제기하여 아뢴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정조는 김종수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김종수의 공식 견해는 바뀌지 않았

를 올리는 절차를 건의하는 등 선세자 추송의 전과정에 참여하였다.¹⁸⁸⁾ 그러나 정조 스스로 옥책금인(玉冊金印)으로 경모궁(景慕宮)을 높이는 것이 종묘를 알현하는 예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에 걸맞는 의절(儀節)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듯, 이 때의 추송 역시 추왕(追王)에는 미치지 못하였다.¹⁸⁹⁾ 김종수 역시 선세자의 공·덕(功·德)을 공식화하는 것이 「단양서」에서 이른 바 ‘도리로써 어버이를 섬기는 것[以道理事親]’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옥책을 건의한 것이지, 이를 추왕(追王)을 담당하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¹⁹⁰⁾ 정조는 궁극의 과제인 추왕 문제를 장벽으로 한 채 노론 벽파의 영수인 김종수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의리를 강구해야 하였지만, 이는 추후의 과제였다.

정조가 우선 집중해야 할 사안은 선세자 추송의 성취였다. 정조는 「금등」을 공개한 이후 그 다음 과제로서 「현룡원지문」과 「금등」에 걸맞는 선세자 추송의 의식을 성대하게 완수하고자 하였다. 이 때에 정조는 단순히 선세자의 예덕(睿德)에 입각해 금니옥첩(金泥玉牒)으로 추송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선세자의 빛나는 큰 계책(煌煌閱謨), 즉 공·덕(功·德)에 입각해 천명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¹⁹¹⁾ 선세자는 대리청정 기간에 이미 효성·정치·경제·군사·학문 등 다양한 분야의 공덕을 드러낸 바 있었다는 것이다. 정조가 이미 「현룡원지문」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었지만, 비로소 이를 드러내어 공식화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정조의 추송 의리가 국왕의 사친에 대한 효심의 발로 차원을 넘어서 선세자의 공덕에 입각하였으므로, 천하공공(天下公共)의 대의리를 위하여 추송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두려는 것이다.

으며, 결국 정조는 김종수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妄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치사를 허락해 주면서 군신의 의리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김종수 역시 ‘그릇을 깰까 저어된다’는 하교가 지당하다고 인정했던 것처럼, 「金滕」으로 兩朝의 덕을 천명하는 문제는 결국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188)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8일.

189)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9일.

190) 追王과 관련해 김종수의 처신은 끝까지 糶糊한 태도를 유지한 데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훗날 追王을 담당하겠다고 공언한 심환지의 처신과는 달랐으니, 심환지에 대해 ‘晚節又與金鍾秀稍貳(『순조실록』 순조 2년 10월 18일. 심환지 졸기)’라 한 것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환지의 추왕 담당 표명에 대해서는 IV장 3절의 2)를 참조.

191) 『정조실록』 정조 18년 5월 20일 병오. 齋居日綸音. ‘金泥玉牒, 豈裨徽美, 煌煌宏謨, 政急闡揚, 湯有弗拂之德, 舜有莫禦之量’

정조는 이를 옥책문(玉冊文)에서 두루 표현하였다. 옥책문의 내용은 선세자의 깊고 넓은 도량(度量), 만기(萬機)를 대리할 때의 빛나는 업적, 영조에 대한 효성이라고 적시하도록 하였고,¹⁹²⁾ 이에 입각하여 ‘장륜융범기명창휴(章倫隆範基命昌休, 필자 주 : 인륜을 밝혀 모범을 드높였으며 나라의 명운을 성대하고 아름답게 하였다.)’라는 존호가 결정되었다. 선세자에게 올리는 존호(尊號)가 단순히 명호(名號)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내용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도 새삼 강조되었다.¹⁹³⁾ 이 옥책문은 노론 벽파 김종수의 천거에 의해 대제학이 된 준소 서유신(徐有臣)이 일차로 ‘융범희공개운창휴(隆範熙功開運彰休)로 지었다가,¹⁹⁴⁾ 정조가 「금등」의 뜻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청남계 신하들의 지적을 수용하여 수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노론 시파 이병모가 재차 지어 올린 것이다.

존호를 의정할 때 참여했던 정약용에 따르면, ‘장륜융범’이 곧 「금등」의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니,¹⁹⁵⁾ 존호에 선세자와 영조의 미덕을 함께 담으려 노력했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옥책문 작성의 과정에서도 상징되듯, 이는 정조가 「현룡원지문」 작성 이래로 영남만인소를 계기로 내린 구전하교(口傳下敎)와 「금등」 공개 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드러냈던 모든 과정들이 온축되어 끝내는 군신(君臣)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한 문서였던 것이다.

특히 국정 운영 개혁과 관련하여 정조가 강조하고자 했던 선세자 공덕의 대체는 영조의 탕평의지를 계승하여 더욱 넓은 포용과 납간(納諫)의 덕, 효종의 북벌의지를 계승한 군사제도 분야의 업적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자신 역시 영조-선세자를 이어서 그러한 공덕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정조는 정치 분야에서 탕평의 이념을 적극 계승하여 정치 참여의 범위를 노·소론의 탕평파 뿐 아니라 각 당파의 준론·청론까지 포괄할 만큼 대폭 확대한 바 있었고, 화성 건설과 장용영 창설의 심원한 뜻 역시 효종-장헌세자-정조의 북벌의지에 기반한 재정개혁·군제개혁에 있음을 밝힌 바 있었다.¹⁹⁶⁾ 이는 정조 2년 6월에 선포했던 4대 경장(更張)의 대고(大誥) 가운데 일부이기도 하였다.¹⁹⁷⁾

192) 『정조실록』 정조 19년 1월 7일(경인).

193) 『정조실록』 정조 19년 1월 17일(경자).

194)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1일 ; 18년 12월 2일. 김종수가 追崇論 관련으로 처벌받았던 준소 徐有臣을 홍문관 대제학에 천거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

195) 『與猶堂全書』 권16, 「自撰墓誌銘」 ‘時朝臣議徽號八字, 無金滕彰孝之義, 上欲改議. … 遂命改議 … 章倫隆範, 是金滕意也.’

196) 김준혁,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59-63쪽.

화성건설은 사실 현릉원 천장 직후부터 논의된 것이다. 정조 14년 강유(姜游)의 건의, 정조 16년 화성건설 방략 연구 지시, 정조 17년 화성건설 계획 확정, 정조 18년 화성건설 착수와 정조 19년 화성건설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면,¹⁹⁸⁾ 화성은 결국 정조가 정리한 장헌세자의 공·덕을 이념으로 삼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이었다고 하겠다. 화성에 조선후기가 도달했던 학문·기술 수준과 법고창신(法古創新)·공공성(公共性) 등에 입각한 개혁구상이 담겨 있었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밝혀진 바 있는데,¹⁹⁹⁾ 정조는 이를 장헌세자의 공덕 차원에서 이해하고 구현시키려 했던 것이다. 정조에 따르면 화성은 단지 경제·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거나, 선세자의 원침(園寢)을 호위하기 위해서 건설한 것은 아니었다.²⁰⁰⁾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조는 화성에서 장헌세자가 보여주었던 경륜의 공덕을 계승하여 그에 내포된 공공의 이상을 시범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업이 훗날의 추왕을 염두에 둔 것임은 물론이다.

결국 화성건설은 효종대 이래 영조-선세자가 계승한 국가적 염원과 공공성(公共性)에 입각한 경장·혁신을 구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며, 추송·추왕 역시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천하공공(天下公共)의 군신(君臣) 대의리(大義理)를 확립하는 과정을 수반하였다. 따라서 화성건설과 추왕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정조가 추진한 추송·추왕은 단지 군주 독단으로 사친(私親)을 높이는 사정(私情)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군주 독단의 사정에서 출발한 추송이었다면, 정조 13년 이래 에둘러 오면서 이렇듯 답답할 정도로 추송·추왕을 진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추송·추왕의 의미를 공적·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고 판단된다. 정조는 선세자의 공·덕(功·德)과 영조의 추회(追悔)의 은덕(恩德)에 입각해 추송을 실현함으로써, 임오의리=『명의로』의 리=군신의리=천하공공 대의리임을 확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조는 자전(慈殿)과 자궁(慈宮)에게는 두 글자, 장헌세자에게는 여덟 글자의

197) 『정조실록』 정조 17년 1월 12일. ‘弊之大者, 莫過於軍營之多. 是以, 予於初元朝參也, 舉諭四目, 四目之中, 惟軍與民居其二. 言之將欲行之, … 知予經之營之, 啓佑我後人祈永萬億年之本意’

198) 최홍규, 『정조의 화성경영연구』, 일지사, 2005, 90-100쪽.

199)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200) 『정조실록』 정조 18년 11월 1일 을유.

존호(尊號)를 올렸다.²⁰¹⁾ 이는 대왕에게 팔자존호(八字尊號)를 올릴 때에 왕비에게 이자(二字)를 올리는 것은 불역(不易)의 법이라는 예법에 입각한 것이므로,²⁰²⁾ 선세자를 통상의 세자보다는 높이되 대왕(大王)보다는 조금 낮추어 버금가게 대우한 것이다. 이는 제왕에게나 올리는 팔자존호를 올리되, 이 가운데 승통(承統)의 의미가 들어간 마지막 두 글자 ‘○효(○孝)’의 형식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漢) 이래로 군주의 시법(諡法)에 들어가는 효자(孝字)는 계서(繼序)를 뜻하는 것이다. 조선왕실에서 ‘○효 대왕(○孝 大王)’이라는 시호는 개국한 태조(太祖)와, 선왕(先王)의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했던 덕종(德宗), 묘호(廟號)에 효(孝) 자(字)가 이미 들어갔던 효종(孝宗)을 제외하고는, 추존왕(追尊王)을 포함해서 역대 제왕 시호의 마지막 글자에 모두 붙인 바 있었다.²⁰³⁾

정조 자신은 존호(尊號)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정조가 ‘진종(眞宗)에게 승통(承統)의 뜻으로 존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신하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천리와 인정상 자신도 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 데서 드러난다.²⁰⁴⁾ 결국 이는 전례(典禮)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진종의 추숭은 이미 정조 즉위년에 ‘온량예명철문효장(溫良睿明哲文孝章)’ 대왕으로 이루어진 바 있었으므로,²⁰⁵⁾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승통(承統)을 확정하는 추숭, 곧 ‘○효(○孝)’ 대왕의 형식으로 올리는 문제를 가리킨다. 영조는 효장세자를 ‘효장승통세자(孝章承統世子)’라고 명시하면서 조손승통(祖孫承統)이 아닌 부자승통(父子承統)임을 못 박으려 했지만, 정조는 즉위 초부터 진종을 승통하도록 한 영조의 뜻을 은

201)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7일 ; 18년 12월 10일 ; 18년 12월 18일.

202) 황윤석은 ‘본조에서 시호를 올리는 故事로서, 대왕에게 八字尊號를 올릴 때에 왕비에게 二字를 올리는 것은 不易의 법이다. 선왕의 嬪御로서 承統王妃와 함께 二字를 받는 것은 이미 大謬였는데, 지금 임진년에 또 四字를 올리니, 이는 대왕대비에게 四字를 올리는 것과 같다’며, 영조의 私親 추숭이 과도함을 비판한 바 있다(『頤齋亂藁』4책, 40-41쪽).

203)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전례 연구』, 일지사, 2008, 244쪽.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세자에게 올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호가 아니라 존호였다.

204) 『정조실록』 정조 17년 11월 19일 무신. ‘以予情理, 何可受一字之號乎. 今之尊號, 卽古之封禪也. … 上曰, 眞宗追崇, 如無以承統二字, 更有加號之大典禮, 則予以不敢承從爲定. 況於此事不忍勉從者, 卽天理人情之所未容已也. 諸臣齊起力請, 上堅不許’

205)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3월 19일.世子로서 승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자 사후에 붙여진 시호를 그대로 追尊王의 시호로 삼았으니, 孝章世子를 ‘眞宗 … 孝章大王’으로, 孝明世子를 ‘翼宗 … 孝明大王’으로 추존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근히 거부하고 조손승통의 뜻을 붙인 바 있으며,²⁰⁶⁾ 이에 따라 진종에 대해 효장대왕(孝章大王)이라고만 했을 뿐 ‘○효대왕(○孝大王)’으로 추존(追尊)하지는 않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조가 어린 나이에 흥거한 효장세자를 승통세자(承統世子)로 확정하고 세손이 즉위한 후 추송하도록 당부한 것 역시 고례(古例)를 널리 상고하지도 않은 영조의 독단이였다.²⁰⁷⁾ 정조는 영조에게 효장세자 추송(追崇)의 약속은 지켰으나, 승통(承統)의 당부는 유보해두고 있었던 셈이다. 그 이유는 정조가 자신의 승통(承統)을 추왕(追王)될 장헌세자에게 붙이려 했고, 그러한 과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막급(莫及)한 애통의 뜻을 담아’ 존호를 받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²⁰⁸⁾ 정조의 이러한 조치나 행위들은 자신이 진종을 승통한 것으로 확정해 두면, 훗날 장헌세자를 추왕할 경우 최대의 난제가 될 문제 즉 ‘정통(正統)을 둘로 하는[이통(貳統)]’ 혐의를 우선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자신은 영조의 조치를 저버리는 불효(不孝)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선세자(先世子)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추송하고, 나머지 과제는 장래에 자신의 아들의 손을 빌어서 추왕 절차를 확정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의거할 때 장헌세자와 혜경궁에게 올린 ‘옥책금인(玉冊金印)’은 세자와 세자빈의 지위를 전제로 존호를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격식을 새롭게 창출한 것이다.²⁰⁹⁾ 이 때 세자의 지위에 합당한 죽책(竹冊)을 국왕에나 합당한 옥책(玉冊)으로 바꾸어 올리자고 건의한 것은 그동안 선세자 추송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그리도 막던’ 김종수였다. 정조는 이에 대해 예법에는 없지만 ‘의기(義起)의 예(禮)’를 적용해서 단행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김종수가 살아날 계책을 쓴 것’이라는 세간의 뜬 말을 불식시키도록 했을 정도로 고무되었다.²¹⁰⁾

206) 『영조실록』 영조 52년 3월 8일 ; 52년 3월 9일. 『정조실록』 정조 17년 8월 8일. Ⅲ장 1절의 1)항 참조.

207) 『영조실록』 영조 40년 2월 20일 임인. ‘此非詢問於下者, 亦非博古例者, 故與東宮行禮, 特召大臣二品以上三司於眞殿門外, 宣諭此意, 以沖子祚爲孝章之嗣’

208)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6일. ‘至於今日諸臣所請, 則必欲固拒, 以寓靡逮莫及之痛, 斷斷此心, 非出搗謙也’

209)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107-110쪽.

210) 『弘齋全書』 권178, 「일득록」 18, 34-35쪽. 심환지 기록. 정조는 혜경궁에게 ‘김종수가 옥책금인을 올리자고 했다’며 크게 기뻐했다(『한중록』「泣血錄」, 521쪽).

김종수로 대표되는 벽파의 신료 뿐 아니라 정순왕후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은 모든 세력의 합의하에 장헌세자에게 존호를 올린 것임을 의미한다.²¹¹⁾ 8자존호를 올린 후 경모궁을 알현할 때에 정순왕후도 참여했음은 물론이다. 정조는 자전과 자궁이 경모궁에 나아가는 전례를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그에 따라 왕대비전-혜경궁-중궁전의 서열로 경모궁 알현의 예를 시행하였다.²¹²⁾ 왕실의 행례(行禮)에서 자궁의 지위를 중궁전보다 조금 앞에 두는 것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정순왕후와 혜경궁에게 존호를 올리는 예식을 성종조 때 정희(貞熹), 인수(仁粹), 안순(安順) 세 대비(大妃)를 위해 세운 명정전(明政殿)에서 행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 역시 자전·자궁의 화합 뿐 아니라 궁극에는 혜경궁의 왕대비 격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판단된다.²¹³⁾

이처럼 당대인들에게 그 의미가 분명했던 추송의 시행 과정에 정순왕후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 냈던 것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김한구·김귀주에 대한 명예회복을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한다.²¹⁴⁾ 이는 단지 김한구·김귀주의 명예 회복 뿐 아니라, 정순왕후에 대한 무함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중록』에는 정조 말년 정순왕후·혜경궁·효의왕후·가순궁 등 각 전궁(殿宮)에 ‘화기(和氣)가 넘쳐흘렀다’고 회고했는데,²¹⁵⁾ 이는 정조·혜경궁이 은언군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정순왕후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을묘년 원행 당시 노론·소론·남인의 신하들이 대거 참여하여 축제·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왕실의 화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조는 화성에서 장헌세자와 혜경궁의 회갑연을 성대하게 치루고, 왕실인척과 주요 신료들을 참여하게 하여 장헌세자의 공덕과 그에 입각한 존호를 공식화한 것이다.²¹⁶⁾

정조 궁극의 목표는 장헌세자를 국왕으로 추송하는 것이었다. 혜경궁은 ‘장륜

211)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8일 ; 18년 12월 9일 ; 18년 12월 10일.

212)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9일 ; 19년 1월 15일. 이전에도 移御할 때에 왕대비전-자궁-중궁의 순으로 했으나, 이를 예법으로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순서는 순조대 초반 자궁의 지위가 中宮殿에 비해 한 단계 공식 격하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순조실록』 순조 즉위년 8월 7일 정사),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213) 『정조실록』 정조 18년 12월 19일. 성종대에는 貞熹王后를 大王大妃, 昭惠王后와 安順王后를 왕대비로 칭호했다(변원림, 『조선의 왕후』, 182쪽).

214) 『가암유고』 「가암선생연보」, 17년 癸丑條.

215) 『한중록』 「閑中漫錄」, 347-349쪽.

216) 園幸의 분위기와 행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한중록』 「閑中漫錄」, 359-375쪽 ; 李羲平, 『華城日記』 ;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참조.

용범기명장휴(章倫隆範基命彰休)의 존호를 ‘창효대왕(昌孝大王)’으로 잘못 알아 듣기도 했으나, 정조는 그 과제 곧 ‘○효(○孝)’ 대왕은 새로운 왕에게 남겨 두었고 일단은 8자 존호만 올려 두었다고 설명해 주었다.²¹⁷⁾ 정조의 구상대로 순조가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고종은 「현릉원지문」과 「읍혈록」의 기록을 근거로 장헌세자에게 신문환무장헌광효(神文桓武莊獻廣孝)의 시호를 올려 광효대왕(廣孝大王)으로 추왕(追王)하였다.²¹⁸⁾

정조는 현릉원의 규모는 왕릉급으로 하였고 상설(象設) 역시 여타의 원(園)보다는 높고 왕릉보다는 약간 낮게 조성했으니, 이는 장래의 추왕에 대비하기 위해 석양(石羊)·석호(石虎)를 ‘이상(異常)하게 배포해’ 둔 것이었다.²¹⁹⁾ 또한 천청색(天青色)으로 된 적의(翟衣)를 입던 혜경궁에게는 왕비가 입는 홍색(紅色)의 적의(翟衣)를 만들 수 있도록 ‘다홍금선(多紅金線)’을 잘 보관해 두라고 당부하였다.²²⁰⁾ 결국 정조는 장헌세자를 위하여 세자로서 추송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극진하게 시행하여 두었는데, 이것은 장래에 추왕(追王)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정조 스스로 현릉원은 양주에 있던 흥경원(興慶園)을 김포로 이장하여 장릉(章陵)으로 승격시켰던 사례를 모범으로 한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²²¹⁾

217) 『한중록』 「泣血錄」, 521쪽. 정조는 혜경궁에게 ‘이제는 다 되고 한 글자만 남았으니, 이는 他日 新王을 기다리자. … 孝字는 將來 무슨 孝大王이라 할 제 쓰겠기에 아직도 孝字는 두었다’고 하였다.

218) 김문식, 앞의 책, 2007, 115-125쪽. 高宗은 장헌세자를 神文桓武莊獻廣孝大王으로 追王했고 묘호는 莊宗이라 했다(『고종실록』 고종 36년 11월 13일). 고종은 皇帝가 되어 5代祖를 추송할 때 莊宗을 ‘莊祖…莊獻廣孝 懿皇帝’로 추송하며 高祖父로 정한 반면, 眞宗은 繼序에서 배제하였다. 이 때에 高宗의 父인 翼宗에 대해서는 ‘文祖…仁懿孝明 翼皇帝’라 하여 순조-헌종의 統序를 잇지 못한 사실을 수정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고종실록』 고종 36년 12월 23일). 追王·承統 문제에 관한 한, 정조의 구상은 고종이 완전하게 구현한 것이다.

219) 『한중록』 「閑中漫錄」, 357쪽. ‘石物排布하신 것이 어느 것이 아니 異常하며 아니 盡心한 것이 없으니’. 실제 隆陵의 석물 배치는 未完이며, 추왕 때 추가할 석물 자리를 비워 둔 것으로 해석된다(김이순, 「隆陵과 健陵의 석물조각」 『미술사학보』31, 2008, 78-79쪽).

220) 『한중록』 「泣血錄」, 523쪽. 왕대비, 왕비, 세자빈, 혜경궁의 服色에 대해서는 변원림, 『조선의 왕후』, 일지사, 2006, 185쪽 참조.

221) 『弘齋全書』2책, 「洪翼靖公奏藁序引」, 園廟引. ‘我朝封園之制, 始於仁廟朝興慶園毓慶園, 尋進號爲章陵. … 水原花山, 卽千載一遇之時, 千里一逢之地. … 恭依仁廟朝, 移金浦郡治, 遷奉章陵之禮. 흥경원(興慶園)은 인조의 생부인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의 원인데, 인조는 정원대원군을 원종(元宗) 추왕한 후에 흥경원을 김포로 천장하여 장릉(章陵)으로 높였다.

정조는 선세자 추송을 시행하며 장래의 추왕에 대비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의리론의 확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조는 금등 공개와 선세자 추송을 계기로 하여, 채제공을 ‘정조의 임오의리’의 주인(主人)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는 채제공의 일생을 추모하면서 그의 삼대의리(三大義理)는 신임의리(辛壬義理)와 무신의리(戊申義理)와 임오의리이며, 이들 세 가지 의리에 하나로 관철된 군신의리(君臣義理)에 투철한 데 있다고 칭송한 바 있었다.²²²⁾ 채제공이 무신-신임의리에 투철했으므로 그의 임오의리 역시 신임의리와 배치되지 않음은 분명하며, 정조는 이를 ‘의삼병일(義三乘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정조의 임오의리’와 여타 의리의 관계에 대한 정조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정조의 임오의리’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한 것이지만 기존의 신임의리나 『명의록』 의리와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영조의 임오의리’는 종사를 위한 영조의 독단에 의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기존의 신임의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 반 세자파의 책동으로 인하여 사도세자가 신임의리에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조는 이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었지만, 반 세자파의 인식에 따르면 ‘영조의 임오의리’는 신임의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정조는 ‘영조의 임오의리’ 준수를 거듭 다짐하며 즉위한 직후 『명의록』 의리를 확립하였고, 신임의리를 좀 더 철저히 정비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여 ‘정조의 임오의리’를 정립한 이상, 신임의리와 임오의리와 『명의록』 의리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정조는 세 의리가 그 외형은 다르지만 세자·세제·세손 등의 예비 군주 곧 저군(儲君)에 대한 충역의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를 저군(儲君)=군(君)에 대한 의리로 보편화하고자 하였다.²²³⁾ 사실 저군에 대한 군신(君臣) 의리는 숙종대 원자(元子) 책봉 이래로 강조된 것이며,²²⁴⁾ 영조가 신임의리

222) 『樊巖集』 卷首 下, 38-39쪽. ‘挺然獨任, 義三乘一. 木天編史, 手握弗律, 斧鉞狐鼠, 日星忠藎. 蜀訛易驚, 巴賈不臚, 洞辨廓關, 返我鄒魯. 知申膝席, 血涕如雨, 自持寸丹, 質諸天神. … 第三句統言三大節, 第四五句言嚴於辛壬義理, 第六七句言嚴於戊申義理, 第八九句卽某年義理頭腦’. 이 제문은 『弘齋全書』에도 실려 있으나, 뒷부분에 정조가 부연한 시구(詩句) 해설은 빠져 있다(『弘齋全書』 권25, 3쪽).

223) 신임의리는 세제(世弟), 임오의리는 세자, 『명의록』 의리는 세손의 계승을 둘러싼 충역 문제였다. 이들은 모두 예비군주, 곧 저군이라는 점에서 군신의리 문제라는 것이다.

로서 확정한 바 있었기에, ‘정조의 임오의리’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이를 천하공공(天下公共)의 대의리(大義理), 진의리(眞義理)라고 하며 이전의 대의리보다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제 정조가 ‘정조의 임오의리’를 천하공공 대의리로 천명하는 것에 대해, 신하들이 자당의 기존 의리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각 정파들은 자신들의 지난 행적과 의리론이 ‘정조의 임오의리’ 즉 천하공공의 대의리와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김귀주계 노론 벽파와 김종수계 노론 벽파, 노·소론 시파와 노·소론 시파 토역론자, 청남 정파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김귀주계 노론 벽파는 준소계 토역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김한구·김귀주가 임오화변에 조금도 간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²²⁵⁾ 또한 이들은 정순왕후가 은언군을 무육(撫育)했다거나 김한록·김귀주가 8자흉언을 유포하여 세손의 계승을 저지하려 했다는 세간의 주장을 ‘무함’이라고 하면서,²²⁶⁾ 이에 대하여 정조가 명백히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들을 진정한 세손 보호세력으로 규정하여 은언군·은신군을 추대했던 흥봉한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김귀주계 벽파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기변명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선제자-세손의 정통성에 도전하지 않았기에 선제자의 덕을 천명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표방이기도 하였다. 정조 역시 『현릉원지문』에서 이들의 임오화변 관련설 자체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8자흉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²²⁷⁾ 김귀주계 벽파의 영수인 심환지 역시 자신이 살흉론을 선도했던 이유는 임오화변에 책임을 떠안고 죽었어야 할 흥봉한이 조금도 애통해 하는 마음이 없이 세손 보호를 내세우며 정당한 공홍(攻洪)의 논에 재갈을 물리고 다니는 몰염치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²²⁸⁾ 이 역시 공홍론·살흉론과 선제자의 덕을 천명하는 문제는 양립

224) 윤정, 『18세기 국왕의 文治 사상 연구』, 2007, 179-186쪽.

225) 『可菴遺稿』, 「與洪坦之(필자 주: 洪履猷)」, 266쪽. ‘某年時, 先人猶在草土, 初無入關之事, 雖欲與人附耳語, 何可得乎, 白地構陷, 蓋如此矣’; 『정조실록』 정조 14년 7월 11일 김한기 상소의 주제는 김한구·김귀주의 임오년 전후 행적 관련 무함의 해명이다.

226) 『楓臯集』 권17, 「迎春玉音記」, 402쪽. ‘奏曰, 聞僻之說, 則以爲漢祿凶言之說, 國榮做出云, 果然乎. 上笑曰, 豈有是理. 漢祿在湖中爲凶言, 爲金時絜諸人所斥’

227) 『楓臯集』 권17, 「迎春玉音記」, 402쪽. ‘敎曰, … 且先朝慈殿罔極之恩, 實如天地之大, 雖龜柱亦不得不容貸矣’

할 수 있다는 표방이었다.

노론 벽파 가운데서도 김종수계는 임오년의 역신(逆臣) 김상로가 이끌던 남당(南黨)의 후예들이므로, 임오년 의리의 변경과 관련하여 가장 원칙론을 견지한 세력이다. 남당의 영수였던 김종수는 정조의 추왕 의지에 대하여, 세손 시절부터 정조에게 ‘도리(道理)로써 효(孝)를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은 김상로의 반역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선세자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은 확인받고자 하였다. 자신들의 행위가 세자를 위해(危害)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도(輔導)하기 위한 정당한 언론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수용된다면 이들 역시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거나 도리(道理)에 맞는 추왕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김종수의 공홍·살홍론 역시 심환지와 같은 맥락이지만, 김종수는 남당의 핵심 주류로서 ‘영조의 임오의리’를 자임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정조가 ‘영힐(佞黠)한’ 김종수에게 세손 시절부터 굳이 의리를 빌어 왔던 이유이다.²²⁹⁾ 그러나 정조가 김종수·유언호·윤시동와 길항(拮抗)하며 설득한 끝에 이들 역시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해 ‘정조의 임오의리’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에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선세자를 추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정조와 노론 벽파는 흥봉한을 보는 시각을 제외한다면, ‘정조의 임오의리’와 추왕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김종수·윤시동·유언호·심환지 등이 정조와 대립하는 듯하나 끝내 호응해서,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거나 선세자의 충신들을 추증하는 사업에 협력한 것은 ‘정조의 임오의리’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노론 벽파가 추왕(追王)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²³⁰⁾ 정조 후반기의 시점에서 선세자

228) 『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家狀」, 149-151쪽. ‘威臣洪鳳漢, 自英宗中年顛擄用事, … 莊獻世子深惡其爲人, 鳳漢內懷疑懼, 恒不自安, 及當壬午五月少無哀痛惻怛之意, 而挺身擔當如鷲樂地. … 鳳漢曰, … 以壬午事攻我, 是觸犯大朝也, 且 … 外家不安, 東宮不安, 以是爲箝制一世之資’

229) 『楓臯集』 권17, 「迎春玉音記」, 402쪽. ‘殿下何爲常以義理二字, 假借金鍾秀輩乎. 教曰, 此輩皆挾龜柱以某年義理自居. … 然金鍾秀, 則其中之黠者, 故在渠家, 則雖爲峻論, 對予, 則常示斥絕龜柱之意, 甚可笑也’

230) 벽파 뿐 아니라 시파 가운데에도 追王에 대한 찬·반이 나뉠 수 있으므로, 시·벽에 대한 선입견으로 찬·반을 추단할 수 없다. 정조에게 남은 과제는 추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신하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반대자까지 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조가 제시했던 의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다.

추송은 추왕이 아니었고, 선세자에 대한 무함도 인정했기 때문에 추송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김종수처럼 수시변역(隨時變易)의 의리론을 마련하여 신왕(新王) 시대에 추진될 추왕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추송 반대가 벽파의 절대의리인 것처럼 설명하는 당론서의 견해나 기존 시각은 순조대 초반의 상황이 반영된 선입견에 불과할 수 있다.

노·소론 시파(時派)는 국왕이 주도하는 의리를 추수(追隨)하지만 원칙상으로만 반대론을 펴는 경우와, 『명의록』 의리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에 근거해서 정조 즉위의 전제인 ‘영조의 대의리’를 강력한 준거로 삼는 경우로 양분된다. 노론 시파의 원류는 영조대 후반 노론 북당과 동당 계열이다. 이들 가운데 이미 처벌된 북당의 홍인한·홍계희 등 임오년 역적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세자 보호 세력이었기 때문에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는 데 적극 찬동하였다. 다만 소론 시파의 주축인 서명선·서명응 계열은 서명응이 선세자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임오화변에 대해서는 노론 남당과 비슷한 의리를 견지하였다. 이 때문에 소론 시파 역시 선세자의 덕을 천명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정조의 임오의리’에 대해서는 협력하였다. 그러나 추왕론에 대해서는 노·소론 시파 내에 추수파와 반대파라는 서로 다른 분열의 흐름이 있었다.

추왕 반대론을 견지한 노·소론 시파 역시 상당수 있었다. 시파를 별도의 의리 없이 군주의 뜻과 시세(時勢)에 순종하는 집단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이들을 ‘시배(時輩)’로 보는 벽파의 비난에 근거한 것이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조의 추왕 의지가 분명해질수록, 추왕 반대론 역시 『명의록』의 제방을 강조하던 노·소론 시·벽파의 의리론자들을 광범하게 결집시키고 있었다. 준소계 당론서에서 이들은 모두 제방론(堤防論)이라고 새롭게 명명될 만큼 추왕론 곧 의리변통에 반대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명의록』 주인인 서명선의 사위이자 이복원의 아들인 이시수(李時秀)이다. 그는 소론이지만 정조에 의해 노론 벽파와 다름 없다고 인식되기도 했으며,²³¹⁾ 순조 초반에는 심환지를 정조의 전례변경(典禮變更) 시도에 부응한 세력이라며 성토했을 정도로 철저한 제방론자였다.²³²⁾

231) 『正祖御札帖』, 경신년 5월 30일.

232) 소론 李時秀는 『명의록』 제방을 기준으로, 한때 정조의 典禮變更 의지에 호응했던 김종수·심환지의 발언을 ‘悖說’이라며 성토했을 정도였다(『及健齋漫錄』, 「論諸逆源委節」, 152쪽).

이들과 반대로 국왕의 추왕 의지에 추수하는 노·소론 시파들도 다수 있었다. 김조순은 정조에게 영조가 종통(宗統)을 정한 후에는 추송이 불가능했지만, ‘정조의 임오의리’가 분명해진 작금의 시점에서는 선세자에 대한 영조의 처분을 스스로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정조의 결단을 우선시 하였다.²³³⁾ 또한 김조순은 정조가 갑자년이 되면 『명의록』을 폐기해 그 의리죄인을 모두 사람 구실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을 때, 정조의 마음이 지인대덕(至仁大德)하다며 적극 동조하기도 하였다.²³⁴⁾ 『명의록』 제방을 엄수하기 보다는 군주의 의리를 우선시하는 시파(時派) 본연의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노·소론 시파 토역논자(討逆論者)와 청남(淸南)은 추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고 연대하였다. 물론 이들 역시 사대부 청론을 표방하므로 원칙상 추왕에 반대한다고는 했지만, 장헌세자 추왕은 영조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의리라는 점을 공유하며 추왕의 의리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이들은 명실상부한 추왕론자라 할 수 있다. 준소의 당론서인 『현고기(玄龜記)』의 저자는 영조가 노·소론 이외의 당색인 남인 채제공에게 「금등」을 맡긴 뜻은 한편으로는 세손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세손이 즉위한 이후에 추송(追崇)의 의리를 밝히도록 한 심원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한 영남 남인의 견해에 탄복하면서, 장헌세자 추왕은 이전 군주들의 추왕과 달리 백세 후의 청론에도 할 말이 있으리라고 자신했으니,²³⁵⁾ 이는 ‘정조의 임오의리’와 가장 공감한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청남 채제공계는 ‘정조의 임오의리’의 주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정조와 의리론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군주의 주도로 의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남인 진출에도 유리하였기 때문에, 토역 확대를 차단하며 추왕을 목표로 했던 정조의 구상에 가장 충실하게 호응하였다. 채제공은 김종수·유언호 등 벽파를 성

233) 『楓臯集』 권17, 「迎春玉音記」 ‘對曰, 如欲追崇於先朝, 正宗統之後, 則固甚不可. 如明其患候之舉, 雖殿下自爲之, 豈有不可之理乎. 教曰, 予亦何以堪之乎, 欲遵先朝處分而已’

234) 『楓臯集』 권17, 「迎春玉音記」 ‘教曰, 明義錄, 予欲從近削之耳. … 以俟甲子之來, 而悉人其人也. … 既復爲人, 則何處不可用. … 對曰, 聖心及此, 此天地之至仁大德也’

235) 『玄龜記』 속편, 72쪽. ‘先大王寶籙已高, 儲宮尺衣若干, … 求權於經. … 一以保儲嗣於目前, 一以明義理於來後, 其爲心至苦, 其爲計至深. … 予始也恟乎, 終焉恍然, 見識之明白, 議論之高奇, … 嶺南尚有人才也’ ‘追崇之議, 自古爲淸論所擯, … 今日臣子者, 孰敢容議於其間, 而亦有大不然者. … 既覺其無故則, 莊獻之追崇, 自是應行之事, 眞可以永有辭於萬世矣’

토하러 했던 소론과 남인 내 토역론을 사전에 적절히 차단하기도 하였으니,²³⁶⁾ 이는 토역이 아니라 추승·추왕에 중점을 둔 의리론을 실천한 셈이다.

이와 달리 노·소론 시파 토역론자들은 추왕론에서는 청남과 공조했지만 동시에 노론 벽파에 대한 토역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리를 지녔다. 서유린·서유방 형제는 벽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추왕 반대론을 표방하기는 하였으나,²³⁷⁾ 실제로는 정조의 밀지에 따라 전례변경 작업을 준비 중이던 소론 정동준과 함께 행동했을 정도로 추왕 의지에 부응했던 세력이었다.²³⁸⁾ 이들 가운데 특히 노론 박종악(朴宗岳)과 심낙수(沈樂洙) 등은 정조의 토역확대 불가 의사를 확인한 후에도 강경하게 토역론을 견지하는 등 토역의 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준소 조태역의 후손인 조한규(趙翰逵)는 정조대 내내 소외된 인사로서 강력한 토역론을 견지했으니, 그는 토역의 의리를 급히 실행해야 추왕도 가능하지 지 금처럼 토역하지 않고 추왕을 먼저 논의하거나 심지어 흉인(凶人)의 손을 빌리려 한다면 추왕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³⁹⁾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정조의 토역확대 반대 의지에 부응하여 토역 확대론을 수정하는 흐름도 생겨났다. 서유린 형제는 절친한 관계였던 심낙수에게 벽파를 토역하는 데에 너무 유약(柔弱)하여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정조의 진안책(鎭安策)에 부응하였다. 남학소(南學疏)의 소두(疏頭)였던 박하원은 당초에는 임오년에 세자 비판을 주도한 노·소론 탕평파들과 언관들까지 역적으로 지목하며 토역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그 후 『대전록(待闈錄)』을 저술할 시점에서는 추왕을 우선시하는 채제공을 의리주인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김종수와 공존하러 했던 채제공의 의리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소론 시파 토역론자들 역시 정조의 의사를 존중하여 토역론의 확대에 신중해진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²⁴⁰⁾

236) 『待闈錄』, 331-332쪽 ; 361쪽. 채제공은 준소·남인 인사들이 찾아와 유성한의 와굴로 김종수를 성토해야 한다거나, 유성한을 구원한 유언호를 성토해야 한다고 하자, 임금의 ‘鎭安全保’ 의지에 근거해 볼 때 이러한 논의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며 만류하였다.

237) 『時僻源委』, 6쪽. ‘追崇事即大義所在, 自上若真有此意, … 則無論彼此, 斷當力爭’

238) 『東萊鄭氏家錄』 권12, 「同齋公東浚遺蹟」, 22쪽. ‘徐判書有隣有防兄弟, 每歎曰, 鄭公(필자 주: 정동준)之厚德, 眞不可及也. 甲寅冬, 以顯隆園事, 承密旨, 抄集典禮’

239) 『角亭集』 권3, 「角亭老人自誌銘」 ‘亟伸討復之義, 快雪神人之冤, 則追崇自有古典, 孰敢異論. 賊不討而先議追崇, 已非經法, 況復假手於凶人, 到授以柄, 而聽其操縱, 則其所憑索, 必無所不至, … 追崇終不可成, 而徒長其凶猾’ 이 글의 원문은 추승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추왕이다. 추승은 정조대에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았듯 정조 후반기의 제 정파들은 기존의 당론에 입각해 ‘정조의 임오의리’ 표방에 대응하면서도, 정조의 의리를 중심으로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노론 벽파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며 ‘정조의 임오의리’에 수세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노·소론 시파 가운데 『명의록』 의리를 고수하는 세력은 벽파와 마찬가지로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군주의 의리를 기준으로 삼는 세력은 정조에게 좀 더 적극 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노론 시파 토역론자와 준소의 토역 확대 시도는 정조에 의해 강력하게 거부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조의 임오의리’로 수렴될 수 있었다. 가장 소수 정파였던 청남은 ‘정조의 임오의리’에 기여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세력이었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신하들은 정파를 불문하고 정조의 천하공공(天下公共) 대의리(大義理)에 명분상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²⁴¹⁾

동아시아의 군주제 국가에서 추왕(追王)은 분명 왕실의 이해가 걸려 있고 궁극에 왕권 강화의 징표가 되므로, 성리학의 정치 풍토에서는 언제나 사대부 공론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주도했던 추송과 추왕 실현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군신 합의의 면모를 살펴 볼 때, 이를 군주의 사적인 비원(悲願)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군주의 사정(私情)을 억제해야만 한다는 제방론자의 시각만을 반영한 것이다.²⁴²⁾ 이러한 시각은 추왕을 군주의 사정이 아닌 공공대의리(公共大義理) 실현의 일환으로 삼으려 하였던 정조의 구상과는 거리가 있

240) 『待闈錄』, 329-330쪽. ‘左相笑而答曰, … 顧今此世, 殺前右相者, 其惟閻羅大王乎. 前右相之必欲殺我, 一世之所共知, 然如使我殺前右相, 我必不爲之矣. … 金聞之, 笑曰, 蔡濟恭蔡濟恭重言之. … 金末乃曰, 殺左相者, 亦無其人’(필자주: 前右相은 김종수, 좌상은 채제공이다).

241) 신하들은 성향상 정파 의리를 기본으로 하는 원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군주의 구심력이 작용하는 한 이러한 성향은 억제되었고, 정조는 이를 군신의리로 통합하려 했던 것이다. 정조 후반기의 상황에서 군주의 통합은 상당히 성공하고 있었다. 문제는 순조 초반에 군주의 역할이 사라진 후, 정순왕후 주도의 낡은 의리가 신하들의 원심력을 다시 촉발시켰다는 데에 있다. 결국 통합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결과를 소급 적용하여 정조 후반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242)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57쪽. 동시에 유봉학 교수는 화성이 ‘탕평과 화합의 도시’라는 시각에서 그 선진성·개혁성·공공성 구현의 진면목을 제시한 바 있다(『정조대왕의 꿈』, 57쪽, 73-75쪽; 『꿈의 문화유산 화성』, 69-191쪽). 그렇다면 추송은 私情이고 화성건설은 公共이라고 분리시켜 이해한 것인데, 필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한 양자를 이렇듯 나누어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추송 역시 공공대의리에 가반해 왕실·외척·신료의 화평을 구현하는 과정이며, 화성 역시 그러한 이념의 연장에서 건설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조는 ‘정조의 임오의리’라는 공적 의리를 기반으로 사대부 각 정파의 의리론을 조화시켜 군신이 합의하는 새로운 의리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조대에는 선세자 추송과 관련해 각 정파가 합의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군신의 신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순왕후와 김종수와 같은 반대론자들도 8자 존호를 올리는 것에 동의한 한 바 있었다. 향후에 추진될 추왕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실행될 것이었다. 따라서 정조의 선세자 추송·추왕은 공적(公的) 의리 구현의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군주의 사정 차원으로만 설명하거나, 추송반대론은 벽파(僻派)의 의리, 추송론은 군주의 뜻에 영합하는 시파(時派)의 성향과 남인 의리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각 정파 의리론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시각이다. 더구나 정조 후반기는 아직 추왕이 단행된 것도 아니었기에, ‘도리(道理)에 따라’ 추송하는 정조의 뜻을 모든 정파들이 존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파를 불문하고 정조의 추왕 의지에 호응하는 세력도 형성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시파·벽파를 막론하고 정조의 추왕 의리에 호응하지 않는 세력도 있었지만, 정조는 이들을 포용하고 때로는 그 기상을 격려했지 결코 ‘반왕세력(反王勢力)’으로 낙인찍지는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파(時派)=친왕(親王)·국왕지지(國王支持), 벽파(僻派)=반왕(反王)·국정반대(國政反對)’²⁴³⁾로 확대 해석하는 도식은 왕조 체제의 근간을 무시하는 인식이다. 정조대의 추왕 반대 세력은 『명의록』 의리를 제방으로 삼는다 하여 ‘제방일대(堤防一隊)’라고도 불리었다.²⁴⁴⁾ 정조는 이들의 제방 의리역시 명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들이 의지했던 의리는 영조대와 정조대에 걸쳐 이미 군신간에 합의한 바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대는 기존의 합의와 영조의 하교에 근거한 의리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그것이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증거에 입각해서 입증해야 하였다. 제방론자들 역시 자신들의 잘못된 이해를 수정해야 할 근거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결국 정조의 의리를 수긍하였다.

정조는 제방 세력을 반왕(反王)으로 몰아 토역(討逆)을 확산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집요하게 그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한 ‘정조의

243) 김성운,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313쪽 ; 박현모, 『정치가 정조』, 24쪽.

244) 『현고기』, 57쪽 ; 『대전록』, 239쪽.

임오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조는 이러한 방식으로 '영조의 임오의리'는 수정하였으나, 그렇다고 곧바로 '영조의 임오의리'에 근간한 갑신처분(甲申處分)을 곧바로 폐기하지는 않았다. 갑신처분은 영조가 세손의 계승을 확정한 왕통의 계통 문제로서, 세손 시절부터 정조가 영조와 신하들에게 그 준수를 누차 다짐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조는 영조가 당부한 '불이본(不貳本, 필자 주: 왕통의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다는 뜻)'의 대의리(大義理)를 굳건히 지켰을 뿐 아니라, 시·벽파내 제방 세력들이 그것을 준수한다고 해서 문제 삼지도 않았던 것이다.²⁴⁵⁾ 갑신처분을 수정하고 '불이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245) 준소·남인계 당론서에 '待闡''闡揮'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조는 박종악을 통해서 『待闡錄』을 보았을 가능성은 농후하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기다리라는 말 역시 追王의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討逆의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제2절 갑자년 상왕 구상과 수원 화성 건설의 구상

정조에게 남은 과제는 장헌세자를 국왕으로 추송하는 것, 곧 추왕(追王)이었다. 정조는 추왕 역시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영조의 갑신처분을 공식으로 수정하고, 승통(承統)을 돌로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군신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당시에 정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장헌세자의 추왕에만 있지 않고 정치 세력의 격변을 수반할 것이라든가, 화성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광범하게 유포된 것은 그러한 의구심의 표출이었다. 노론 벽파가 이러한 유언비어의 배후로 거론되기도 했고, 남인과 소론 강경론자들 역시 추왕에 공을 세우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의혹을 정치적으로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불신의 상황을 방치한 채 추왕을 단행한다면, 그 성패 여부를 떠나 정국의 일대 화란(禍亂)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정조로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조가 임오의리 문제를 단지 군주의 사정(私情)을 펴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임오의리와 관련해 다양한 차원으로 대립하고 있던 신료들의 분열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의리를 제시해 왔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조는 이미 표방된 천하공공의 대의리에 입각하여 왕실과 신하들의 합의에 기반한 추왕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국왕이 주재하는 공의를 기준으로 각 정파의 사의(私義)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군주의 의리 주재 및 조정 역할, 그에 대한 신하들의 신뢰가 필수 요소였다. 그 최종의 시험대는 정조가 말년에 들어 매진하고 있었던 ‘갑자년 상왕 구상’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었다.²⁴⁶⁾ 아래 자료는 갑자년 상왕 구상을 시기에 따라 배치해 본 것이다.

246) ‘甲子年 構想’에 대해서는 유봉학 교수가 『한중록』과 「迎春玉音記」 및 기타 행장 자료 등을 근거로 그 구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1996, 137-138쪽 ;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2001, 40-52쪽). 본 논문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甲子年 上王 構想’으로 표현하였다.

수원부(水原府)의 유생(儒生)들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상황래유(上皇來遊)’라는 제목을 낸 후,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나에게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²⁴⁷⁾

매번 천승(千乘)의 짐을 벗고자 하는 뜻이 계시더니, 성자(聖子)를 얻어 종국(宗國)의 부탁에 사람이 있고, 화성(華城)을 크게 쌓아 경성(京城)의 버금이 되게 하고, 집 이름을 노래당(老來堂)과 미로한정(未老閒亭)이라 하시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갑자년에 원자(元子)의 나이 15세니 족히 위(位)를 전할 것이니, 처음 마음을 이루어 마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고 평생에 경모궁(景慕宮) 일에 손으로 행(行)치 못한 지한(至恨)을 이룰 것이니 ...”²⁴⁸⁾

을묘년에 자궁(慈宮)께서 현릉원에 행차한 의식에 대해서는 여러 신하들이 내 본 뜻을 알 것이다. 갑자년에 이 의식을 거행하는 것도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 무릇 일은 예비해 두어야 성립(成立)되는 법이다. 그 의장과 호위에 관한 준비와 공급 물품의 수요에 대해서는 경상비(經常費)를 번거롭게 하거나 민력(民力)을 쓰지 않으면서 잘 조처할 방도를 유사는 미리 헤아려 두어야 한다.²⁴⁹⁾

마음에서 주야(晝夜)로 축원하는 바는 갑자년이 빨리 와서 만기(萬機)의 번거로움을 벗고 한가한 곳에 나아가 자궁을 받들어 화성으로 돌아가 모시는 것에 있을 뿐이다. ... 지금은 (만기를) 부탁(付托)할 사람이 있으니, 국본(國本)이 공고해지면 내 어찌 본심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하물며 갑자년의 설은 연석(筵席)에 출입하는 대소의 신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에 이르러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어찌 내 마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²⁵⁰⁾

정조는 현릉원 천장 이후 원자(元子)를 얻으면서 갑자년 구상을 했겠지만, 이

247) 『정조실록』 정조 14년 8월 11일 기미.

248) 『한중록』 「泣血錄」, 518-521쪽.

249) 『弘齋全書』 권178, 「日得錄」, 41쪽. 徐龍輔 己未錄(정조 23년).

250) 『楓臯集』 권17, 「別集」 迎春玉音記, 399쪽.

를 밖으로 드러낸 것은 을묘년(정조 19) 원행(園幸) 직전 혜경궁에게 약속한 것이 처음인 듯하다. 그 후에는 경연에 참석한 근신들에게도 언급하였기 때문에²⁵¹⁾ 자연히 대소 신료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터이니, 정조 말년에는 주요 정치세력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갑자년 상왕 구상이 『정조실록』에 실려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순조대 전반 벽파·시파를 막론하고 정조의 탕평정치를 끝내 부정했던 세도정치의 정국 동향 때문이라고 설명된 바 있다.²⁵²⁾ 그만큼 이 구상은 정조대 후반~순조대 전반 정국 구도를 이해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²⁵³⁾

정조는 갑신처분 당시 영조의 ‘불이본(不貳本)’ 의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장헌세자의 덕을 드러내어 신료들에게 공식화했고, 이를 근거로 선세자에게 8자존호를 올리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추송 작업은 이룬 상태였다. 이는 영남 만인소-금등공개-화성건설-선세자 추송의 과정을 거치며 정조의 주도에 따라 신하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차례차례 실현된 바 있었다. 남은 것은 선세자를 국왕으로 올리는 것, 곧 추왕을 위한 전례(典禮)의 변경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자신이 왕으로 재위하는 한 전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갑신처분(甲申處分)에 의거해서 동궁(東宮)이 될 수 있었고, 세손 시절은 물론 즉위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주요 계기 때마다 공언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전반기부터 한 시대(時代) 의리의 주재자는 국왕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정조대 전반 ‘반(反)’ 시파가 시파를 시배(時輩)라고 지목하며 공격할 때에도, 이는 시의(時議)의 주관을 위임한 국왕에 대한 도전이므로 시의에 맞서지는 말라고 경고하면서 국왕의 바른 시의에 귀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²⁵⁴⁾ 정조는 재위하는 어느 시기에나 국왕으로서 시의를 주재했던 것이며, 의리주인들

251) 『弘齋全書』 권169, 「日得錄」9, 22쪽, 金祖淳 丙辰(필자 주: 정조 20년)錄, ‘城華之役, 豈徒然哉. … 從今以往, 更過十數歲月, 一世之惑, 當不待戶諭而自曉’

252)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52-56쪽.

253) 정조의 갑자년 구상은 고종대에 일부 실현되었는데, 그 근거는 혜경궁의 「泣血錄」과 「顯隆園誌文」이었다. 『高宗實錄』 光武3년 8월 3일. ‘正廟曰, 元子誕生, 若至甲子年, 當十五, 可以傳位, 而傳位後子奉慈宮, 移御華城, 則景慕宮未行之典, 當有獲伸之道矣. 子則親承英廟下教, 不敢不遵, 雖極痛冤, 亦一義理也. 今日諸臣, 從予義理, 不敢舉議, 亦義理也. 他日諸臣, 從新王義理奉承行之, 亦義理也. 且親製顯隆園誌文, 有曰, 有待於錫胤而托重, 得遂誕報之大願至祝’

254) 『정조실록』 정조 8년 12월 8일 기축.

을 교체하거나 일부 조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편의에 따라 시의를 바꾸지도 않았다. 지금껏 정조가 ‘영조의 임오의리’를 일부 수정한 것 역시 신임의리와 갑신처분이 결합된 영조의 대의리를 준수하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조가 선제자 추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조가 내린 갑신처분의 의리까지 변경해야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의리변경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정조가 권도(權度)로써 처변(處變)하지 않고 오직 경도(經度)를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리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²⁵⁵⁾ 이는 영조의 대의리와 『명의록』 준수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조 역시 최고 수준의 성리학자로서 그 변함없는 의리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정조가 변통론(變通論)도 강조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전하는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세손 시절의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는 「왕세손상소문(王世孫上疏文)」은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임오처분(壬午處分)을 영조의 ‘달권(達權)’이라고 인정하고 후대의 추숭(追崇)은 영조와 종사의 죄인이라면서 세자에 관한 기록을 세초(洗草)해 줄 것을 청했던 내용이다. 이는 자신의 즉위 정당성과 직결된 의리였다. 이러한 문서를 자신의 문집에 실지 않았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의미를 지닌다. 『홍재전서』의 상당 부분은 생전에 정조의 편집을 거쳤던 것이므로,²⁵⁶⁾ 이 문서를 실지 않은 데에는 정조의 전례 변경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조는 후반기로 갈수록 예(禮)는 인정(人情)에서 출발하며 인정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 곧 천리(天理)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⁵⁷⁾ 통상 예법(禮法)에 없는 예를 창안해야 할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는 인정에서 출발한다’며 예의 본의(本意)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정조 역시 이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이미 장릉(莊陵, 필자 주: 단종릉) 배식(配食)의 전례를 단행한 적도 있었다. 즉 장릉에 화의군(和義君)을 추배(追配)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예조에서 ‘추배는 국가의 금령(禁令)이 있어서 안 된다’고 반대했

255) 『壬午日記』, 8쪽. ‘遭人倫之變而極人倫之至者, 惟舜周公是已. … 正廟所以處斯義者, 守經已矣’

256) 『弘齋全書』 편찬과정에 대해서는 김문식, 「弘齋全書 해제」 참조.

257) 『정조실록』 정조 24년 1월 24일.

을 때, 정조가 제시한 근거는 ‘예가 인정에서 연유하는 이치’를 들어 ‘추배는 인정과 신리(神理)에 잘 들어맞는 일’이니 화의군 뿐 아니라 대상자를 상고하여 더 확대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던 것이다.²⁵⁸⁾

정조는 전례변경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의리가 수시변역(隨時變易, 필자 주: 시대에 따라 변화함)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으니, 수시변역 역시 일정하게 고착된 국면을 타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제기되었던 유교적 변통의 원리이다. 정조대 후반의 시점에서 수시변역은 특히 국시(國是)의 변통, 곧 추왕(追王)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²⁵⁹⁾

이 일이, 나는 영묘(英廟)의 하교를 받자와 행하지 못하는 것이 비록 지극히 통원(痛冤)하나 또한 의리요, 원자(元子)는 내 부탁을 받아 내 마음을 이뤄 내 행치 못한 것을 제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 또한 의리요, 오늘날 제신(諸臣)은 나를 좇아 아니하는 것이 의리요, 타일(他日) 제신은 신왕(新王)을 좇아 봉승(奉承)하는 것이 의리니, 의리가 일정한 것이 없어 때를 따라 의리가 되는 것이니[義理無一定之規, 隨時爲義理矣], 우리 모자(母子) 살았다가 자손의 효도로 이 영화(榮華)와 효양(孝養)을 받으면 어찌하겠습니까?”²⁶⁰⁾

정조가 신하들에게 영조의 대의리를 준수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위 인용문은 혜경궁과 내밀한 대화에서 나왔던 말이므로 정조의 본래 계획을 잘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조는 혜경궁에게 자신의 시대에 영조의 대의리를 준수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한 후, 자신을 계승할 신왕(新王)의 시대에는 그에 맞게 영조의 대의리를 변경하는 추왕(追王)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정조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의(時義)의 주재자인 ‘시임(時任)’의 군주가 그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258) 『弘齋全書』 권60, 雜著7, 「莊陵配食錄」, 1쪽 ; 『정조실록』 정조 15년 2월 21일.

259) 史臣은 채제공이 ‘國是를 바꾸려는 책략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는데(『정조실록』 정조 17년 5월 28일), 이는 정조의 국시변경 시도에 대한 순조대 벽파의 비판이 채제공에게 집중되어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260) 『한중록』 「泣血錄」, 518-521쪽.

의리 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학에서 변통을 거론할 때 제시 되곤 했던 수시변역(隨時變易)의 원리에 입각해서, 시의의 주재자인 군주가 진퇴(進退)함에 따라 의리는 변화하므로 신하들도 이러한 의리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의리변통을 거부하며 고수하는 신하라면 정조가 상왕(上王)이 될 때 자신의 대의리 준수를 위해 함께 조정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정조가 상왕으로서 화성에서 운영할 분조(分朝)에 신하로서 참여하든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순조는 부왕의 뜻을 받들어 추왕을 의리로 내세울 것이므로, 순조의 조정에는 변경된 의리로 군주를 섬길 자들 위주로 출사하게 될 것이다.

정조가 벽파의 의리 고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추왕의 의리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수시변역의 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신하들의 대의리(大義理) 고수 혹은 변역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되, 최종적으로는 군주의 거취가 신하들 의리의 기본이 된다는 원칙도 제시한 것이다. 정조 말년의 과제인 ‘정조의 임오의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국 구상인 ‘갑자년 상왕 구상’의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있었다.

‘갑자년 상왕 구상’은 국왕 지위의 선양(禪讓)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상왕이 된 후 거처할 공간을 준비하였다. 갑자년 구상에 따라 정조가 상왕이 되어 거처할 화성(華城)은 수도 한양에 버금가는 행도(行都)의 위상을 지닌 도시였다.

정조는 지극한 애통이 마음에 있어서 천승(千乘)의 왕 노릇을 즐겨하지 않았다. 이미 수원에 현릉원을 이봉(移奉)한 후에는 유천(柳川, 필자 주: 현재의 수원천)에 성을 쌓아 행도(行都)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 또한 행도에는 훗날을 대비하여 병위(兵衛)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황명(皇明)의 친군제(親軍制)를 본떠서 일군(一軍)을 설치하여 내영(內營)이라 명명하고 부오(部伍)로 단결(團結)시켰으며, 재물과 곡식을 쌓아 두고 세세하게 경영하고 획정하며 오랜 세월을 들였고, 큰 규모와 세세한 절목이 모두 임금의 재단(裁斷)에서 나왔으니, 장용영이 이것이다.²⁶¹⁾

261) 『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 「家狀」

이는 정조의 갑자년 구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심환지의 진술로서, 수월 화성의 위상과 장용영 창설의 여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이다. 정조는 지금껏 사도세자의 능묘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화성을 건설한다고 했으나, 이는 능침 호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단순히 군사·상업의 거점도시도 아니며, 궁극에는 상왕이 되어 거처할 행도(行都)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행도는 수도(首都)와는 별도로 왕이 임시로 주재(駐在)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갖춘 도시였다.²⁶²⁾ 기존 연구에서 한양-화성은 주나라 호경(鎬京)-낙양(洛陽)과 명나라 남경(南京)-북경(北京)의 양경제(兩京制)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설명도 제시되었는데,²⁶³⁾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정조는 화성을 경도(京都) 한양에 버금가며 상왕이 거처하는 행도의 위상으로 조성한 것이다. 장용외영은 행도의 상왕을 호위하는 친군(親軍)으로서 위력을 갖추었음은 물론이다.

화성의 위상이 행도로서 설정되었기에, 그에 따른 관원의 편제, 건물의 위상, 친군제도, 고위관료·사대부·군인·상인·농민 등 이주자의 다양한 구성 등 이에 부수되는 제반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였다.²⁶⁴⁾ 화성은 광주(廣州)와 함께 정2품이 유수를 맡아 개성·강화에 비해 격이 높았을 뿐 아니라, 정승(政丞)을 지낸 채제공이 유수를 맡기도 하는 등 유수부 가운데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²⁶⁵⁾ 화성 내에는 상왕이 거처할 행궁은 물론, 주요 시설물로서 장안문·팔달문·종루(鐘樓)·칠간수문(七間水門) 등과 같은 건축물의 규모와 화려함은 한양에 버금갈 뿐 아니라 도리어 한양보다 더한 경우도 있어서 당대인들의 탄성을 자아냈다.²⁶⁶⁾ 그 밖에도 화성은 시전(市廛)·공장(工匠)·제언(堤堰)·둔전(屯田) 등 군(軍)·관(官)·

262) 『漢語大詞典』 「行都」. 통상 개성·강화·화성·광주를 王都에 대한 호위기지로서 유수부가 설치된 陪都라는 설명도 있다(이준희, 「한양의 陪都 留守府」 『조선시대의 한양과 경기』, 혜안, 2001 참조). 그러나 華城은 정조가 上王이 되어 거주할 공간이므로, 陪都보다 한 단계 격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일단 심환지의 표현을 빌어 ‘行都’라고 하였다. 정조는 화성에 대해 ‘蓋予所以視華城, 亞於京城也’(『弘齋全書』 권13, 「序引」 翼靖公奏藁營繕類敘 城堞引, 36쪽)라 하였다.

263) 배우성, 「정조의 留守府 경영과 華城인식」 『한국사연구』127, 한국사연구회, 263-265쪽.

264) 화성 읍치 조성에 대해서는 이달호,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2008 ; 정해득, 『正祖時代 顯隆園 造成과 水原 移邑 研究』,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265) 『大典會通』 京官職 水原府 ; 『華城志』 권1, 「建置沿革」 「官職」 ; 『정조실록』 정조 17년 5월 25일.

266) 李羲平, 『華城日記』(신구문화사, 1974), 76-82쪽.

민과 두루 연계된 상공업·농업 기반을 갖춘 자족적 도시의 규모로 시설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²⁶⁷⁾

이러한 화성의 도시 기반 시설이 조선후기 사회 개혁의 공공성·미래지향성 등을 두루 갖춘 국가 차원의 기획·실천이었음은 기존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²⁶⁸⁾ 그 결정판은 장용영이었다. 장용영은 상왕을 호위할 친위부대의 양성, 곧 왕권강화를 상징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정조에게 중요했던 것은 장용영이라는 신제(新制)를 매개로 실현하고자 했던 조선후기 군제개혁의 구상이었지, 단순히 기존의 5군영 체제에 왕권강화를 위해 또 하나의 군영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었다.²⁶⁹⁾

정조에게는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면서도 실질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채 백성들에 부담만 가중시켰던 조선후기 5군영 제도의 폐단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신료들에게 이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맡겨본 결과, 수어청·총융청 양영(兩營)을 합치는 문제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²⁷⁰⁾ 영조 역시 군영제도의 폐단은 그대로 둔 채, 군역의 재조정과 감필(減匹)·균역(均役)만으로 대동(大同)의 이념을 달성했다고 자위해야 했을 뿐이었다. 균역법 실시 초기에는 그 성과도 한동안 있었으나 5군영 제도의 모순에서 기인한 폐단은 시정될 리 없었기에, 얼마 후에는 곳곳에서 한계가 노정되고 백성들의 불균(不均)한 부담도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²⁷¹⁾ 군제개혁에 대한 정조의 심원한 구상은 즉위 직후 민산(民産)·인재(人才)·융정(戎政)·재용(財用) 분야에 걸친 ‘경장대고(更張大誥)’를 반포

267)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9, 187-203쪽 ; 문중양,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집문당, 2000, 133-135쪽.

268)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참조.

269) 『정조실록』 정조 15년 6월 5일. ‘軍門을 증설하는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어찌 다시 쓸모없는 군문을 만들고 싶겠는가? 장용영을 신설한 것은 본래 깊은 뜻이 있어서이니, 궁궐 호위를 중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절약하여 經費를 낭비하지 않으며 단속한 보람이 이루어지고 시설이 한창 벌어지고 있으니, 내 뜻은 장차 기대하는 것이 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자가 어찌 내 고심을 알 것인가?’

270) 『정조실록』 정조 2년 윤6월 24일(임오). 호조판서 구윤옥에 따르면, 1년 10여만석의 세입 가운데 훈련도감의 養兵에만 5만여석을 넘긴다고 하였다. 이 날 兩營 합설 방향에 대한 신하들의 논의는 무성했으나, 결국 ‘길가에 집짓는 일’처럼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 정조는 萬全의 계책을 세워 更張해 가기로 결심하였다.

271) 정연식, 「균역법 시행 이후의 地方財政의 변화」 『진단학보』67, 1989.

할 때부터 일관되게 지속되던 문제의식이었다.²⁷²⁾

정조는 장용영에서 조선후기 개혁가들의 이념형이며 조선전기에 이미 구현해 보았던 조종(祖宗)의 성법인 오위제도(五衛制度)·부병제(府兵制)의 병농일치(兵農一致) 이념을 조선후기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내탕(內帑) 재정을 출자해 환곡을 조성하고 내수사 장토(庄土)를 둔전(屯田)으로 전환시키는 등 왕실 재정을 우선 활용하여 호조·선혜청의 경상비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였고,²⁷³⁾ 훈련도감 병력의 일부를 재조정하여 흡수하거나 수어청·총융청의 축소 내지 혁파하여 그 병력의 일부도 재편해서 흡수하는 등 기존 5군영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재편하면서 장용영을 창설하였다.²⁷⁴⁾ 이 과정에서 ‘무종(武宗)’ 구선복으로 대표되는 기존 군영대장들의 저항을 단호하게 제거했음은 물론, 구선복 처단에 협력했던 훈련대장 이주국(李柱國)이 주장한 병농분리(兵農分離)의 현실론까지 일축하면서 병농일치의 원칙을 관철시켰다.²⁷⁵⁾

정조는 장용영을 지탱하는 재정을 충실화하고 민간이 떠안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이상을 구현한 둔전을 화성 주변과 경기·황해 등에 설치하였고, 이를 장용영의 장리(將吏)·예졸(隸卒)·향군(鄉軍)을 위주로 하여 경작하게 하는 동시에 이들이 군역을 분담하여 담당하게 하였다.²⁷⁶⁾ 물론 이러한 구상에 따른 군제개혁은 그 성과가 일거에 성취될 수는 없는 장기 과제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실제로 장용영을 설치하고 군역을 확보·조정하는 과정에서 군역 장부 상의 허액(虛額)을 태정(汰定)하고 납미(納米)의 두수

272) 『정조실록』 정조 2년 6월 임진. 윤행임 역시 정조가 ‘장용영을 설치하여 군역법을 혁파하려 했다’고 했으니(『정조실록』 附錄 「誌文」), 장용영 창설이 군역법에 근간한 군역의 추가가 아니라 군제 전반의 개혁에 그 목표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군역법을 시행한 영조의 뜻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정조실록』 정조 20년 3월 22일).

273) 정조는 ‘장용영의 돈과 곡식이 모두 內帑의 잉여에서 나온 것이므로 호조·선혜청의 經常과 무관하다’(『정조실록』 정조 12년 8월 20일)고 하였다.

274) 장용영 창설에 따른 5군영의 재편에 대해서는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軍營制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67-283쪽에 상세함. 아울러 김준혁,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2007, 151-153쪽 참조.

275) 『정조실록』 정조 20년 3월 22일 ; 20년 3월 27일.

276) 『정조실록』 정조 19년 11월 7일 갑인 ; 21년 1월 29일 경오.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9, 197-199쪽 참조.

(斗數)를 감하하며 각종 중간 작폐를 제거하는 등의 성과가 화성 인근에서는 뚜렷이 나타났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장용영이 채택한 오위제(五衛制)의 모델은 당시의 고질이었던 군역 행정의 모순을 시정하면서 군영의 충실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²⁷⁷⁾ 조선전기 오위제에 입각한 군사의 확보·편제의 원리는 장용영에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정조는 장용영 군사 훈련에서도 오위진법(五衛陣法)의 전술을 회복하기 위해 조선전기의 『진법(陣法)』과 이를 근간으로 현실의 오군영에 적용시킨 『속병장도설』을 종합해서 『병학통(兵學通)』을 편찬하였다.²⁷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법에 입각하여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장헌세자가 연구·정리한 『무예신법』의 증편서인 『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하여 장용영 군사 훈련 교재로 보급해서 실제 활용하게 하였으니, 『무예도보통지』의 격자(擊刺)하는 연병법(練兵法)이 오위의 진법과 표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²⁷⁹⁾ 실제 정조는 장용영의 강서시험에 『병학통』을, 기예시험에 『무예도보통지』를 활용하게 하면서, 이는 ‘영묘(英廟)와 경모궁(景慕宮)의 유지(遺志)를 천명하자’는 것²⁸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정조는 중국·일본·고려의 역대 병제와 조선의 군제와 진법 등을 망라한 『군려대성(軍旅大成)』을 편찬하여 궁극에는 조선이 지향할 새로운 군제를 모색하였다.²⁸¹⁾ 그것이 오위제도에 근간한 것임은 물론이다. 정조는 호조재정의 경상비를 증액하지 않고도 장용영을 창설했고 그 군사력을 실질화했다고 자부했는데,²⁸²⁾ 이는 즉위 이래 효종-영조-장헌세자를 계승하여 군제 개혁을 성취하겠다는 진정(眞正)하고도 공적인 문제의식을 흔들림없이 실천한 결과였다.

정조는 상왕으로서 대부분은 화성에 머물겠지만, 때때로 사왕(嗣王)이 보고 싶으면 한양에 오고 갈 생각이었다.²⁸³⁾ 이 때를 대비해 지은 건물이 수강재(壽

277)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軍營制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89-296쪽.

278)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207쪽.

279) 김준혁,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134쪽 ; 『武藝圖譜通志』 「御製序」 ‘武藝圖譜通志, 蓋不但擊刺之法, 彌增彌詳, 禁苑練兵之眞詮, 至是出焉, 可與五衛陣兵將圖說之爲郊鍊指南者, 互相經緯’.

280) 『정조실록』 정조 17년 1월 12일 병오.

281)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2002, 222-223쪽.

282) 『정조실록』 정조 15년 6월 5일.

283) 『楓臯集』 권17, 「迎春玉音記」, 400쪽. ‘嗣王欲見予, 則時時來見, 予欲欲見嗣王, 則或時上來, 見之而已’

康齋)로 추정된다. 수강재는 본래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후 머물던 수강궁(壽康宮)의²⁸⁴⁾ 옛 터에 영건한 건물이기도 하지만, 장헌세자 대리청정 당시 낙선당(樂善堂) 화재 후 일부 중건되었다가 선세자 폐위 후 이 일대의 저승전(儲承殿) 영역에 큰 화재가 나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던 부지에 건립되었으므로 그 의미 역시 각별하였다.²⁸⁵⁾ 이 곳은 상왕이 된 태종의 거처이면서, 영조대에 선세자의 영역이었다는 중첩된 상징의 공간인 것이다. 그 이후 정조는 왕세자를 책봉할 때에,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했을 때의 예법을 원용해서 세자를 책봉하는 예식에 국왕이 참석하지 않는 권정례(權停例)를 실시하기까지 하였다.²⁸⁶⁾ 책봉 직전 왕세자에게 내린 이름은 옥(玉)과 공(公)의 결합인 홍이고 자(字)는 공보(公寶)였으니, 지극히 공정한 국왕의 지위를 예비하기 위한 뜻이라고 풀이하였다.²⁸⁷⁾ 세자 책봉례에 권정례를 적용하여 예법을 경시한다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정조는 장차 세자에게 양위할 것이며 사왕의 시대에 공공(公共) 대의리(大義理)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염원을 이처럼 지극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284) 『세종실록』 세종 즉위년 11월 3일 기유 ;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계축.

285) 『정조실록』 정조 9년 8월 27일. 儲承殿-樂善堂-德成閣-時敏堂은 모두 東宮인 先世子의 영역이었는데(『한중록』「恨中錄」, 97쪽 ; 『增補文獻備考』 권38, 「輿地考」 昌慶宮 ; 『宮闕志』 昌慶宮), 樂善堂 화재 후 중건되었다가(『영조실록』영조 32년 5월 7일), 재차 儲承殿·貳極門에 화재가 난 후(『영조실록』영조 40년 12월 18일), 방치되어 있었다. 낙선당 앞에는 선세자가 誣陷에 괴로워하며 落傷한 우물이 있기도 했다(『한중록』「恨中錄」, 157쪽). 정조는 즉위 후 혜경궁을 위해 慈慶殿을 영건했고(『정조실록』 정조 2년 2월 9일 南鶴聞 상소에 언급됨), 남은 자재로 낙선당 앞 우물을 덮었다가, 이를 걷어 내고서 壽康齋를 영건했다고 한다. 현전하는 『東闕圖』에도 壽康齋가 보이는데, 현종대 이 일대를 크게 영건하기 전의 건물배치 상황을 반영하므로, 정조대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翼宗은 대리청정할 때 正堂을 重熙堂, 別堂을 壽康齋로 정했다고 한다(한영우, 『동궐에 들다』, 효형출판, 2006, 176쪽).

286) 『정조실록』 정조 24년 1월 24일. 신하들은 태종대의 권정례가 끌어낼 수 있는 규례가 아니라고 반대했으나, 결국 세자 책봉 및 축하의례까지 모두 權停例로 시행되었다(『정조실록』 정조 24년 2월 2일).

287) 『정조실록』 정조 24년 1월 25일.

제4장 결 론

제4장 결론

정조는 영조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현명하게 처신하였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아들이어서 받아야 했던 의혹을 불식하고 척신·벌열의 도전도 물리치며 즉위할 수 있었다. 정조는 즉위 직후에 자신에 대한 총역의 범위를 정리한 『명의록(明義錄)』 의리를 확정하였다. 또한 영조가 확정된 의리 곧 신임의리와 ‘영조의 임오의리’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실제로 정조는 ‘김상로(金尙魯)는 너의 원수이다.’라고 했던 영조의 전교를 근거로, 임오화변을 양성한 핵심인 김상로의 관작을 추탈하고 문녀(文女)·문성국(文聖國)을 처단하였을 뿐 더 이상 토역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반면 정조 즉위 직후 사도세자 추숭(追崇)을 권유한 준소와 남인계 인사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이는 정조가 재위 전반기에는 영조대에 확립된 정치 의리를 계승하면서 국정을 이끌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조는 후반기부터는 전반기 10여년 간 유지하던 탕평의 규모를 다시 설정하였다. 정조는 기존의 노·소론 시파 세력 대신 노론 벽파, 소론 준론, 체제공계 청남 등 그동안 시파와 대립하던 인사들을 삼정승에 등용하였다. 이후에 정조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여 세손 시절 이래 숙원이었던 ‘정조의 임오의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정조는 양주에 있던 사도세자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의 현릉원으로 옮기면서, 세자의 과오를 중심으로 기술된 영조의 「묘지문」을 폐기하고 대신 「현릉원지문」을 친히 작성하였다. 그것은 민생과 군사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 생부의 공(功)과 비판적인 언론까지 너그럽게 포용한 생부의 덕(德)을 기리면서, 몇몇 역적들이 기획하여 영조를 오도(誤導)한 임오화변의 전말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었다. 사도세자의 공덕(功德)에 대한 재평가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정조는 체제공과 연계된 영남인들이 사도세자 신원을 요구하며 올린 만인소(萬人疏)가 초래한 격렬한 정쟁 국면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신하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재평가만으로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정조는 임오화변 당시 지나친 처분을 한 과오를 후회하는 심회를 담은 영조의 「금등」 문서를 공개하였다. 이것은 영조가 사도세자의 효심

(孝心)이 담긴 물건들을 역적들의 모함 때문에 역심의 증거로 오인하여 그릇된 처분을 내렸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넉넉한 은덕(恩德)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사도세자의 공덕과 역적들의 모함을 중심으로 재평가된 ‘정조의 임오의리’는 영조의 본뜻과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임오화변 재평가의 방향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미덕은 한껏 높이되 그동안 정국에서 소외되어 있던 세자 보호 세력의 공로를 적극 평가하는 데에 있으며, 이미 처벌한 세자를 포함한 역적 이외에 사도세자 비판 세력에 대한 뒤늦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였다.

정조의 탕평에서 정치 의리의 핵심인 임오의리를 수정하는 것은 정국 운영의 근본을 수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조의 임오의리’는 그동안 서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선세자 보호세력과 비판 세력을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정치 의리로 작용할 수 있었다. 결국 노·소론 완론 탕평파 위주로 전개된 영조대의 탕평에 비하여, 정조대 후반의 탕평은 노·소론 완론과 준론 및 청남 세력에 이르기까지 그 참여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정조대에 노·소론 시파는 물론이고, 김종수·심환지 등 노론 벽파와 채제공 등 청남 정치 세력이 번갈아 집권하였을 뿐 아니라, 노·소론의 정통 산림(山林) 학자들부터 박지원·박제가 등 북학파(北學派)와 이가환·정약용 등 서학파(西學派)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파의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정조의 정치 의리가 폭 넓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조의 임오의리’에 근거하여 정조는 국왕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세자보다는 한 등급 높은 격식의 8자존호로써 사도세자를 위한 추송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사도세자의 공덕을 최대한 존송하되, 그를 왕으로 올리는 추왕(追王)은 당장은 단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손으로 추왕을 시행하는 것은 세손 시절 이래 영조와 신하들에게 누차 다짐했던 신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업은 새로운 시대를 다스릴 세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세자가 성년이 되는 갑자년(甲子年)에 왕위를 버리고 상왕(上王)으로 물러나고자 하였다. 시대가 바뀌면 의리도 변경할 수 있다는 수시변역(隨時變易)의 원리에 따라, 신왕(新王)의 시대에는 선세자에 대한 추왕도 가능하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정조 18년에 시작된 수원 화성(華城) 건설 사

업은 정조가 물러나 거처할 상왕의 도시로 구상된 것이었다.

정조가 시도한 상왕의 정치는 왕실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조는 상왕의 공간인 화성을 단순히 왕권 강화의 표상이 아니라 제도 개혁의 시험장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니, 이는 화성에서 입증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 개혁의 모범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화성에 북학(北學)·서학(西學)의 최신 성과까지 두루 활용한 성제(城制)와 도시·상업 시설, 조선후기 군제 개혁의 성과인 장용영, 이를 지탱할 둔전 제도와 수리시설 등이 집중되었던 것은 정조의 이러한 구상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장용영과 둔전 제도는 숙종대 이래 양역 변동과 균역법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즉 정예 군사의 확보와 이를 지원할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군사재정 확보라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이었다. 또한 화성이라는 군사시설과 신도시 기반 시설의 사례 역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이념에 입각한 실학(實學)의 성과를 입증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조의 임오의리'에 입각한 탕평 정치의 이념과 국정 개혁의 성과는 영조대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 국정 개혁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정조대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은 정조대 국정 개혁의 핵심적 성과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수원의 도시 경영 이념은 그 뿌리인 정조대 수원 화성 건설과 경영의 이념을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세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고종실록』
『일성록』
『현고기(玄臯記)』
『대전록(待闈錄)』
『천휘록(關揮錄)』
『급견재만록(及健齋漫錄)』
『시벽원위(時僻源委)』
『풍고집(楓臯集)』
『각정집(角亭集)』
『가암유고(可菴遺稿)』
『번암집(樊巖集)』
『몽오집(夢梧集)』
『이재난고(頤齋亂藁)』
『강한집(江漢集)』
『명고전집(明臯全集)』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극원유고(屨園遺稿)』
『홍재전서(弘齋全書)』
『현릉원원소도감의궤(顯隆園園所都監儀軌)』(경기도박물관, 2006)
- 『정조어찰첩(正祖御札帖)』
『동래정씨가록(東萊鄭氏家錄)』
『청송심씨 만포가 기증고문서(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
『적선세가(積善世家)』
『한서(漢書)』
『구당서(舊唐書)』
『한중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속대전(續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궁원의(宮園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화성지(華城志)』
『임오일기(壬午日記)』
『서연일기(書筵日記)』
『와운옹견문수기(臥雲翁聞見隨記)』
『개장록(羹牆錄)』
『공거지남(公車指南)』
『군서표기(群書標記)』
『성학집요(聖學輯要)』
『화성일기(華城日記)』(李羲平, 신구문화사, 1974)

2. 저서

-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김성윤, 1997,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문중양, 2000, 『조선후기 水利學과 水利담론』, 집문당
박현모,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변원림, 2006, 『조선의 왕후』, 일지사
유봉학, 2009,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유봉학, 1996,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유봉학, 2001,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유봉학, 1996, 『화성』, 신구문화사
이달호, 2008,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혜안
이수건, 1995,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이태진, 1985, 『조선후기의 정치와 軍營制 변천』, 한국연구원
이현진, 2008, 『조선후기 종묘전례 연구』, 일지사
차기진, 2002, 『조선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최홍규, 2005, 『정조의 화성경영연구』, 일지사
한영우, 2006, 『동궐에 들다』, 효형출판
한영우, 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3. 논문

- 김이순, 2008, 「隆陵과 健陵의 석물조각」 『미술사학보』31, 미술사학연구회
김준혁, 2007,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김지영, 2006, 「1789년 현릉원 遷園과 현릉원원소도감의궤」
『譯註 顯隆園園所都監儀軌』, 경기도박물관
노영구, 2002,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박광용, 1994, 『조선후기 탕평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우성, 2004, 「정조의 留守府 경영과 華城인식」
『한국사연구』127, 한국사연구회
- 윤 정, 2007, 『18세기 국왕의 文治 사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존희, 2001, 「한양의 陪都 留守府」『조선시대의 한양과 경기』, 혜안
- 이태진, 1993, 「정조-儒學的 啓蒙 絶對君主」『한국사시민강좌』13, 일조각
- 이태진·홍순민, 1989, 「日省錄 刀削의 실상과 경위」
『韓國文化』1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정경희, 2005, 「조선후기 묘소도감의궤의 특징」
『분류별 의궤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 정연식, 1989, 「균역법 시행 이후의 地方財政의 변화」
『진단학보』67, 진단학회
- 정해득, 2009, 『正祖時代 顯隆園 造成과 水原 移邑 研究』,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Abstract

Chǒngjo's Imoh-Euli (壬午義理) exemplified the wider notion of Kun-Sin-Euli (君臣義理). Although Chǒngjo's Imoh-Euli (壬午義理) revised Yǒngjo's Imoh-Euli (壬午義理) in an attempt to put an emphasis on Prince Sado's virtue, it did not aim to damage Yǒngjo's honour. Furthermore, while Chǒngjo's Imoh-Euli (壬午義理) sought to differentiate the loyal from the disloyal, it did not intend to intensify the political strife centered on Prince Sado's death. For instance, Chǒngjo paid respect for his father with a reservation that Prince Sado remained as a prince.

In other words, Chǒngjo left the issue of posthumous recognition of Prince Sado's status as a king to his successor. Considering this, Chǒngjo's Imoh-Euli (壬午義理), which is rooted in 'private affection (私情)', can be seen as a principle that displayed a close adherence to 'Kong-Eu (公義)'. In this regar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Chǒngjo's Imoh-Euli (壬午義理) as a fine form of Kun-Sin-Euli (君臣義理) in which the public was put first, moving beyond the constraint of personal rage and filial piety.

Chǒngjo intended to abdicate and move to Hwasong (華城) in an attempt to enable his successor (嗣王) to implement the posthumous recognition of Prince Sado (追王). Hwasong (華城) was constructed for Chǒngjo to reside with Hyekyungung(惠慶宮) as the abdicated king. In this opportunity, Chǒngjo had experimental reform on political, military, and industrial sphere. Although Chǒngjo's big picture of the reform was not materialized due to his sudden death, his ideas based on Kong-Eu (公義) has remained significant, providing a model for those who pursued the realization of ideal state.

Key words : Yǒngjo's Imoh-Euli (壬午義理), Chǒngjo's Imoh-Euli (壬午義理), Prince Sado, Hwasong (華城), the abdicated king.

‘정조의 임오의리’와 국정(國政) 운영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5년 10월 15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85686-58-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